

월간

# 재정포럼

2014. March\_ Vol.213

3월호

##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권두칼럼

복지와 민주주의/ 전성인

### 현안분석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최준욱

### 정책토론포트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정책연구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외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FY2015 대통령예산안 의회 제출 외

## CONTENTS

### 권두칼럼

복지와 민주주의 · 전성인 ..... 02

### 현안분석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 최준욱 ..... 08

### 정책토론포트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25

### 정책연구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 홍성훈 · 성명재 ..... 41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 전병목 ..... 44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 김학수 ..... 47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홍범교 · 이상엽 ..... 50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 노영훈 ..... 53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임소영 · 임송수 ..... 55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은경 ..... 5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 · 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윤성주 ..... 62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 · 김현아 · 김지영 ..... 65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2014년 예산안 발표 외 ..... 70

### 정책흐름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113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120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 126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 137

### 이슈&포커스

‘개정세법’ 최고소득층 뺨 전 계층 세금 줄어 외 ..... 140

### 社告

바로잡습니다 ..... 143



## 복지와 민주주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는 그동안 진보 진영의 논제였다. ‘가난한 사람도 국민이고, 부자도 국민이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핵심 문제의식이었다. 과거의 복지 이슈 중 가장 극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이 무상급식이었다. 미래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어린이들 중 집이 가난해서 점심을 거르고 수돗물로 배를 채운다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족했다. “어린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 나이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나인데...” 아마도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였으리라. 거기에 대고 ‘도덕적 해이’와 ‘급식과 소득 간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를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먹히는 주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복지는 진보 진영의 이슈였다.

### 복지의 딜레마,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변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쟁점이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작금의 복지 이슈는 완전히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그것이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에 또 다른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노인, 어르신, 퇴직자, 노령세대 등 그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달라도 빈곤 중에서 특히 노인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사용한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된다. ‘노인도 국민이고, 청년도 국민이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년이 내는 연금 보험료중 일부를 노인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현재 노인인 세대는 우리나라 7,80년대 국가 건설의 주역이라고 자부할 만하다. 어쩌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회사에 충성하다 보니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했을 뿐이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아서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뒤로 영 맥을 못추는 상황이 된 경우도 많

다. 어쩌다 병이라도 들면 그 때는 정말 앞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노인 복지는 필요하다. 앞으로 이 글에서 쓸 말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은 물론 친구들로부터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만 나이로 깎아서 생각을 해도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필자의 친구 중 아직도 월급쟁이를 하는 사람들은 교수 말고는 거의 없다.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에 아주 민감하다).

무상급식도 복지요, 기초노령연금도 복지다. 둘 다 가난한 계층을 돕자는 좋은 취지다. 그러나 양자에는 상당히 구별되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너무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다. 이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복지일 뿐이다. 이런 차이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만일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 중 어느 쪽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문제다. 문제는 복지의 대상은 젊은이(어린이)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에게 집중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 경제학적 논리로만 풀 수 없는 노인복지문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젊은이에게 복지를 집중해야 할 측면이 더 강하다. 그들이 제대로 활동해야 생산도 잘 일어나고, 국민저축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난다. 또 그들이 생산을 잘 해야 노인들도 그에 따라 복지의 혜택을 나눌 수 있다. 이에 비해 노인에게 복지를 집중하는 것은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잘 설명하기 어렵다. 노인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생산을 증가시키는 측면은 많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젊은이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저축이 줄어들고 노인들의 음(-)의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저축도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파산을 향해 달리면서도 파산을 면하려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고, 그 대가(?)로 혜택은 더욱 줄이는 이상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도 위의 사례와 무관하지 않다.

.....  
**무상급식도 복지요,  
 기초노령연금도 복지다.  
 둘 다 가난한 계층을  
 돕자는 좋은 취지다.  
 그러나 양자에는  
 상당히 구별되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  
 .....

.....

**민주주의는  
지금 인류가 한번도  
본격적으로  
직면했던 적이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

그러나 누가 이런 돌 맞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천방지축으로 말하는 필자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언론인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그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어떤 야당 정치인이 노인 유권자에 대해 이보다 훨씬 약한 얘기를 했다가 다 이긴 총선을 망치고 본인은 영원히 대권에의 꿈을 접은 것만 보아도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얼마나禁忌인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비겁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민주주의는 지금 인류가 한번도 본격적으로 직면했던 적이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주지하듯이 민주주의는 일부 지배계급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의 의사결정권을 보통선거의 원칙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민에게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 전체의 아젠다가 정책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거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젊은 나라’였다. 즉 노령 인구에 비해 생산을 담당하는 청년, 장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나라였다. 따라서 국민에게 투표권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을 담당하는 젊은 세대에게 국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맡긴다는 것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민주주의는 그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제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제도가 되었던 것이다.

### **노령사회의 해법, 더불어 함께 살기**

그러나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노령화사회 혹은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등식은 서서히 깨지고 있다. 국민 중에서 노령세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사는 점차 생산 세대의 의사에서 퇴직 세대의 의사결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체제의 가장 극단적인 모순은 생산을 하지 않는 퇴직 세대가 생산을 담당하는 청년 세대로부터 얼마를 세금으로 걷어서 자신들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노인층의 시계(horizon)은 젊은이에 비해 매우 짧다는 점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기르려는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쉽지 않다. 인류가 한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령사회를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설사 해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이 노령세대로 넘어간 이후에 그런 해법에 따

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어슴푸레 가지고 있다. “젊은이도 국민이고 노인도 국민이니까 젊은이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 I. 서론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2년 말에 493조원으로 GDP의 38.8%에 달하였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2013년 12월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부채 감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의 추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국제비교 시각에서 검토한 후,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의 추이 및 부채가 증가한 배경 등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외국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물론 외국과의 비교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 또는 대응방향에 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문제의 인식 및 해결방안과 관련된 시각을 정리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공기업 부채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 Ⅱ. 공공기관 부채 추이와 특징

먼저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의 추이 및 증가 원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6~7년 동안의 공공기관 부채 추이 및 증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박진 외(2010) 등 일부 연구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기존 자료들에서 제시된 것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hoi@kipf.re.kr)

보다는 좀 더 긴 시계에서 공공기관 부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범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특히 민영화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 추이에 대해 일관된 장기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행히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이 LH공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몇 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의 부채 변화, 그리고 민영화 정책의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총액 변화와 관련된 대략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에서는 공기업 부채총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KT를 비롯하여 일부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공기업으로 유지된 기업의 경우에도 부채는 대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박진·허경선(2013)에 따르면, 1997~2003년 동안 부채규모가 큰 10개 기관(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 중 성격이 다른 예보 및 장학재단 제외)의 부채 증가액은 22.6조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의 부채비율은 1997년에 170.7%에서 2003년에는 103.4%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상기 10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도 연평균 6.6% 정도로, 추세적인 명목성장률을 넘지 않고 있었다. 즉 민영화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안정적이거나 혹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스공사도 추가적인 투자재원을 기업 공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대응하는 등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영화 정책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추진되었다. 반면 공기업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SOC 분야의 공기업 중심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SOC 분야의 공기업 부채 증가

“  
**참여정부 및 실용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기간 및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대략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수요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원가가 급등한 가운데 한전 및 가스공사의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것, 그리고 석유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해외자원개발이 확대된 것 등이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박진·허경선(2013)에 따르면, 2003~2012년 동안 상기 10개 기관의 부채는 276.2조원 증가하였다. 9년 동안의 부채 증가액은 이전 6년 동안의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된다.

참여정부 및 실용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기간 및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대략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용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연도별 증가율은 실용정부 마지막 연도인 2012년에만 7%대로 낮아졌을 뿐이며, 이전 시기에는 매년 1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율이 명목성장률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비율의 GDP 대비 비중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상기 10개 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03년에 10.7%에서 2012년에는 28.1%로 상승하였다. 2012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38.8%에 달한다.

“  
**명시적인 정부지출 제약을 넘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난 10여 년의 큰 흐름은 공기업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동력은 약화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정권에서는 민영화 추진 등으로 인해 공기업 부채가 감소하고, 진보정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난 10여 년의 부채 증가는 이러한 가설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정권의 이념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속성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명시적인 정부지출 제약을 넘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수자원공사 등을 통한 투자도 정부지출 이상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한 성격을 가진다. 원가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한 정책은 보조금에 해당되는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에 해당된다. 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역시 정부의 역할 확대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거나 감축하는 정책 역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자의 측면, 즉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한 바 있으며, IMF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Ⅲ. 외국의 현황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인식 혹은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공공기관 부채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외국의 공기업 부채 현황

공공기관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 등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국제비교는 물론이고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부채 성격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쟁점들이 있고,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앙정부의 비금융공기업만을 대상으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심각성 등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93조원이며, 이

는 GDP의 38.8% 정도다. 이 수치에는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제외한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343.5조원 정도이며, 이는 GDP의 27.0% 정도다. 일반정부와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으로는 GDP의 25% 내외다.

대부분 국가는 일반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부채 자료가 작성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공부문의 부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World Bank에서는 일반정부의 부채 외에도 다양한 범주의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한 자료가 World Bank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World Bank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인데, 동 자료에는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항목에 대해 실제로 자료가 제시된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OECD 국가는 호주,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멕시코의 5개국에 불과하다.

왜 일부 국가만이, 특히 OECD 국가들조차도 일부만이 비금융공기업 부채 통계를 제출하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몇 개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국가별 재정통계 또는 국민계정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 하였지만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것과 관련하여 IMF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재정투명성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기업을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공기업 부채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자료를 굳이 생성하고 공개하지 않

“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93조원이며,  
 이는 GDP의 38.8% 정도다.  
 이 수치에는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았을 가능성도 있다.

비교 대상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자료가 제시된 27개 국가 중 통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그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27개 국가의 평균치는 7.5%, 5개 OECD 국가의 평균치는 8.7%, 22개 비OECD 국가 평균치는 5.9%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치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정확한 국제비교는 어렵지만,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채의 규모가  
 큰 국가들 중 하나인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

〈표 1〉 국가별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국가명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
OECD	Canada	14.2
	Portugal	12.9
	Australia	9.0
	Mexico	5.4
	United Kingdom	2.2
비OECD 국가	Tonga	43.6
	South Africa	16.5
	Costa Rica	6.9
	Mauritius	5.7
	Honduras	3.4
	Indonesia	2.8
	Georgia	2.4
	Philippines	2.4
	El Salvador	2.1
	Moldova	1.90
	Kenya	1.5
	Seychelles	1.5
	Nicaragua	1.0
	Bangladesh	0.9
	Lithuania	0.7
	Dominican Republic	0.3
	평균	7.5

자료: World Bank,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계산

동 자료에 포함된 국가의 수, 특히 OECD 국가의 수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몇 개의 OECD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연방제 국가와 단일제 국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의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주로 단일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의 6개 국가에 대해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다.

국가별 국민계정 및 재정통계 등을 통해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주로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관리대상 공기업 중에는 금융공기업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금융공기업을 제외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리대상 공기업의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비금융공기업 중에 관리대상 공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황 파악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리대상 공기업이지만 국민계정 등에서 일반 정부에 속하는 공공기관을 완전히 구분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래 언급하는 수치는 국제비교를 위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관리대상 공기업 부채의 총액을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파악되는 공공기관 부채총액의 GDP 대비 비중이 큰 국가들은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33.7% 정도이지만, 이 중에는 산재보험의 부채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와는 다른 성격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GDP의 13.7% 정도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정도로 추정된다. 스웨덴의 경우, 공기업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공기업 부채총액은 GDP의 32.7%에 달하며, 이 중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부채는 GDP의 25.3% 정도 된다. 프랑스의 공기업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공기업(프랑스의 공기업 관리당국인 APE에서 관리하는 59개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GDP의 28.9% 정도 된다.<sup>1)</sup>

정확한 국제비교는 어렵지만,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채의 규모가 큰 국가들 중 하나인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11개 국가 중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으로 2% 내외에 불과하며, 프랑스와 스웨덴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그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World Bank data에서 캐나다는 14.2%, 포르투갈은 12.9%이며, 호주는 9.0% 정도다. 뉴질랜드는 13.7%, 핀란드는 9.7%, 일본은 8.1% 정도로 추정된다.<sup>2)</sup> 독일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GDP의 5~6% 정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나. 국가별 차이의 원인 모색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왜 이처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이 더 높은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도 11개국에 대해서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이다. 대상국가의 수가 제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반화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국가의 특성과

“  
**민영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낮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국가별 민영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가별 공기업 부채의 규모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인다.**  
 ”

관련된 다양한 지표, 국가별 재정과 관련된 지표, 공기업 관리체제의 차이(집중화 혹은 분권화 여부 등) 등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나, 명확하게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인식되는 북구의 경우에도 핀란드는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특별히 큰 편은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모두 공기업 관리정책에서 상당히 중앙집권화된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공기업 부채의 GDP 비중 면에서 위에 언급한 국가들 중 양 극단에 속한다.

다만 민영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낮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국가별 민영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가별 공기업 부채의 규모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인다. 민영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OECD의 PMR 지표에 포함된 세부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의 범위(scope of public enterprise)라는 지표인데, 영국은 동 지표로 볼 때 OECD 국가들 중 공기업의 범위가 가장 좁은 국가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30개 OECD 국가 중 공기업의 범위가 첫 번째와 4번째로 큰 국가들

1) 동 수치는 APE에서 발간하는 공기업 연차보고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APE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공기업 부채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 반면, APE가 관리하는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 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여 별도로 분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다.

2) 일본의 경우 개념상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에 해당되는 비금융 특수회사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5.0%지만, 추가적으로 독립행정법인 중 비금융공기업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부채가 GDP의 3.1% 정도 된다.

“  
**다른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크기와 부채를 통해  
 파악되는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LH공사의 존재 때문이다.**  
 ”

이며, 위에 검토한 11개 국가 중에서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큰 국가들이다. PMR 지표에 포함된 또 다른 세부지표인 공공소유(Public ownership)이라는 지표를 보더라도, 스웨덴과 프랑스는 위에 검토한 11개 국가 중에서 공공소유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공공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장 낮은 영국의 경우는 통신은 물론이고 전력 등 에너지 분야, 그리고 철도 등 교통 분야, 그리고 물공급조차도 거의 민영화된 경우다. 반면,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높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우는 전력 및 에너지를 비롯하여, 통신·항공운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기업이 유지되고 있다.

공기업이 부채 없이 운영된다면, 주요 산업의 민영화 여부가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 여부가 공기업 부채 비중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가 큰 국가들은 에너지 분야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전력 및 에너지 회사인 Vattenfall의 부채는 GDP 대비 10.5%에 달하며, 공기업 부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전력회사인 EDF와 가스회사인 GDF suез의 부채는 각각 GDP 대비 비율로 10.8%와 6.6%를 차지하며, 이들 두 공기업의 부채가 공기업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국가별 민영화 정도와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서 다소 예외적인 경우다. PMR 지표 중 공기업의 범위라는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범위가 4번째로 좁은 국가에 해당된다. PMR 지표 중 공공소유라는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소유의 정도가 OECD 국가 중 중간을 약간 넘는 정도에 해당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다른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크기와, 부채를 통해 파악되는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LH공사의 존재 때문이다. LH공사의 부채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개발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 크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 및 개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다. 외국의 경우에도 주택관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큰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로 주택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다. 주택 및 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이러한 정도로 대규모 자산 및 부채를 가지는 경우는 싱가포르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흔한 편은 아니다. 적어도 위에 고찰한 몇 개 OECD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갖는 측면도 있다. 즉 비록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성향에 수렴하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 중심의 개발 내지는 고도성장 이후의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쟁점과 시사점

외국과의 비교는 두 개의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외국에 비해 큰 편이며,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민영화의 정도가 낮은 국가들일수록 공기업 부채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공기업 부채가 큰 것이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큰 국가들도 있고,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까지 공기업부문의 부채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더라도 시장원리에 충실하고 민간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효율성 등에서 차이가 없다면, 민영화는 공기업 부채라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변화시킬 뿐, 본질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다. 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크다는 것,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할 근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민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따른 득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로 인한 원가 상승 등의 부담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전가된다.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담은 후세대에 전가된다. 즉, 단지 부채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내부적인 비효율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부문이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민간기업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 기업과 관

“  
단지 부채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련된 제반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문이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인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영화 자체가 그러한 비합리적인 정책이 형성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제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실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 및 민영화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민영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하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약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공기업 부채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영화를 제시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외국 사례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공기업부문의 부채가 큰 스웨덴의 경우에 이에 대해 어떤 우려가 제기되는지에 대해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 스웨덴의 공기업 관련 정책에서 상업성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철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 가지 명확한 점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책원칙으로 제시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원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인지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전기요금 및 전력회사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2008년에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단위당 수입으로 계산한 평균요금)은 2007년 대비 1.9% 상승하였을 뿐이다. 이로 인해 2008년에 정부는 한전에 8,4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경험하였다. 반면, 스웨덴의 전력에너지 회사인 Vattenfall의 경우에는 2008년에도 2007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익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스웨덴은 2008년에 원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Energy Prices and Taxes에 따르면, 스웨덴의 산업용 세전 전기요금(산업용 기준)은 2007년에 0.507SEK에서 2008년에는 0.624SEK로 23%나 상승되었다.

외국에 대한 현황 고찰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단정적으로 정리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점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기업 부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

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장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 증가의 위험성이 가중된다. 공기업 관련 정책에서 적어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시장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정책원칙으로 제시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 IV. 공공기관 부채 관련 정책방향

공공기관 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부채를 어느 정도 급격하게 감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중 몇 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가. 공공기관 부채의 문제점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된 논의에 앞서 왜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공공기관 부채 증가로 인한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언급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투명성 측면, 즉 공공기관이 예산제약을 피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그로 인해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부채 증가로 인해 우려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로는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차입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타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것,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기

관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미래의 소비자는 이미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는 부담까지 지게 된다. 즉 공공기관 부채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효과는 세대 간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이다. 요금인상 외에도 정부 지원의 확대, 부채 탕감(국채로의 전환), 혹은 민영화 등 다양한 수단도 국가 부채를 확대시키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국가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서도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차입금리의 상승, 신뢰의 저하로 인한 불안정성,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효과로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학에서 사용하는 세대 간 회계 등의 방법론도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 부채와 한 가지 점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확대에 따른 결과이거나, 실물자산이 확대되는 투자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실물자산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더불어 매각 가능한 실물자산이 확대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해외자원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부채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효과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좀 더 구체적인 부채 증가 원인과 연결시켜, 어떤 성격의 부채 증가가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개별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적자로 인한 부분, 그리고 부채를 통해 사업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공기업 부채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그것이 비효율에 의한 것이든 부적절한 요금에 의한 것이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과잉투자 등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요약된다.**  
 ”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효율로 인한 것일 수도, 혹은 부적절하게 낮게 설정된 요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후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전자의 경우는 비효율로 인해 경제적 렌트를 누릴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수혜자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현재의 소비자가 수혜자가 되는 차이가 있는 정도다. 다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정화되지 않는 등의 일시적인 상황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의 확대가 미래의 수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문제는 아니다. 미래에 수익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세대 간 불평등 문제 등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을 획득하고 그것을 미래에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초래되지 않는다.

공기업 부채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그것이 비효율에 의한 것이든 부적절한 요금에 의한 것이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과잉투자 등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요약된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1)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  
**공기업 부채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첫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 (2)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자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정책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 부채 감축수단**

먼저 부채 감축수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각적(일회성)으로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자본 확충 및 자산 매각이 있다. 점차적(지속적)으로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축소가 있다. 효율성 제고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는 결국 수입 확대나 지출 축소 중 하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별도 범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수입 확대는 가격인상 및 매출 확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독점적인 공급자이고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수요 확대보다는 요금인상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는 한다. 지출 축소는 크게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및 기타 지출 등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 2〉 부채 감축의 대안

부분 민영화	즉각 재무구조 개선	자본 확충	민간자본 확대 공공부문 출자 확대	
		자산 매각	유휴 자산 매각	사업 축소 재무적 기법 활용
공공부문 유지	점진적 재무구조 개선	지출 축소	사업 축소(사업비 감축) 인건비, 경상비 및 기타 비용 감축	
		수입 확대	자체 수입 확대	가격(요금)인상 매출량 조정
			정부 지원 확대	

보조금, 출연금 등 정부 지원의 확대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는 공공부문 전체로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 언급한 대안들과 차이를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가 감축되는 것에 상응하여 국가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지는 주로 공기업 운영의 안정성, 혹은 재정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된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 중에서도 자산 매각 및 지출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영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하고,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그리고 요금인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자산 매각 및 사업 축소**

자산 매각은 부채를 즉각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유휴자산 매각, 사옥 매각 및 기타 재무적 기법의 활용 등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부

분은 사업자산의 매각이며, 이는 사업 축소와 연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정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직결되는 문제다.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자산의 매각과 통하는 면이 있다. 자산 매각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업예산의 통제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분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매각 중에서도 최근 수년간 부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매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외자원개발 차원에서 취득한 자산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자산 매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자급률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공기업을 통해 해외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부채가 증가하였다.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자산을 인수하면,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점이었다. 그런데 왜 해외에서 자산을 인수하고 수년 후에 다시 매각하는 과정이 발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손실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서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또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에너지는 현대 문명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해외에 유전을 확보한 것이 실제로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채를 증

“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분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시키면서까지 해외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된 측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추진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성공 사례와 문제가 공존한다. 사전적인 위험성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본질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실패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기업이 빠른 속도로 해외자원을 확보하려 하면 실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급격하게 추진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다행인 점은 앞에 공공기관 부채의 문제점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자원의 경우와 같이 매각 가능한 실물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세대 간 불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었다면, 그리고 매각 과정도 합리적이라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급격하게 추진하다가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 정책은 정책 변화의 비용이 커진다. 합리성 및 효율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  
**해외사례 부분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들면서,  
 시장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는 주로 해외자원개발을 예로 들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산 매각 및 사업예산의 축소는 단지 해외자원개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및 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당 분야의 부채 변화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공공요금

최근 수년간의 공공기관 부채 증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 요금의 통제로 인한 것이다. 전력·가스 등의 분야는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민영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는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된다면, 부채가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된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후적으로 부채가 누적되었다고 당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출구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재정적자를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록 그 약속이 사후적으로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시 언제까지는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는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력요금의 경우에는 이후 어떻게 원가를 반영하고, 한전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지연시켜 왔다. 그로 인해 에너지 소비체계의 왜곡을 초래하여 전력수급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전기요금은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겨우 한전이 적자를 면하는 수준까지 인상된 상황이다.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Ⅲ장의 해외사례 부분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들면서, 시장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처럼 독립성을 가지는 규제위원회의 구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마. 경영효율화 및 원가 절감

경영효율화를 통해 수익을 개선하여 부채를 억제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물론 경영효율화는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부채 감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효율화에 따라 원가가 절감되고, 절감된 원가만큼 요금을 낮춘다면, 부채를 감축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경영효율화로 인한 이득은 국민경제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공공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경영효율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다만 현재 방만경영의 범주는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 철도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공기업들이 자본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등의 감축을 통해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리후생비 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단지 복리후생비의 문제 등을 넘어 공기업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그리고 추가적인 비효율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효율화 또는 원가 절감을 위해 기업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5개 공공요금의 원가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원가 중 인건비의 비중이 약 30%로 가장 높으

“  
**복리후생비 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단지 복리후생비의 문제 등을 넘어  
 공기업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그리고 추가적인 비효율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며, 인건비와 관련된 검토도 중요하다. 반면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0.5%에 불과하여, 인건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원가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재료비가 94.3%에 달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가스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 적정투자보수의 비중이 높은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원가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영활동 외에도 기존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형성된 자산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즉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수익성이 없는 고속도로의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도로공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효율성 개선 및 원가 절감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정부정책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요금과 관련하여서는 모회사에 해당되는 한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발전부문의 효율성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전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의 전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시설에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장기계약의 물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으로 가스 구입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감사원(2013)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기업별로 원가구조 및 여건이 다르고, 수익

“

이미 공기업 부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장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 증가의 위험성이 가중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성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도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획일적인 틀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지 기업의 경영활동만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정책도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요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의 역할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 기업별 원가구조(구성비)

(단위: %)

	도로	철도	수자원	한전	가스
총괄원가	100.0	100.0	100.0	100.0	100.0
적정투자보수	40.6	12.2	14.9	6.1	1.9
적정원가	59.4	87.8	85.1	93.9	98.1
영업비용	53.1	87.8	81.4	96.2	97.7
인건비	8.0	29.4	10.4	1.9	0.5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2	2.9	4.0	2.2	0.5
재료비	23.4	31.7	14.4	85.9	94.3
기타 경비	19.6	23.7	52.5	6.2	2.4


주: 기업별로 원가항목에 차이가 있어 비교 가능하도록 일부 항목을 조정한 것임.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재료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음. 다른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기타 경비 중 선로사용료와 동력유지비 부분을 재료비로 재분류하고, 원래 기타항목 중 위 두 항목을 제외한 항목을 기타로 재분류함. 도로공사의 경우 유료도로 관리권 상각비를 재료비로 분류함.

자료: 기업별 원가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 V. 요약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외국에 비해서도 큰 편에 속한다.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공기업 부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장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 증가의 위험성이 가중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제약을 피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정책은 물론이고 해외자원개발 등 각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논의 및 사회적인 공감대가 취약한 부분들도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압력을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책의 변화로 인해 불필요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정부 및 해당 공기업의 역할 및 정책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및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을 시장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정치적 영향에 따라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필요할 수 있다. 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감사원,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
- 기획재정부, 「12년 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보도자료, 2014. 2. 11.
- \_\_\_\_\_,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보도자료, 2013. 12. 11.
- \_\_\_\_\_,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2012.
- \_\_\_\_\_,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보도자료, 2013. 12. 9.
- 박진 · 최준욱 · 김지영 · 허경선,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 박진 · 허경선,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최준욱, 「공기업 부채 관리방안」, 세미나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3.
- 허기형,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6호, 국회예산정책처, 2013.
- APE, *The French State as Shareholder 2012 report*, 2012.
- COMU, *2012 Annual Portfolio Report*, New Zealand Government, 2013.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Prices and Taxes*, each quarter.
-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indicator database*,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pmr-performance.htm>
- Shareholder Executive, *Annual report*, HM Government, London, UK.
- Swedish Ministry of Finance, *Annual Report State-Owned Companies*, 2012.
- Vattenfall, *Annual report*, each year, <http://corporate.vattenfall.com/investors/>
- World Bank, *World Bank Public Sector (Quarterly) Debt Statistics*,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DATASTATISTICS>
- 알리오, <http://www.alio.go.kr/alio/main/main.jsp>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http://www.ex.co.kr)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www.kwater.or.kr](http://www.kwater.or.kr)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www.kepco.co.kr](http://www.kepco.co.kr)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www.korail.com](http://www.korail.com)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www.kogas.or.kr](http://www.kogas.or.kr)



# 정책토론회 리포트

##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개요

- 주 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일 시            2014년 3월 12일(수) 10:30~12: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
- 진행순서
- 10:30~10:40    개회사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10:40~11:5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이준구    서울대학교 교수
- ▶ 발 표 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 토 론 자    권오성    국방대학교 교수
- 김갑순    납세자연합회 회장
-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부장
- 정연성    삼일회계법인 상무

(가나다 순)

- 11:50~12: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2:00            폐회

\* 본 원고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에서 2014년 3월 12일 개최한 정책토론회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김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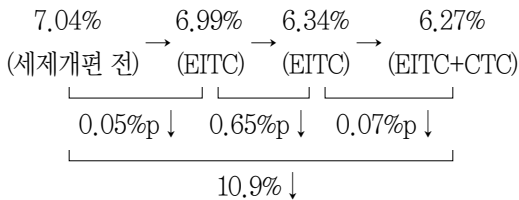
**1 정책적 함의**

-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아동빈곤 예방)** 2015년도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자녀장려세제(CTC)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중요한 정책임

**2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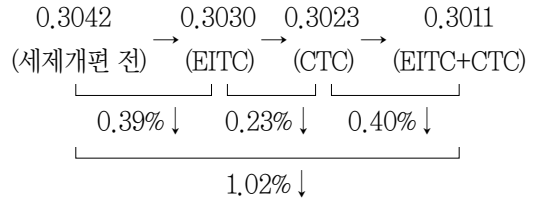
- 빈곤 감소효과: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10.9% 감소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세후지니계수는 0.3042에서 0.3011로 1.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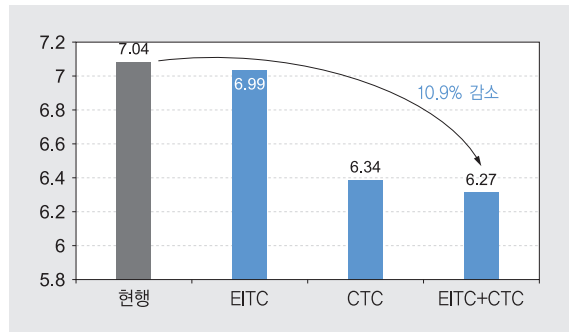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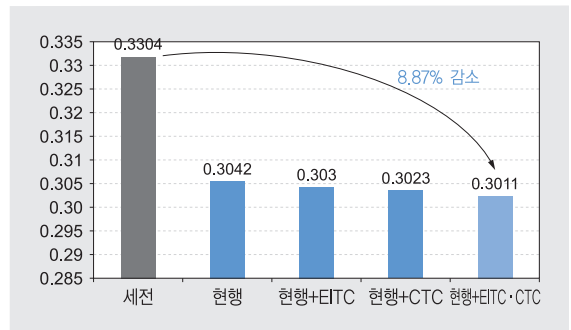
[그림] EITC 확대 및 CTC 도입시 기대효과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빈곤 감소효과: 빈곤율〉

(단위: %)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지니계수〉



주 1. 빈곤 감소효과: 근로소득자 가구 중 자녀 수 0명인 경우와 실업 가구 제외  
 주 2.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1인 이상 근로소득자 가구

## I.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제도 현황 및 국제 비교

- **(가족지원 공공지출 미흡)** 우리나라의 가족지원(Family Benefits)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치인 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조세지원제도)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등
  - (현금지원제도) 자녀양육수당,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돌봄교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

〈표 1〉 주요국의 가족지원제도로 인한 공공지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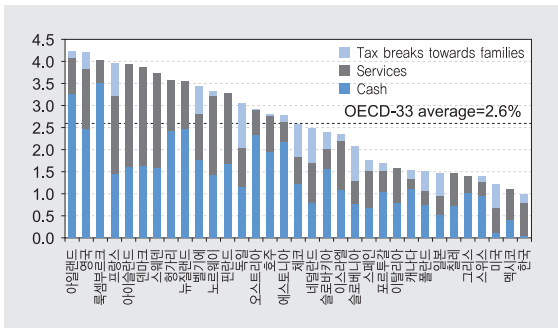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OECD 평균
공공지출	1.01	1.22	4.22	2.83	1.55	3.56	2.6

주: 2009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그림 1] OECD 회원국의 현금·서비스·조세를 통한 가족지원 공공지출 수준



주: 2009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II. 우리나라 아동빈곤 및 경제활동 현황

- **(빈곤 현황)**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비교시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볼 때, 소득 1분위 100%와 2분위의 98.13%까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

〈표 2〉 소득분위별 빈곤분포

(단위: %)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빈곤분포	100	98.13	0.0	0.0	0.0	0.0	0.0	0.0	0.0	0.0

- **(아동빈곤 현황)**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본 빈곤율은 전체 가구 19.85%, 아동 가구 8.5%
  - (경제활동별 빈곤율) 홀벌이 가구 빈곤율: 9.41%, 맞벌이 가구 빈곤율: 2.06%
  - (아동 수별 빈곤율) 아동 1인 3.95%, 아동 2명 3.5%, 아동 3명 가구 0.85%, 아동 4명 가구 0.17%, 아동 5명 가구 0.04%임
  - 각 아동 수에 따른 가구의 빈곤비율(=아동 수별 빈곤율/아동 수별 가구비중)
    - : 아동 1명: 9.7%, 아동 2명: 6.8%, 아동 3명: 11.1%, 아동 4명: 31.5%, 아동 5명: 80%

〈표 3〉 아동 수별 빈곤 현황(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명, %)

아동 수	1	2	3	4	5
빈곤율 (빈곤비율)	3.95 (9.73)	3.50 (6.84)	0.85 (11.14)	0.17 (31.48)	0.04 (80)

주: ( ) 안은 각 아동 수에 따른 가구의 빈곤비율(=아동 수별 빈곤율/아동 수별 가구비중)임

- **(아동가구의 경제활동 현황)** 저소득 가구가 자녀 수가 많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홀벌이 가구

보다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 수별 월평균 소득) 아동 1명: 229만원, 아동 2명: 221만원, 아동 3명: 187만원

〈표 4〉 아동 수별 월평균 소득 현황

(단위: 명, 만원)

아동 수	0	1	2	3	4	5	전체
월평균 소득	187.19	229.12	220.76	186.88	149.98	81.46	201.90

- (월평균 소비지출)  
소득 1분위: 홑벌이 172만원/맞벌이 211만원  
소득 2분위: 홑벌이 168만원/맞벌이 184만원

〈표 5〉 경제활동별·소득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단위: 만원)

	홑벌이	맞벌이
1분위	172	211
2분위	168	184

### III. 해외 주요국의 CTC 운영사례

- (국제비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동빈곤 예방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CTC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본모형) CTC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평탄-점감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만 점증-평탄-점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원수준) CTC 지원수준은 자녀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 수 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 (EITC와의 중복적용 여부)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EITC와 CTC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제도의 정책목적 및 정책대상이 다르므로 EITC와 CTC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신고시기 등) CTC의 신고시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자격요건 충족시 신고함

- CTC 수급시기는 연단위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주 또는 연단위로 선택 적용하고 있음

- (조세지출수준) 자녀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EITC가 우리나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EITC 및 CTC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약 9.2%, 영국 약 9.1%, 캐나다 약 5.3%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6〉 주요국의 EITC 및 CTC 조세지출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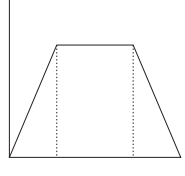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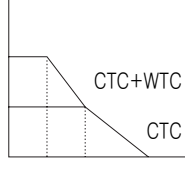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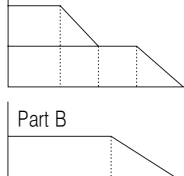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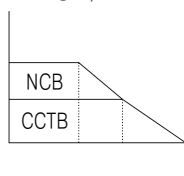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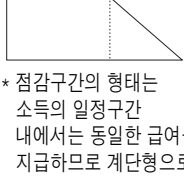
(단위: 한국 억원, 미국 십억\$, 영국 백만£, 호주 백만\$, 캐나다 백만\$, 뉴질랜드 백만\$)

	한국 <sup>1)</sup> (2013 전망)	미국 <sup>2)</sup> (2013년)	영국 <sup>3)</sup> (2011-12)	호주 <sup>4)</sup> (2012-13)	캐나다 <sup>5)</sup> (2011)	뉴질랜드 <sup>6)</sup> (2011-12)
EITC+CTC	6,821 (2.29%)	118.2 (9.18%)	29,203 (9.10%)	2,050 (1.78%)	11,124 (5.28%)	2,676 (68.73%)
총조세지출	297,633 (100.0%)	1,286.3 (100.0%)	320,720 (100.0%)	115,020 (100.0%)	210,737 (100.0%)	3,893.4 (100.0%)

- 주: 1) 한국: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2) 미국: Child Tax Credit(CTC),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3) 영국: Child Tax Credit(CTC), Working Tax Credit(WTC)  
4) 호주: Family Tax Benefit(FTB)  
5) 캐나다: Canada Child Tax Benefit(CCTB)-National Child Benefit(NCB), Child Disability Benefit(CDB),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  
6) 뉴질랜드: Family Tax Credit(FTC)는 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근로요건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CTC와 유사하며, 기존의 Child tax credit는 근로 시간 요건을 포함한 In-Work Tax Credit(IWTC)로 대체되어 우리나라의 EITC와 유사함

자료: 각국의 국세청

〈표 7〉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CTC) 비교

	미국 <sup>1)</sup>	영국 <sup>2)</sup>	호주 <sup>3)</sup>	캐나다 <sup>4)</sup>	뉴질랜드 <sup>5)</sup>
도입연도	CTC: 1998년	CTC: 2003년	FTB: 2000년	CCTB: 1998년	FTC: 1986년
도입목적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의 재정적 지원	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성격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 * 최소소득 USD 3,000 초과분의 15% 한도 환급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공제대상	- 연령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연령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장애아 추가지원	- Part A: 일정 소득금액 미만의 가구 - Part B: 한부모, 부부 중 1명만 주된 소득이 있는 가구	- 연령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Base Benefit(기본) + NCBS(저소득가구) + CDB(장애아가구)	- 연령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연령요건	17세 미만	16세 미만 아동 또는 16~20세 학생	16세 미만 또는 16~20세 미만 학생	18세 미만	19세 미만
급여금액 (연기준)	자녀 1인당 최대 USD 1,000	CTC: 자녀 1인당 GBP 2,720 - 가족요소에 추가하여 지급	- Part A(자녀 1인당) • 최대수령액: 자녀나이별 AUD 1,434.16~5,824 • 기본수령액: AUD 1,434.16 - Part B(가구당) • 자녀 5세 미만: AUD 4,171.95 • 자녀 5~18세: AUD 3,018.55	<CCTB Base Benefit> • 자녀 1인당 CAD 1,433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CAD 100씩 추가  <NCB> • 첫째자녀 CAD 2,221 • 둘째자녀 CAD 1,964 • 셋째자녀 CAD 1,869  <CDB> 자녀 1인당 CAD 2,626	- 연령별 차등지급 • 첫째: NZD 4,822 또는 5,303 • 둘째: NZD 3,351~4,745
공제모형	점증, 평탄, 점감 	평탄, 점감 CTC+WTC CTC 	평탄, 점감 Part A Part B 	평탄, 점감 NCB CCTB 	평탄, 점감  * 점감구간의 형태는 소득의 일정구간 내에서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단형으로 나타남

주: 1) 미국: Child Tax Credit(CTC)  
 2) 영국: Child Tax Credit(CTC), Working Tax Credit(WTC)  
 3) 호주: Family Tax Benefit(FTB)  
 4) 캐나다: Canada Child Tax Benefit(CCTB)-National Child Benefit(NCB), Child Disability Benefit(CDB) 포함  
 5) 뉴질랜드: Family Tax Credit(FTC)는 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근로요건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CTC와 유사함  
 자료: 각국의 국세청

### IV.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 ①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보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중산층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함
- ② **(기본모형)**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평탄-점감구간
- ③ **(최대급여수준)** 아동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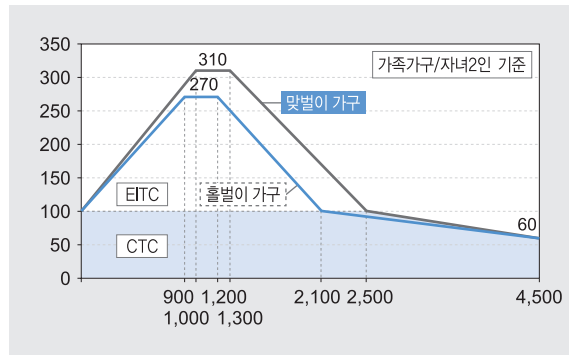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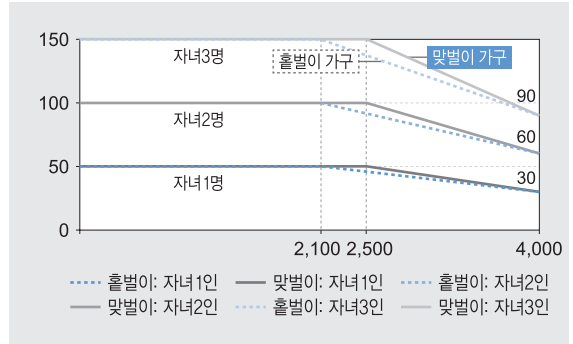
〈표 8〉 자녀장려세제(CTC) 소득구간 및 지원수준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홀벌이	×	~2,100만원	~4,0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맞벌이	×	~2,500만원		

※ 인적공제 중 다자녀, 자녀양육비, 출산·입양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그림 2] 자녀장려세제(CTC) 모형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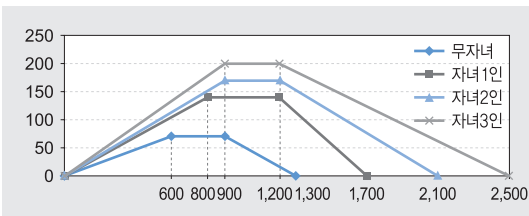


###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기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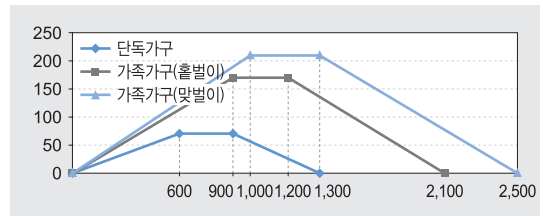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	~1,300	70
자녀 1인	~800	~1,200	~1,700	140
자녀 2인	~900	~1,200	~2,100	170
자녀 3인 이상	~900	~1,200	~2,500	200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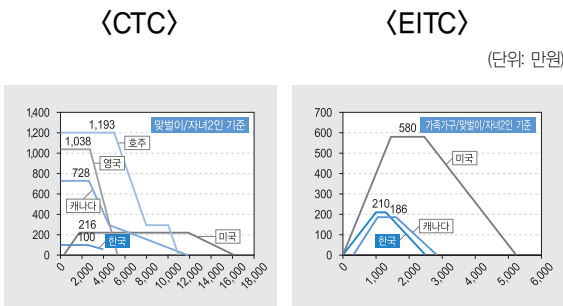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단독가구	~600	~900	~1,300	70	
가족가구	홀벌이	~900	~1,200	~2,100	170
	맞벌이	~1,000	~1,300	~2,500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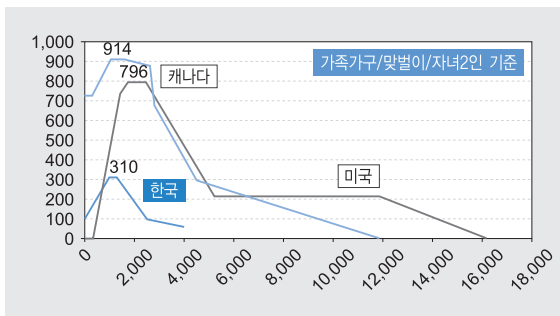
- (해외 주요국과의 지원수준 비교) 맞벌이/자녀 2인 가구 기준 최대지급액은 원화 환산시 영국 약 1,000만원, 호주 약 1,100만원, 캐나다 720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00만원에 비해 7~11배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ETIC 및 CTC 지원수준은 지급방식이 유사한 미국 및 캐나다와 비교하여, 소득수준과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크게 낮은 수준임

[그림 3] 해외 주요국과의 CTC 및 EITC 지원수준 비교



주: 1. 호주: 자녀 13~19세의 최대수령액(2주당 224.00) 수령을 가정  
 2. 영국: 가족요소와 자녀요소의 합계  
 3. 캐나다: CCTB 기본급여 및 NCB 합계  
 4. 2013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  
〈CTC+EITC〉



주: 1. 캐나다: CCTB 기본급여 및 NCBS 합계  
 2. 2013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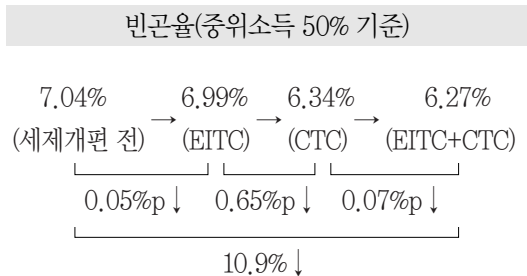
## V.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 및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아동빈곤 예방)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아동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자녀장려세제(CTC)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중요한 정책임

### 가. EITC 확대와 CTC 도입으로 인한 빈곤 감소 및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 ① 빈곤 감소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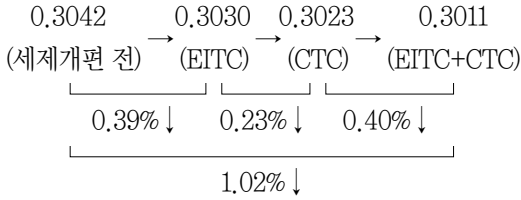
- EITC 확대와 CTC 도입 후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10.9% 감소



#### ②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 EITC 확대와 CTC 도입 후 세후지니계수는 0.3042에서 0.3011로 1.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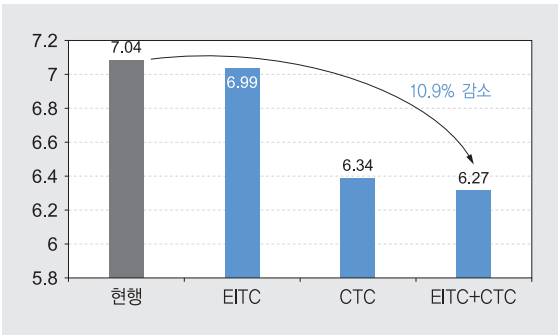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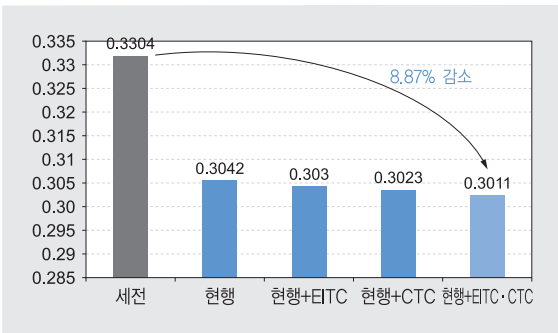
[그림 4] EITC 확대 및 CTC 도입시 기대효과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빈곤 감소효과: 빈곤율〉

(단위: %)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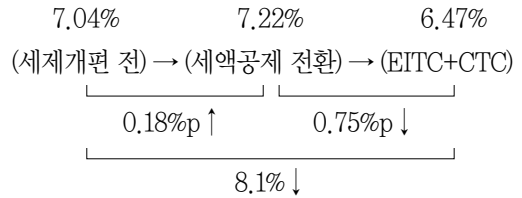
주 1. 빈곤 감소효과: 근로소득자 가구 중 자녀 수 0명인 경우와 실업 가구 제외  
 2. 소득재분배 감소효과: 1인 이상 근로소득자 가구

나. 2013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빈곤 감소 및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① 빈곤 감소효과

-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도입 반영 후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47%로 8.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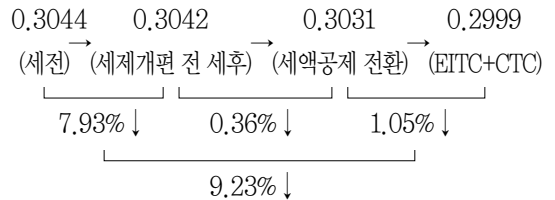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②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도입 반영 후 세후지니계수는 0.3042에서 0.2999로 1.4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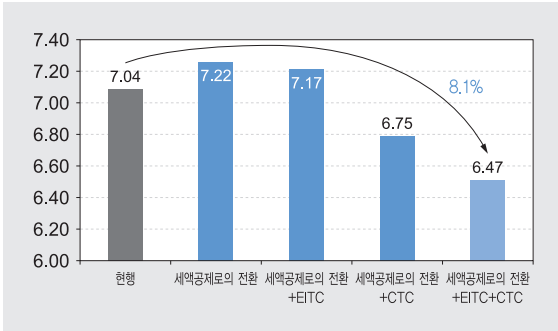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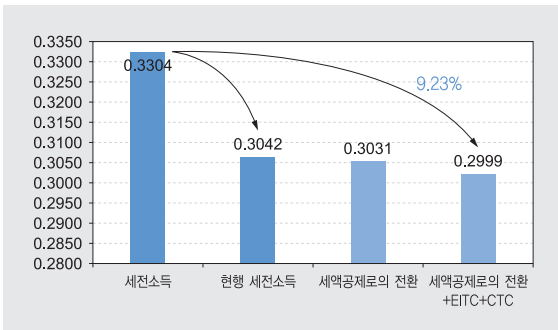
[그림 5] 2013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기대효과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빈곤 감소효과: 빈곤율〉

(단위: %)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지니계수〉



- 주: 1. 빈곤 감소효과: 근로소득자 가구 중 자녀 수 0명인 경우와 실업 가구 제외
- 2.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1인 이상 근로소득자 가구

토론 요약

정책 의도와 상반된 효과 나타날 가능성 대비 필요

권오성/국방대학교 교수

2015년부터 도입이 확정된 자녀장려세제(CTC)에 대한 용어와 개념이 아직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가운데,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도입 배경, 개요,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배경은 현 정부의 국정비전(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및 국정목표(맞춤형 고용 및 복지)와 이를 위한 전략인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를 위한 것이나, 자녀장려세제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와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학 원론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목표 및 비전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출산여성의 암묵적 기회비용이 높아진 것을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는 CTC제도가 해당되지 않고, 본 원고에서도 월평균 소득과 아이의 수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여성에게 본 제도는 하나의 보조금 지급 형태로 나타나는 세액공제이다. 이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서 여가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이므로 노동공급보다 여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

성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아동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빈곤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의 슬럼가를 들 수 있다.

또한 빈곤율과 지니계수 변화만으로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충분히 설명하며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니계수는 상대적인 것을 나타낼 뿐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소득분위 1, 2분위에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선의로 의도된 정책목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선의로 의도된 정책목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CTC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재원의 예상 소요와 예산 조달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조세의 원칙으로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도 있지만 투명성 즉,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CTC 재원, 최고소득계층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 검토 필요

김갑순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한부모소득공제, 교육비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방식을 통

한 조세지원은 면세점 이하의 근로빈곤층에게는 그 혜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13년 세계개편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므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이하 CTC)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아동빈곤 완화 못지않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소득재분배 즉,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발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근로장려세제(ET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은 그 이전보다 지니계수를 낮추어 소득재분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소득재분배의 방향이 최고소득층에서 최저소득층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바람직한 소득재분배의 방향은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진 2013년 세계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항목으로의 전환이다. 세액공제로의 전환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으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이 15%,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12%이다. 이는 한계세율이 15%를 초과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즉,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한 수입과 경비지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부담이 동일한 지출항목 금액에 대하여 9%에서 23%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들 중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초과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과 관련된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들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더라도 초과 세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더 이상의 자녀교육 부담도 없고, 보험과 연금저축 등으로 노후가 보장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초과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나, 부양가족이 많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많고, 불안한 노후를 위해 보험과 연금저축을 불입해야 하는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초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5년부터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로 인하여 소득재분배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부담을 하는 계층은 최고수준의 소득자가 아니라 그 이하 수준의 소득자,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로 여유가 없는 소득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를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동 제도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만약 우리 사회 근로빈곤층의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을 다른 누군가가 나누어져야 한다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끝나고 노후준비가 끝난 상대적 여유계층이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원을 최고수준의 소득계층에 대

해 목적세 방식으로 부과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원대상 및 수준 좀 더 높여야

김교성 / 중앙대학교 교수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EITC도 도입 당시 제도가 가지는 성격과 장·단점으로 인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조세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 혹은 'hidden welfare'의 성격이 인정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왔다. 또한 최근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복지분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대상과 지원수준의 문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소득기준인 4,000만원은 중산층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인 2,500만원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2차 생계부양자의 다수인 여성의 '근로유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소득기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실제 수급가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ITC를 보면, 수급조건을 갖춘 사람 중 실제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02만가구가 신청하였으나 수급가구는 78만 가구에 불과하다. 빈곤과 차상위계층의 규모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며, 실제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

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원수준도 복지발전 수준이 낮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그것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분석 결과가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인 적극적인 근로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ITC 제도와 더불어 점증구간의 확대, 총소득기준 및 급여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표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면, 우선 빈곤감소 효과에서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는데, 빈곤의 규모뿐만 아니라 심도(depth)를 고려하여, '빈곤 갭' 혹은 '소득욕구 대비 비율' 등 다른 지표의 활용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도의 구성과 동일하게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도 맞벌이와 홀벌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이동빈곤율 혹은 가구빈곤율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지원수준 등을 simulation 과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종단자료가 구축되면, 제도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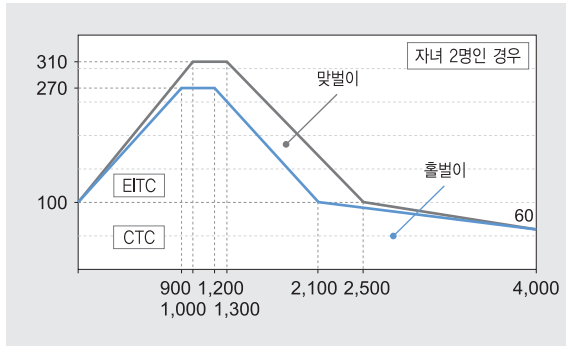
### 제도 도입으로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전망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부장

금년, 조특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CTC)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해서 운용될 예정이다. 이 두 정책이 연계되어 운용될 때 소득구간별 지급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있어 우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ITC+CTC



위 그림을 보게 되면 자녀 2명인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녀장려세제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900만~1,200만원 구간에서 최고 270만원까지 지급받도록 되어있다.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점감하다가 소득이 4,000만원에 이르면 지급액은 60만원이 되고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는 금액은 없게 된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1,000만~1,300만원 구간에서 최고 310만원까지 지급받고, 소득이 1,300만원이 넘게되면 지급액이 점감하다가 소득이 4,000만원에 이를 때 지급액이 60만원이 되고 역시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는 금액은 없게 된다.

작년까지 EITC만 적용받던 동일한 조건의 가구들은 2015년부터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장려세제의 효과에 관한 2006년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에게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 및 이로 인

한 소득창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발표자가 주장하듯이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출산 극복' 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발표가 된 내용은 아니나 금년에 개정된 세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금년에 개정된 조특법 제100의6조 제9항과 제100의3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근 기재부에서 발간한 "2013 개정세법 주요 내용"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은 법령개정의 사유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맞벌이 요소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부녀자 소득공제에서는 중복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성격이 유사하되 지급요건과 금액 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니 역시 중복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타당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 조치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이들 장려금 제도와 인적공제는 비록 그 요건이 비슷하다고 해도 정책목표가 다르다. 장려금 제도는 소득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지원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적공제는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실액의 비용을 공제해주는 대신 그에 준하는 일종의 개산공제로서 인적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용공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많은 자라고 하여도 인적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조특법상의 개정규정으로 인해 부녀자 소득공제나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급자들은 만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동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장려금과 인적공제가 단지 적용요건이 유사하다고 하여 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제를 배제한 것이므로 이들 제도에 관한 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설령 인적공제 중 부녀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정책적으로 서민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적 배려가 가미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장려금을 받는 빈곤층에 대해 굳이 부녀자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만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의 크기와 부녀자소득공제의 세액효과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부녀자 소득공제를 배제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한다고 생색만을 낸 것일 뿐 실제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설령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부녀자소득공제의 세액효과나 자녀세액공제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한 만큼 지원의 수준은 감소되기 때문에 장려금 도입의 효과가 반감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지원하는 수준이 과다하다면 이와 같은 조치가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녀장려세제의 2인 기준 최대지급액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 비교하면 1/7 내지 1/1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중복이라는 이유로 부녀자 소득공제나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시행과정 거치면서 CTC 도입의 정책효과 점차 나타날 터

문창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지난해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동 주제를 다룬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임대소득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기존의 불분명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민감한 반면, 조세체계 중 지원세제의 성격을 가진 EITC와 CTC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므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CTC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CTC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CTC의 재원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EITC가 약 6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EITC와 CTC로 인하여 2조 5천억원의 재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혜택 가구도 2013년 78만 가구에서 2017년 280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중산층 중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CTC가 4,000만원 미만의 가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7,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EITC와 CTC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향후 재정여

력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CTC의 현재 모형이 EITC와 확대와 함께 우측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CTC가 출산장려 효과 측면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예산지출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양육수당이나 기타 자녀양육 지원 정책 등을 통하여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출산율 제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빈곤율 및 지니계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연구결과를 통해서 크게 체감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성장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할 경우, 일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적이전지출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지출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정도 수준의 국민소득이 달성된다면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지출의 규모와 기능이 점차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부가 마련한 EITC 확대와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된다.

## 수혜계층이 제대로 혜택받도록 제도 설계돼야

정연성 / 삼일회계법인 상무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 목적은 크게 출산율 제고와 자녀양육경비 지원을 통한 아동빈곤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론자 중 유일한 직장여성으로서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CTC 제도 도입의 정책목적은 저출산 문제 해소 측면보다는 빈곤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한 빈곤 예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시마다 다양한 정책목적이 제시되는데, CTC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목적들을 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빈곤가정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책목적에 보다 중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CTC를 통해 환급되는 지원액이 빈곤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 중 하나이다. 또한 동 제도뿐만 아니라 EITC 도입시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환급 이후 동 제도의 정책목적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EITC를 포함한 CTC가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자녀양육비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향후에는 저소득층의 연금수급이나 건강보험 등과 연결시켜 저소득층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아동가구 및 빈곤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대상 및 지원수준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CTC의 도입은 바람직하며, 시행과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 제도가 개선해야 할 방향과 더불어 한 국가의 복지제도의 방향을 통합

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조세체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전반적인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KIP**

# 정책 연구



## 정책연구

-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홍성훈 · 성명재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김학수
-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홍범교 · 이상엽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노영훈
-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임소영 · 임송수
-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윤성주
-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  
김현아 · 김지영

#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홍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단일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도 10%로 비교적 낮다. 그리고 식품, 사교육, 농업, 금융융역, 의료융역 및 의약품 등의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도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다양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도입, 확대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이상의 제도적 요인들이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세수율이란 잠재적인 세수 대비 세수 실적의 비율로서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 기업, 공공 부문 등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다.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만약 부가가치세제도가 거래 품목

이나 거래가 갖는 특성의 사소한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면, 제도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제도는 거래 품목이나 거래 특성의 작은 차이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가능한 단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가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나라에서는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 세율이 따로 존재하는 차등 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양한 부문에 대해 면세, 영세율, 차등 세율 등이 상존하는 복잡한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는 제도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 순응 비용이 증가하곤 한다. 영국에서 초코 케이크(면세 대상)나 비스킷(과세 대상)이나를 두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논쟁에 휩싸였던 자파 케이크(Jaffa Cakes) 사례는 복잡한 부가가치세제도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가가치세제도가 단순하게 설계되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제도가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

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제도가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이 있는 복수세율 체계로 운영된다면, 여러 경제 부문으로부터 경감세율을 적용받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부문이 있다면 그러한 조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제도 단순화 개정안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스위스의 사례는 복수세율 체계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서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세율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세수율을 기준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가 세수율을 높이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면세 제도는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소비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식품, 의료용역, 의약품,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가 두드러진다. 이들 부문에 대한 면세와 금융, 사교육 등에 대한 면세를 포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의 면세가 과연 적절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모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이거나, 식품, 사교육, 의료용역 등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세수증감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B5변형/ 135면  
2013. 12.



외의 다른 면세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부가가치세율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세목이고,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이는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출 부문의 경우 영세율 제도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환급되기 때문에 수출국 내에서는 세부담에 의한 경제활동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소득층도 소비수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려 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알리고, 세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연방 선거 공약으로 세율을 인상한 독일의 사례는 세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교육, 금융용역, 의료용역, 의약품, 농업용 석유류 등의 부문에서 면세를 줄여나가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세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02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시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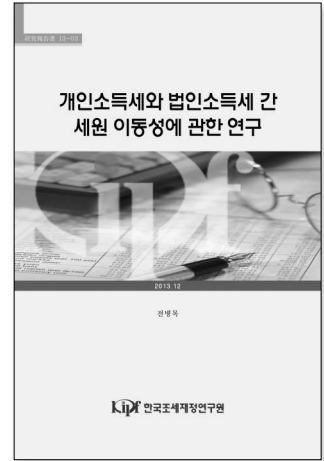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에 존재하는 세원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직접적인 세부담 주체의 차이(즉, 개인과 법인)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 독립된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체 형태는 자유롭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였을 때보다 법인 형태의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법인 전환, 자산 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분석은 상호 연관성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책의 초과부담 증가, 소득분배 등의 통계 왜곡, 세수추정의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사회적인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이동으로 소득분배 관련 통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개인소득에서 법인소득으로 소득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 이동의 결과를 소득분배의 변화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의 법인부분

이동은 소득의 형태를 이자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 Fringe benefits 등으로 다양화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소득격차를 실제보다 과소 표현할 가능성도 높다. 세수 측면에서도 세부담 축소를 위한 소득 이동으로 실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혹은 적용구간 확대의 세수증대 효과는 자영사업자들의 법인 전환(혹은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을 통해 일정 부분 회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수효과는 기대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세제에서 소득 이동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가상의 소득수준별 보상형태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 형태가 개인사업체를 통한 사업소득, 법인을 통한 100% 임금보상, 법인을 통한 100% 배당, 법인을 통한 임금과 배당 각각 50%의 보상 형태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세제는 대체적으로 임금소득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사회보장 관련 세부담으로 인해 최종적인 세부담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하였다. 세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100% 순수 배당 형태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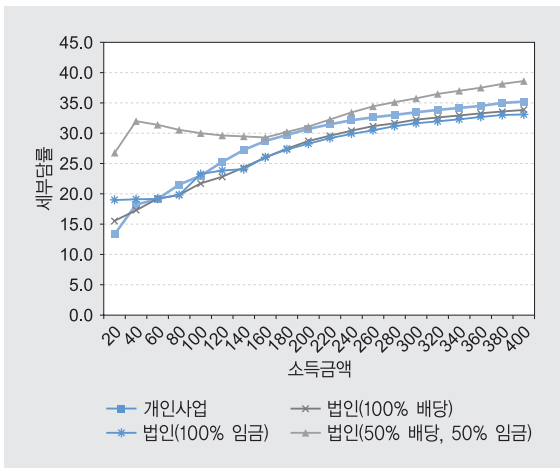
한 3가지 보상 형태의 경우,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형태에 따른 일방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담 변화가 심했다. 이는 낮은 소득수준에서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건강보험료의 종합소득기준 부과 등의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득이 약 1억원 수준을 초과하면 전반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이 가장 세부담을 낮추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소득 이동 유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최근의 법인부문 소득비중 증가의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B5번형/ 102면  
2013. 12.

[그림 1]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률 (사회보험료 포함)

(단위: 백만원, %)



주: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 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전 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한편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원인은 저소득구간에서 나타나는 낮은

사업소득세 부담과 거래의 불투명성에 기인한다. 조세제도만 고려하더라도 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개인사업이 유리한 소득 형태가 될 수 있고, 낮은 거래 투명성으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개인사업체로 존재하는 것이 같은 구간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득 이동의 경제적 인센티브 존재가 실증적으로 개인과 법인 간의 소득 이동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인과 법인부문의 소득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최고세율 격차를 이용하였다. 거시자료(국세청 통계)와 미시자료(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소득구조는 세부담 격차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자료 분석 결과 법인소득 비중은 세율 격차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수 비중과 법인의 자산이익률은 그렇지 않았다. 세율 격차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와 함께 신규 창업법인만을 분리해서(법인수 비

중 분석)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시자료 분석 결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는 소유자-경영자 형태의 법인의 자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부문 자산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법인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세부담 증가에 대응하였다.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은 결국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이동을 유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런 경향은 법인의 규모에 관계 없이 소유자-경영인의 모든 법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유자-경영인 형태 법인의 경우 소유자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이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소유자-경영인인 법인의 자산규모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약 103.0억 원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법인(조정)자산규모의 2.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개별 세목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기대한 세수효과를 얻기 어렵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를 확대시키므로 고소득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영업자들의 법인 전환 혹은 법인 소유자-경영인의 경우 자산 이동을 통해 소득세원을 법인으로 이동할 것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세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법인세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두 세목의 실효세율 차이만큼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변화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자산 이동으로 인해 나타난 개인소득의 변화는 소득구분의 변화이므로 궁극적인 소득분배의 변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지표 산정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세율 격차로 유도된 자산 이동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법인소득세수에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 한계세율 결정에 있어 두 세목 간 세율 격차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혹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확대에 대해 사업체의 법인 전환 혹은 기존 법인으로의 자산(혹은 소득) 이동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16%p(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8%,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22%)에 이르는 세율 격차를 더 이상 확대하는 논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세목 간 소득 이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세수추정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득 혹은 자산 이동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수의 과대추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계획에서 세입의 과대추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이동의 존재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KI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03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율 이동성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향후 부족한 정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현재 누가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의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국세정보 공개의 범위 및 활용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이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오던 개별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과거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법인세 부담 완화 또는 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개별 법인들의 납세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 실태를 보다 정확히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여러 기준의 기업 특성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으

로써 향후 전개될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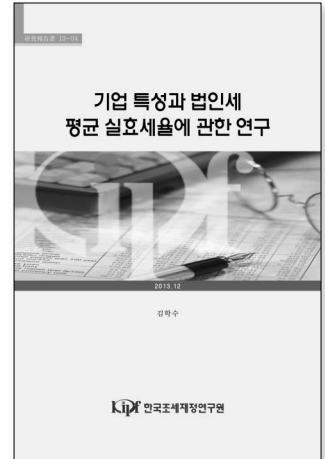
먼저 법인세 신고자료를 총합하여 발표하고 있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 특성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법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와 함께 1999년 이후 추세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큰 폭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을 소폭 상회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법인세율의 국제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분포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법인세 신고현황을 입수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최근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자본 수출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높아서 평균 실효세율도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은 2015년부터 소규모 법인들의 30만파운드 이하

의 소득에 과세하던 20%의 세율로 단일화하여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8%포인트나 인하할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 현재 23%의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법정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했던 자본 수출국들이 법인세율을 우리 수준 또는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하 논의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초우량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보다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실효세율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 위해 총부담세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자료가 가용한 미국 및 호주와 비교했다. 두 국가 모두 총부담세액이 큰 기업일수록, 즉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실효세율은 원화 환산 0.8억~1.1억원 구간의 32.3%로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약 1,118억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은 21.6%에 불과하다. 미국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3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은 법정 최고세율보다 13.4%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는 원화 환산 5억~10억원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이 27.47%로 가장 높고 최고 구간인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은 24.67%로 이전 구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자료는 현재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



B5변형/ 380면  
2013. 12.

인 과세정보이지만, 국세통계연보의 발표 시점과 수록 내용은 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발표 내용 이외의 보다 세분화된 정보는 파악할 수 없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 사업연도 말에 일반대중들에게 발표되는 기업재무제표상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 정도와 분포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의 기업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차감전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 1원당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실효세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국세통계연보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오차율 분석을 수행했다. 다양한 기준별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의 평균 실효세율 오차율이 낮게 나타나며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부담 수준과 분포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수입금액규모별 또는 산업별·자본금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은 많은 기업들이 분포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경우를 대체하여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업 특성별 평균 실효세율 측정 결과들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산업 수준의 실증분석과 기존 해외연구 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 결정요인 분석을 우리나라의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투자와 고용지표는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내외 경제 여건들에 의해 결정된 최종 결과이지만 일부 법인세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는 여러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는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 결정요인 분석 관련 기존 연구 결과들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는 정치비용이론과 기업규모와 실효세율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정치권력이론에 의거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두 가지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이나 매출 또는 법정 기업규모 더미변수와 같은 기업규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치적 비용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기업들이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연구개발 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집약적이고 연구개발 강도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낮다는 추정 결과는 정

치권력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자본집약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평균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 강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원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전담인력의 인건비를 기업 재무자료로부터 추출할 수 없는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는 법인세 신고자료의 부속서류들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조세지원 대상 지출금액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기업 재무자료와 함께 개별 납세 정보가 결합된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04 『기업 특성과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다양한 신상품의 출시에 따른 세제의 복잡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던 금융이 이제는 실물경제를 압도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산업이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역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산업이 워낙 빠르게 진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거래와 상품이 나타나고 있으나 각국의 세제는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과세당국이 미리 예측하여 선도적으로 금융세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금융세제를 보다 일관성 있고 단순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지극히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득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본이득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세제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금융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잡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단계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세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원적 소득세제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국제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과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규제완화 조치 등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각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OECD를 중심으로 조세경쟁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현대 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경쟁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북유럽 3국이 먼저 시행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을 감안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제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한편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제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상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일수록 금융소득도 높다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일상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성장 vs 분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원적 소득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이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제1단계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도입이다. 제2단계는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이원적 소득세제 또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선택하여 제도를 정착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세율을 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 20%의 세율은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되, 어느 정도 세수 확보를 감안한 수준이다. 그런데 20%의 세율을 부과하면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부과하는 14%의 세율과 상이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고 있는 복잡한 현행 방식을 단순화시키지도 못한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14%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 문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세율 수준으로 볼 때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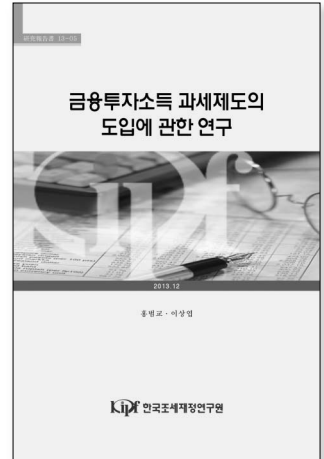
제2단계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단계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의 범위를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서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조세차익거래의 유인을 제거하여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제3단계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을 누진과세하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류과세하는 방안이다. 분류과세하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누진단계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세부적인 안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20~30% 정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되,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4~2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3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소득안에서 간단한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원적 소득세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나 14%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은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되, 여기에도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더욱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전히 근로/사업소득 등과는 분리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는 자본소득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방안이다.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는 종합과



B5변형/ 158면  
2013. 12.

세의 강화방안이 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장기투자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면서 현행 미국이나 영국의 과세방식과 유사한 종합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지향할 것인가,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경제철학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 현실적으로 효율성이나 형평성만을 전적으로 고려한 제도는 생각하기 힘들며, 결국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05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노영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택의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세 완화정책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주택시장 활황기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에 접근하게 되어 법정 명목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부담은 완화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시장 가격 하락이 거래 침체와 함께 진행되는 조정 과정에 들어서자 정부는 주택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한시적 주택취득세 50% 감면정책이 되풀이되면서 감면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반짝 상승하다가 종료 후 급감하고, 9억원 거래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주택 범위가 결정되자 9억원을 전·후하여 거래량 변동폭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취득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정책세제로 사용됨에 따라 주택취득세 50% 감면에 수반되는

세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주는가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취득세의 세율 인하를 통한 거래량 증가효과를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한 후 실증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이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이후 신고된 거래자료를 기초로 국토교통부가 집계 발표한 월별 신고집계자료뿐만 아니라 860만 여건의 개별 거래신고자료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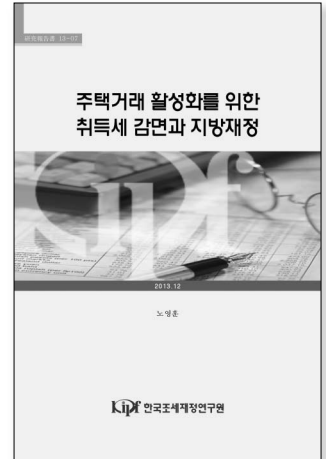
첫째, 기존 주택의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주택이 멸실되었다가 재건축 및 재개발 후 신축되어 공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분양권 거래를 거래량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주택 매매 대비 분양권 거래의 비중은 주택시장 활황기와 침체에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침체의 주택거래량을 분석할 때에는 기존 주택매매 못지않게 분양권 형태 거래(향후 입주할 신축주택 또는 재건축중인 아파트 조합원입주권 등)를 고려하는 것이 시장동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준점(baseline) 기간과 대상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거래량 침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는데, 2010년과 2012년의 경우 수도권 및 서울지역에서 특히 아파트 유형 거래가 매우 낮았음이 명백함을 여러 기준에서 밝혔다. 거래량의 기간 단위를 월로 하느냐, 분기로 하느냐에 따라 거래량 변동성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분기별 변동계수가 27.6인 데 비해 월별 변동계수는 32.4로 더 높았다.

셋째, 9억원과 같은 가격턱(price notch)이 주택 거래세제에 도입되어 세부담이 차등화된다면 고세율로 과세되는 주택들의 거래량이 하락하는 현상과 감면기간 동안에만 거래하여 세금혜택을 보려는 시간턱효과(time notch effect)를 개별 신고자료를 토대로 보였다.

넷째, 분기별 주택거래량을 설명하는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는데 2006년 이후 최근까지의 7년 여 기간뿐만 아니라 1998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주택취득세 감면이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타 요인들이 동일할 경우 취득세율을 1% 낮추면 전국 분기별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에는 0.2~0.3% 정도 늘어나고 1998년까지 분석기간을 확대할 경우 0.4~0.5%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비탄력적이기는 하나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서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즉, 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세율감면에 따른 주택취득세 감소분이 전부 세율 감소만큼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취득세 세수부분도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다섯째, 외국의 주택거래 과세제도와 비교연구한 결과, 주택거래세는 국세가 아닌 광역 및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B5변형/ 150면  
2013. 12.

대체로 평균실효세율은 1%를 넘지 않는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던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부족해지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주택취득세의 세율 감면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세수 손실 보전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해 왔고, 이는 1년 중 3개월 또는 9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반복하는 패턴을 낳게 하였다. 2013년 말에야 영유아보육 등 중앙과 지방 간 기능조정문제와 함께 자원조정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을 통해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지방세의 재정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추후 지방세·국세 세목조정을 필요로 하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KDI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07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임소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승수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농업분야를 둘러싸고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업 종사자가 감소하였으나 이들의 수가 감소할수록 이익집단으로서 조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유지 또는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농림수산분야의 재정지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정치인, 도시민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농업 보호 수준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농어민, 정치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농업 재정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각 정권의 농정기조와 재정지출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관련 민간단체들의 조직 운영 방식과 영향력 행사 방식, 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11대부터 제19대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들이 농림수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실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EU와 미국에서 농민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살펴보고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민단체를 비교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농림부 예산 비중과 품목별 보호 수준 및 품목별 재정지출을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경제학적 요소가 재정지출 및 농업 보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이익단체로서 농민들이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조직운영 방식과 활동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조직화 비용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 영세하고 재원 조달 방식이 회비에 한정되어 있어 선진국의 농민단체들처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방식은 활용하기 어렵다. 대신 우리나라 농업

관련 민간단체는 주로 정부나 학계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상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민간단체들은 온건한 방식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립보다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농가부채 문제나 시장 개방 관련 이슈 등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있을 경우 농업 관련 민간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 농어민은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다. 또한 그 결과 재정지출의 증가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농특세의 설치 및 연장과 각종 부채 대책, 시장 개방 국내 보완대책 등은 농어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의 한 축인 정치인은 도시민과 농어민이라는 두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제11대부터 제19대까지 국회의원들의 농림수산 관련 법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정치적 기반 등에 상관 없이 농업·농촌에 우호적인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둔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국민이 농업 보호 정책(또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을 지지하는 한 농업·농촌에 불리한 정책을 입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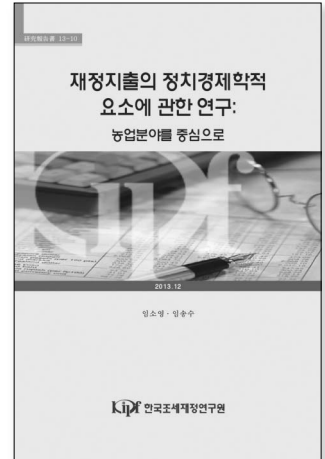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은 농민의 과격한 시위와 집단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농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뿌리의식, 농업·농촌의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직 일반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호의적 인식은 그동안의 농민단체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농민단체가 선진국의 농민단체와는 달리 로비활동보다는 대국민 호소가 가능한 시위와 집회라는 방법을 자주 활용하였던 데에서 드러난다.

본 연구의 제V장에서는 국내 농업을 대상으로 농업인구의 특성과 재정지출 또는 농업 보호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회귀분석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농업분야의 축소가 이익집단의 형성 및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거나 농업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림부 예산 및 품목 보호 수준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집단행동 모형과 관련된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OECD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을 포함하여 국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즉 농업인구는 재정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농업인구의 감소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농업 보조의 수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고령화·과소화는 농업의 정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1990년대에 있었던 농업 예산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들은 그동안 시장 개방의 경험을 통해 값싼 농산물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줄었으며 농민단체의 과격한 요구에 피로감을 느껴왔으므로 농업·농촌에 대한 보호의식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는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한 가정이지만 최근 10년간 농림부문 예산의 연평균 감소율이 향후 10년간 계속 적용된다면 2012년에 4.7%이던 농림부 예산 비중이 2023년에는 3.3%, 5.6%이던 농림부문 예산 비중은 4.2%가 될 것이다. 동시에 농림어업 GDP의 비중은 2011년 기준 2.4%에서 2023년에는 1.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2023년 기준 농림부문 예산 비중은 농림어업 GDP 비중의 2.8배에 해당된다. 이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농림어업 관련 예산 비중은 농림어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일본의 경우 2010년에 농림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농림어업 GDP 비중의 1.6~5.4배에 이르고 있다.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게 되더라도 경제적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경제적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 즉, 농업인, 정치인, 그리고 정부는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반드시 지



B5번형/ 187면  
2013. 12.

양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국가예산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성과주의에 입각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성과와 국회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 결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지속 여부나 예산 규모를 매년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복지 및 지역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 타당성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지지 확보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끼워넣기식의 예산 편성을 방지하도록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민단체는 정부의 정책 실패나 시장 개방 등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농민



단체는 사업의 유지 또는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정책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하여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활동의 대부분이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요소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인 정부의 활동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10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은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와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부양인구를 증가시켜, 세수감소(근로소득세, 소비세 등) 및 세출증가(복지지출, 건강보험, 연금 등)를 통해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포함한 포괄적인 고령자 고용증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고령화 현상을 확인하고, 건강수명 연장이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고령자 고용 확대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년연장의 상향조정과 같은 고령자의 노동참여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수명(장애나 질병이 없는 기간)도 연장되었다면 고령근로자의 노동참여 활성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건강한 고령화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평균수명 증가가 건강수명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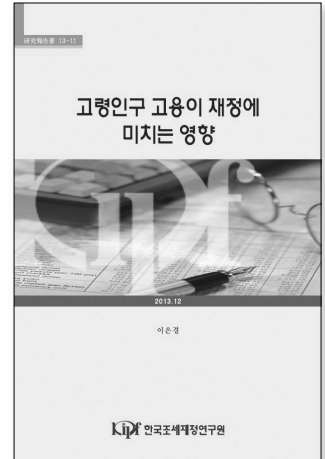
을 보이고, 한국의 종단면 데이터(노동패널, 노후보장패널)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건강수명이 증가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수명 연장, 즉 건강상태 개선이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령자패널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정년연령은 65세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50~64세 중고령자로 한정하였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혹은 좋음), ADL, IADL, 만성질환 개수를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산변수를 사용하였다. 주된 추정모형은 프로빗과 IV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혹은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중고령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약 10%가량 높았고, 주관적 건강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 프로빗 모형에서는 그 확률이 약 6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건성 테스트에서는 중고령자의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직업의 중

류, 직종, 자산의 규모, 재취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지 검증해 보았다.

고령자의 노동참여 증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 4월에 타결된 정년연장법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연장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임을 감안하면 약 7만 2천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분은 정년연장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은퇴하였을 사람들이 근로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근로소득 세수, 연금, 건강보험료 기여분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정년연장법으로 인한 단년도 재정수입 증가분은 약 2,500억원으로 2012년 GDP 대비 0.02%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장려정책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세제 혜택은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고령자 고용 증대가 청년고용을 구축한다면 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고령자 고용 증대가 청년고용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노동수요자, 즉 고용주(기업)에 대한 정책으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너스 및 임금보조금을 제공하는 재정지출 방식과 세금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세제 혜택 방식이 있다. 또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자에게 직업 훈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B5변형/ 143면  
2013. 12.



주는 방식이 있다. 반면, 공급적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근무형태 유연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고령근로자 소득에 대해 유리한 세제 혜택 적용, 추가 연금 및 보너스 제공 등 고령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참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직장 내 고령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 검진, 예방 프로그램, 웰빙센터 운영,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 증대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세대간 부양부담도 완화하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인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년연장법에서 보장하는 60세보다 정년

연령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도 평균 수명이 낮은 독일, 덴마크, 영국, 핀란드에서도 정년 연령을 60대 후반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이 71세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 연령을 점차 60대 후반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고령자 고용 증진정책은 청년 일자리와의 경합성, 기업의 생산성 하락 등 노동시장의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과 노동공급자인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공급자인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세제혜택 확대, 추가 연금 및 보너스 지원)를 주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투자 역시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문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였듯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그들의 건강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및 검진제도 마련, 유연한 근무제도 확립을 통한 노동의 강도 조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시켜 소득창출활동을 장려하고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복지지출 지급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령인구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

기 전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령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함께 어울려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 당장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11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족구조 변화 및 여성의 경제참가율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는 향후 공식적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낮은 시기인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제도 도입 6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적·사회적·임상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제도의 운영·관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출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서비스의 질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공급 측면)과, 현재 이용량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률을 이용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방안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고, 모델 설정 및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하여 해당 방안을 제도에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지출 감소액 규모와 이에 대응하는 추가적 수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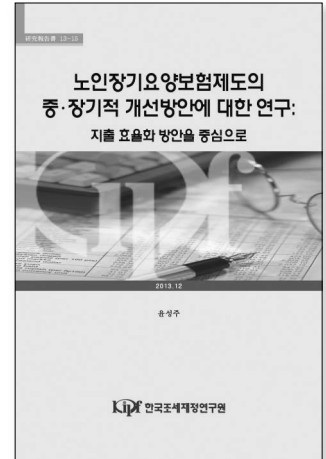
능자 수를 여러 정책변수 및 대상자 분포하에서 계산하였다.

개선방안 제안에 앞서 제IV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 여성가구주 비율, 가구주 교육수준, 보험보유 비율 등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급여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V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공단의 지급급여 차등화 방안은 제도 도입 이후 짧은 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로 인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였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 및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다수 나타났으며, 우수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사이의 차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많이 개설되고 있는 소규모 기관들이 평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 결과 나타나는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을 이용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2개, 3개, 5개 등급으로 차등화하는 방안 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등급의 비율, 등급 간 급여 차이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A~E의 5개 등급을 가정할 경우, 현 수준 대비 공단의 지출 감소액 수준은 가정한 정책변수들 하에서 1,358.85억~13,044.96억원 수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현재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13,747~131,971명을 새로이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다음으로 이용량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제도 도입 이후 이용자 총수뿐만 아니라 1인당 요양비와 이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176일이었던 1인당 요양일수는 2012년 217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감 대상자와 기초수급자의 이용량이 일반 대상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률이 이용량에 따라 2단계 계단식 방식과 Coverage Gap이 존재하는 3단계 방식으로 변화하



B5번형/ 177면  
2013. 12.

는 모델을 설정하고, 임의적인 정책변수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상자와 좋지 못한 대상자의 비율, 본인부담률 차등화 정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적용하는 이용량 수준 등 정책변수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건강한 대상자가 많고 이용량 관련 정책변수가 Coverage Gap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현재 수준 대비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액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급여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수가를 높여야 할 시점에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본인부담금 차등화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제도 변화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좋은 상태에 있는 3등급 일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제도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 사회가 고령 및 초고령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시된 두 가지 지출 효율화 방안은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는 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에 있어 한계점은 시뮬레이션 수행에 있어 특정 정책변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 도입에 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연구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후속연구에서 논의되기 바란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 지방채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세입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가 부채가 우려되는 이유는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세대로 이전시키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그 기본 성격상 일반정부의 채무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가 밀접한 경우에는 더더욱 지방공기업 부채는 중앙정부의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와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재원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지방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가능한 대안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초점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부채감축 방안에 맞추어져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 부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대책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단기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점차 제도적인 관리만 강해지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적으로 일

반회계 세입항목처럼 채무와 공기업 부채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채무 수준, 채무 수준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살펴보았다. 재정위기 이후 외부충격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변화, 즉 채무 수준, 중앙정부와의 채무부담비율 변화 등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무부담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 정부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기준 단일국가 기준 중앙 대 지방의 채무비율 부담은 65.7% 대 7.1%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재원 비중이 9.2%로 OECD 단일국가 평균 5.4%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 채무 수준은 해당 국가의 지방세 비중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관련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공기업 부채를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과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하수도와 도시철도의 공공요금 인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경제위기 이후 공공투자 감소가 상하수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둘째,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사업분담 내용이 나라마다 매우 다르고, 따라서 민영화 수준 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 전기분야는 거의 국가공기업이 전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방공기업과의 사업분담 내용이 가능하지 않다.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지역 경제성장 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소득 수준 향상, 공공서비스 차별화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 지방공기업의 사업 내용도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수 있고, 이 경우 민영화를 포함한 경영구조 개편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본 연구는 우선 지방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의 경제적·정치적인 성격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대안에 앞서 실증분석을 통한 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주요 성격 규명에서는 지가상승률, 즉 경기변수가 도시공사 부채비율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기 여부에 따라 부채비율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단체 도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는 다소 희석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해당 도시공사가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한 재정수요 예측을 할 때 거시경기 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사업타당성 단계에서 충분한 거시경기 전망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공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검토도 필요함도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사업초기단계의 높은 차입금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 차후적으로는 다각적인 수익모델 구축과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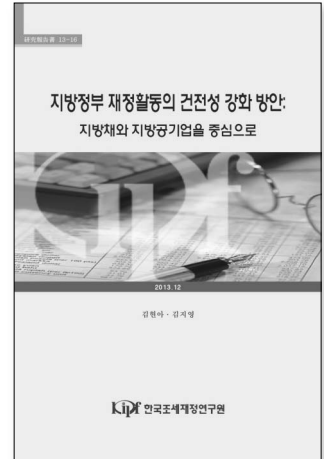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과 공기업의 공익성상 불가피한 특성만으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수준을 용인하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재정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요금규제적인 성격의 상하수도나 도시철도공사는 필수 공공서비스 공급을 이유로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데 결국 미래에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므로 재정위험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부채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기존 연구와 안전행정부의 재무 감축방안에서는 공공요금 의존도가 높은 상하수도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요금 합리화 방안과 자치단체 재원보전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무적인 적자구조의 핵심은 요금규제에 있으므로 일정부분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고용불안정, 집값 하락 등이 문제인 시기에 실질적인 물가인상을 의미하는 '요금인상'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적자요인 해결을 요금인상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노력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둘 때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존 분석 결과 모니터링 기준 강화와 공기업 설립요건 강화의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공기업 운영관리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채무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긴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의 채무비율을 낮춘 경우라면 낮은 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재정수요 증가 속도는 주요국에 비하여 빠른 편이고, 법정지출의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전재원이며 따라서 주요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이전재원 비중을 유지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 하에서의 해당 자치단체 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이 낮다는 것은 높은 이전재원으로 설명 가능하고, 해당 지역은 정치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재정수요 부담을 중앙정부로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낮은 채무비율은 '재정책임 회피율' 지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채무비율이 해당 지역의 재정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재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사용자부담 원칙'과 '재원 사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채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총액한도제의 규제적인 성격을 완화하고 동시에 채무 관련 재정관리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위기 관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채무관리 시스템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제도적 관점으로는 자본계정(capital expenditure)의 별도 관리방안이 있을 경우, 최소한 자본지출 계정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자치단체 예산상 자본지출 항목이 있긴 하나 예산운용 관점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자본지출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차후 지방 채무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항목



B5번형/ 237면  
2013. 12.

에 해당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도 계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채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국제기준을 근거로 지방공기업의 일반정부 포함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폭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관리대상 잠재채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부채의 성격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 의존도 등을 볼 때 일반정부의 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가재정 전체로 볼 때 공기업 부채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재원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세수입 조달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재정수요 사업을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특수목적(special purpose vehicle) 재원수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변수 외에 정치적인 변수를 살펴보는 등의 공기업 설립요건 강화와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손쉬운 재정수단을 만들어 놓고 이를 재정목적 외에 사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

의적인 재원활용수단으로 지방공기업을 활용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한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설립 단계별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감독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운용하는 자치단체와 의회,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역학구조상 지방공기업은 특수목적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다.

공기업 설립을 통한 재원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92년 이후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거시경기 위축'이 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었고, 투표율로 나타난 해당 지역의 정치적 관심 정도가 부채비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단체장과 광역의회다수당의 일치 여부도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추가 분석의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공사 부채가 상당부분 외부적인 경기 충격으로 설명 가능하고,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지역의 민심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원사용을 위한 특수목적수단으로 공기업을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는 공기업 부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주요 재무분석 지표와 제도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분석이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분석의 한계로 밝히고자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3-16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4-02

##### 요약

- 캐나다 재무부는 2014년 2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서 개인소득세, 기업세제, 소비세 등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개인소득세 개정안에는 입양비용 세액공제 한도 및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확대, 수색·구조 자원자 세액공제(search and rescue volunteers tax credit) 도입 등이 포함
  - 기업세제로는 소규모사업자의 원천공제액(source deduction) 납부횟수 축소, 가속 자본비용공제(accelerated CCA) 대상 클린에너지 생산 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포함
  - 소비세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의 GST/HST 매입세액공제 산정 주체의 변경, 특정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료장비에 대한 GST/HST 면세·영세율 적용의 확대 등이 포함
- 오스트리아는 2014년 1월 연결납세정책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연결납세 대상이었던 국외기업의 범위에 대한 조정이 개정의 주요 내용임
- 네덜란드는 국제금융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네덜란드 법인들의 사업실체(substance) 구비 및 관련 보고 의무를 규정한 신규 조문을 2014년 1월 1일

자로 확정·발효함

-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국제금융 또는 라이선스 거래를 통해 비거주자들로부터 이자·로열티·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네덜란드 소재 법인납세자임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4년 2월 12일자로 VAT 관련 행정협조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EU 이사회(EU Council) 및 유럽 의회(EU Parliament)에 제출함
  - 보고서는 VAT 관련 EU 각국 간 협조사항 등을 적시한 기존 EU 규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탈세(VAT fraud)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이기도 함

#### 1. 캐나다 2014년 예산안 발표<sup>1)</sup>

- 2014년 2월 11일 캐나다 재무부(Minister of Finance)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하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함
  - 동 예산안에는 개인소득세분야, 기업세제분야, 소비세분야, 국제조세분야 등에 걸친 세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임

#### 가. 개인소득세 분야

- 입양비용 세액공제(adoption expense tax credit)의 한도를 확대함

1) 캐나다 재무부 <http://www.budget.gc.ca/2014/docs/plan/pdf/budget2014-eng.pdf>

- 입양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며, 현행 아동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11,774캐나다달러인데, 2014년에는 15,000캐나다달러로 인상함
- 2015년 이후에는 2014년의 15,000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물가수준을 연동하여 한도액을 조정함
- 수색 · 구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액공제(search and rescue volunteers tax credit)를 도입함
  - 육상 · 항공 · 해상의 비상사태 시 수색 · 구조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연 200시간 이상의 수색 · 구조 활동을 한 자에게 '3,000캐나다달러+실비의 15%' 금액을 세액공제함
-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함
  - 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 만성 · 중증의 신체적 · 정신적 상해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계획(individualized therapy plan)에 발생하는 비용
    - 중증 당뇨환자를 돕기 위해 훈련된 활동보조 동물(service animals)에 발생하는 비용
- 도관주식(flow-through share) 투자를 통한 광물개발 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적용을 1년 연장함
  - 즉, 2015년 3월 31일 이전까지의 도관주식 투자와 관련된 계약에 한해서 동 세액공제를 적용함
    - 도관주식에 투자한 개인은 캐나다 소재 특정 광물의 탐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업 종사자에게 있어서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과세이연(tax deferral)이 적용되는 피해 가축(breeding livestock)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
  - 현재 가뭄, 홍수, 고습 등으로 인하여 사육하는 가축을 비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이익을 과세이연해주고 있는데, 이 가축의 범위에 벌(bees), 생후 12개월이 지난 모든 종류의 말(horses)도 포함시킴
    - 과세이연이란 관련 이익의 90%를 차년도 이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함
-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플랜(Registered Pension Plan) 탈퇴에 따른 연금액의 퇴직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으로의 이전 시, 특정 상황에서의 비과세 규정을 2012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연금플랜(RPP) 탈퇴 시 수령하는 해약 일시금 중 공식에 의해 산출한 일정 부분만큼은 비과세의 방식으로 퇴직저축플랜(RRSP)으로 이전이 가능함
  - 다만, 연금플랜(RPP)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탈퇴 회원의 예상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동 수령액 감소분(benefit reduction)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전금액(a tax-free transferable amount) 계산 시 고려되지 않으며, 이 규정은 2012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함
    - 즉 비과세 이전금액은 줄어들지 않게 됨
- 소득세법상의 분리소득(split income)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함
  - 분리소득에 대한 과세(tax on split income) 제도는



고소득층 개인의 특정 유형의 소득을 그들의 미성년자(minor)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sup>2)</sup>

- 이번 예산안에서는 분리소득(split income)의 정의에 특정 상황에서의 신탁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배분된 소득을 포함하도록 함
- 조세회피(tax shelter) 목적으로 취득한 공인 문화재(certified cultural property)의 기부에 있어서는 시가가 아닌 취득가액으로 평가함
-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공인 문화재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계산하도록 함

#### 나. 기업세제분야

- 소규모 사업주의 납세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원천공제액(employer source deductions)의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으로의 송금 횟수(frequency of remittance)를 결정짓는 임계점(threshold) 수준을 높임
- 원천공제액에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됨
- 송금 횟수를 결정짓는 월평균 원천공제액(average monthly withholdings)의 임계점(remittance thresholds) 수준을 다음과 같이 인상시킴으로써 송금 횟수 단축을 가능하게 함
  - 월 2회 송금해야 하는 임계점 기준을 15,000캐나

다달러에서 25,000캐나다달러로 인상함  
 - 월 4회 송금해야 하는 임계점 기준을 50,000캐나다달러에서 100,000캐나다달러로 인상함

- 세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생산·보존 장비의 범위를 확대함
- 수력발전 장비(water-current energy equipment)와 폐기물 연료의 기화 장비(equipment used to gasify eligible waste fuel)를 'Class 43.2'에 포함시킴
  - 'Class 43.2'로 분류되는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연 50% 상각률의 가속 자본비용공제(accelerated CCA)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 소비세분야

- 개인사업자의 GST(Goods and Services Tax)/HST(Harmonized Sales Tax) 매입세액공제를 국세청이 자동적으로 계산하도록 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개인납세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GST/HST 매입세액공제액을 산정하게 하지 않고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국세청이 자동적으로 공제액을 결정하게 함
  - 이러한 조치로 국세청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고지서 발송이 필요 없게 됨
- 의료산업분야(health care sector)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의료서비스나 특정 의료기기 등에 대해

2) 1996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minor)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분리소득 세제를 적용함. 여기서 '특정 소득'이란 i)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과세대상 배당, ii) 주식을 타인에게 정상가격을 벗어나 처분함으로써 얻은 자본이득 등을 의미함. 다만, i)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ii) 해당 어린이가 캐나다 비거주자이거나 그 부모가 모두 캐나다의 거주가 아닐 때의 발생 소득은 특정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음

GST/HST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제안함<sup>3)</sup>

- 장애를 입은 개인의 재활을 돕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트레이닝 서비스를 GST/HST 면세 항목에 추가함
- 침술 · 자연요법 의료서비스를 GST/HST 면세 항목에 추가함
- 전자매체에 의해 약화된 시력을 치료 · 교정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특별히 설계된 안경을 GST/HST 영세율 항목에 추가함

■ GST/HST 그룹 감면(group relief)을 선택한 특수관계자 그룹(closely related group)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그룹 소속 실체(persons)들에게 연대책임(solidary liability)을 부여함

-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그룹이 그룹 감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룹 실체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GST/HST 납부의무가 면제됨
  - 특수관계자 그룹이란 자본율 90% 이상으로 상호 연결된 법인이나 파트너십 실체들을 말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의 특수관계자 그룹 간 GST/HST 과세거래에서, GST/HST 납부책임에 대해 그룹 내 실체들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함

■ 지하경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세수국(Minister of National Revenue)에게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

-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은 자가 그 대상임

## 라. 국제조세분야

■ 캐나다 금융회사의 해외발생소득(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 FAPI) 과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추가함

- 현재 해외발생소득(FAPI)의 세부 규정에 의해 캐나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거주자의 리스크와 관련된 보험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the insurance of Canadian risks)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의 해외관계회사(controlled foreign affiliate)의 유보소득은 해외 발생소득(FAPI)으로 과세하고 있음

- 만약 캐나다 거주자의 해외 계열회사의 총보험료 소득 중 10% 이상이 캐나다인의 리스크와 관련된 보험료 소득인 경우(10% rule), 캐나다인의 리스크와 관련된 보험에서의 소득은 해외발생소득(FAPI)으로 과세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캐나다 금융기관의 해외발생소득(FAPI)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10% rule' 외에, 해외 계열회사의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관여의 직접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판단 요소를 추가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세무계획 행위(tax planning)에 대한 규제 논의를 제기함

- 이는 OECD의 BEPS Action Plan<sup>4)</sup>에 영향을 받은 것임

3) 현재 캐나다에서는 일정한 의료서비스(치과외로 포함)에 대해서는 면세를, 처방약과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보고서임



- 납세자 유형(다국적 기업, 중소기업자, 개인 등)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투자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면서, 캐나다의 세원(tax base)을 보다 잘 보존할 수 있는 세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조세조약 구매(treaty shopping)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대해 논의를 시작함
- 캐나다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유형을 정의하고, 캐나다 조세조약의 완전성(integrity)을 보 전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마. 기타

- 2016년 이후부터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s)과 조부모의 생전신탁(grandfathered inter vivos trusts)에 대하여 단일 최고세율(flat top-rate) 적용을 제안함
- 유언신탁 및 조부모의 생전신탁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신탁과 상속재산(estate)은 그 수탁자들 중 1인이 캐나다 거주자라면 그 역시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어 수익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은 유보분에 대하여 개인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함
- 2015년 이후 유언에 의한 자선단체의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은 사망 직전 개인의 기부금이 아니라, 기부모적 재산이 적격 단체(a qualified

donee)에 이전되는 시점에서 상속재산(estate)의 기부금으로 간주하기로 함

- 거주 간주 규정(deemed residence rules)의 예외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비거주자 신탁(non-resident trust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신탁에게 재산을 기부한다면, 그 비거주자 신탁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거주 간주 규정이 적용되나, 만약 그 신탁에 대한 기부자들 전부가 캐나다 거주자가 된 기간이 60개월 미만일 때에는 거주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를 60개월 면제 규정(60-month exemption rule)이라 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60개월 면제 규정을 폐지하여 비거주자 신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s)에 있어서, 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절한 적용 여부 및 투명성과 책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다만 등록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와 등록 아마추어 운동협회(registered Canadi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s)는 이번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 2. 오스트리아 연결납세 정책의 개정 제안<sup>5)</sup>

### 가. 연결납세 정책의 개정안

- 오스트리아 정부는 1월에 2014년 연결납세 정책의 개정을 제안하는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음
  - 개정안의 대상은 외국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집단이며, 현재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오스트리아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금산입 하는 회사들임
- 연결납세 정책(Group Tax Regime)은 세금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와 상호부조협약(정보교환 등)을 맺고 발표한 다른 EU 가입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인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지는 것임
  - 현행은 EU 가입국 이외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세무정보를 통한 손금산입만 인정하고자 함
  - 현재 연결납세의 정책을 적용받고 있는 비거주자 회사들 중에서 새로운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결납세에서 배제됨
- 또한 해외 자회사 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도입되어 2015년 과세연도부터 비거주자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집단 내의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인 회사 이익의 75%를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이 될 것임
  - 현재는 비거주자인 자회사의 손실이 오스트리아 거주자 회사의 이익을 전부 상쇄할 때까지 손금으로 처리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내의 회사에서 이익이 100만 유로이고, 국외 자회사에서 손실이 100만유로일지라도 현재는 모두 손금산입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75%인 75만유로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될 것임
-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손실은 이월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월손금산입 기간은 무기한임

### 나. 모회사의 합병 후 자회사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제한

-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기업집단의 모회사는 주식 취득을 통한 합병으로 생긴 자회사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연결납세 신고 시 손금산입이 금지될 예정임
  - 신설 규정은 2014년 2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취득부터 적용될 것임
  - 규정 발효 이전에 구입한 지분들에서 취득한 자산의 상각은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손금산입은 제한되며 향후 1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 3. 네덜란드 소재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실체 구비요건 법령회<sup>6)</sup>

- 네덜란드는 국제 금융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네덜란드 법인들의 사업실체(substance) 구비 및 관련 보고 의무를 규정한 신규 조문<sup>7)</sup>을 2014년 1월 1일자로 확정·발효함
  -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국제 금융 또는 라이선스 거

5)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30203.pdf/\\$file/TT730203.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30203.pdf/$file/TT730203.pdf)

6) [www.ibfd.org](http://www.ibfd.org) 및 [www.taxanalysts.com](http://www.taxanalysts.com) 참조

7) Article3a of the Implementing Decree on the Assistance in International Tax Matters



래를 통해 비거주자들로부터 이자·로열티·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네덜란드 소재 법인납세자임

- 이는 기존에 예규(ruling) 형식으로 존재하였던 사업 실체(substance) 요건을 법령화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실제 구비 여부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네덜란드 조세조약 혜택 향유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당해 납세자가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나 EU Directive 등에 따른 이중 과세 방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 납세자가 사업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해당 연도 과세소득 신고 시 밝혀야 함
- 사업실체 구비 여부는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실제 리스크 부담 여부 등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감안하여 판단함
  - 이사회 멤버 구성 및 네덜란드 거주자 여부
  -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임직원 보유 여부
  - 네덜란드 내 주요 은행 계정·회계 장부 등의 보유 여부
  - 당해 법인의 네덜란드 주소지 소재 여부
  - 당해 법인이 거래계약 관련 실질적 리스크를 부담하는지 여부
  -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실질적 리스크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 당해 납세자가 사업실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조세조약 등에서의 이중과세방지 혜택을 이용하려는 경

우, 네덜란드 당국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조약 상대방 국가에 제공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하려 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실질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이를 과세신고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의 판단을 위해 해당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상기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9,500유로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당해 납세자의 사업실체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간략히 통보할 것임
- 통보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는 상대방 과세당국의 결정에 좌우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4. EU의 VAT 관련 행정협조 및 사기방지 방안 초안보고서 발행<sup>8)</sup>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4년 2월 12일자로 VAT 관련 행정협조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EU 이사회(EU Council) 및 유럽 의회(EU Parliament)에 제출하였음
- 동 보고서는 VAT 관련 EU 각국 간 협조사항 등을 적시한 기존 EU 규정<sup>9)</sup>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EU 멤버 국가들에 대한 질문서 및 토론, 관련 수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8)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publications/com\_reports/taxation/index\_en.htm 참조

9) Council Regulation (EU) 904/2010 of 7 October 2010

-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각국 간 정보교환 등 협력 증진을 추구하는 것은 VAT 행정 효율화뿐만 아니라 탈세(VAT fraud)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이기도 함
  - VAT fraud 등으로 인한 잠재적 세수 일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EU 차원에서의 입법 및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함
  - VAT 관련 공유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상호 정보교환 등의 국가 간 협력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국가들 간에 보다 원활한 협조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은 VAT fraud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동 보고서에서는 보다 원활한 VAT 행정 협조를 위해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지적·제안하고 있음
  - EU의 요청사항에 대한 각 국가들의 답변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동적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함
  - 일국의 정보 제공에 대해 상대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각 국가들은 현행 EU 규정에 구비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국가들에 대한 정보 요청·질의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복수의 국가들이 수행하는 공동조사(joint audit)와 같은 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도 있음
  - EU 이외 국가들과의 보다 원활한 VAT 관련 행정협조를 위하여 EU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계획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항들의 이

행상황 등을 업데이트하여 2015년 말까지 후속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 EU 재무장관 회의 개최(2014.2.18.)<sup>1)</sup>

- (EU 예산) 2015년 EU 일반 예산편성지침을 채택
  - 예산 규율 준수의 필요성 강조
  - 우선순위 목표 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간의 균형달성 노력 당부
- (2014 European Semester)<sup>2)</sup> 2014년 5대 정책 우선순위\*(전년도와 동일)를 확정하며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Annual Growth Survey”를 채택
  - \* 5대 정책 우선순위: ① 차별화된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이행, ② 정상적인 대출 가능 회복, ③ 성장 및 경쟁력 촉진, ④ 실업 및 위기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대응, ⑤ 행정 시스템 현대화
-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sup>3)</sup>관련) 2014 연례 조기경보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sup>4)</sup>에 대해 논의 후, 대내외 불균형 시정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 결과를 지지하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집행위원회는 향후 16개 회원국에 대한 심층 검토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

- 단일은행정리체계(Single Resolution Mechanism)<sup>5)</sup> 이행에 대한 논의, 예금보증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s)에 대한 EU 의회와의 합의 확정,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논의 등

##### ■ EU 경제 전망(2014 겨울)<sup>6)</sup> 발표(2014.2.25.)<sup>7)</sup>

- (성장률)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가을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 조정되어 유로존(EA18)이 1.2%, EU 회원국이 1.5%로 전망
  - 2015년 GDP 성장률은 유로존이 1.8%, EU 회원국이 2.0%로 전망
  -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로존이 1.0%, EU 회원국이 1.2%로 예상
- (실업률) 2014년 실업률은 유로존이 12.0%, EU 회원국이 10.7%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전망
  - 2015년 실업률은 유로존 11.7%, EU 회원국 10.4%로 소폭 감소세가 예상됨
- (재정수지) 201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EU집행위,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056.pdf](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056.pdf)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057.pdf](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057.pdf)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063.pdf](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063.pdf)

2) European Semester: EU 차원에서 회원국의 건전 예산 편성과 성장·고용 촉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3)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로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

4)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EU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

5) 부실은행의 회생·정리와 관련한 통제를 단일화 하는 시스템

6) EU는 매년 3회(2월, 5월, 11월) “Economic Forecasts”를 통해 경제 전망을 발표함

7)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forecasts/2014\\_winter\\_forecast\\_en.htm](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forecasts/2014_winter_forecast_en.htm)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159\\_en.htm?locale=e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159_en.htm?locale=en)

〈표 1〉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sup>1)</sup>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벨기에	-0.1	0.2	1.4	1.7	2.6	1.2	0.9	1.4	7.6	8.4	8.5	8.2	-4.0	-2.7	-2.6	-2.7
독일	0.7	0.4	1.8	2.0	2.1	1.6	1.4	1.4	5.5	5.3	5.2	5.1	0.1	0.1	0.0	0.0
에스토니아	3.9	0.7	2.3	3.6	4.2	3.2	1.8	2.8	10.2	8.8	8.3	7.7	-0.2	-0.4	-0.4	-0.4
아일랜드	0.2	0.3	1.8	2.9	1.9	0.5	0.8	1.1	14.7	13.1	11.9	11.2	-8.2	-7.2	-4.8	-4.3
그리스	-6.4	-3.7	0.6	2.9	1.0	-0.9	-0.6	0.2	24.3	27.3	26.0	24.0	-9.0	-13.1	-2.2	-1.0
스페인	-1.6	-1.2	1.0	1.7	2.4	1.5	0.3	0.9	25.3	26.4	25.7	24.6	-10.6	-7.2	-5.8	-6.5
프랑스	0.0	0.3	1.0	1.7	2.2	1.0	1.2	1.2	10.2	10.8	11.0	11.0	-4.8	-4.2	-4.0	-3.9
이탈리아	-2.5	-1.9	0.6	1.2	3.3	1.3	0.9	1.3	10.7	12.2	12.6	12.4	-3.0	-3.0	-2.6	-2.2
키프로스	-2.4	-6.0	-4.8	0.9	3.1	0.4	0.4	1.4	11.9	16.0	19.2	18.4	-6.3	-5.5	-5.8	-6.1
라트비아	5.2	4.0	4.2	4.3	2.3	0.0	1.9	2.1	15.0	11.9	10.5	9.2	-1.3	-1.3	-1.0	-1.0
룩셈부르크	-0.2	2.1	2.2	2.5	2.9	1.7	1.5	1.7	5.1	5.9	6.0	5.9	-0.6	-0.2	-0.5	-2.4
말타	0.9	2.0	2.1	2.1	3.2	1.0	1.2	1.9	6.4	6.5	6.4	6.4	-3.3	-3.0	-2.7	-2.7
네덜란드	-1.2	-0.8	1.0	1.3	2.8	2.6	1.1	1.3	5.3	6.7	7.4	7.2	-4.1	-3.1	-3.2	-2.9
오스트리아	0.9	0.3	1.5	1.8	2.6	2.1	1.8	1.8	4.3	4.9	4.8	4.7	-2.5	-1.7	-2.1	-1.8
포르투갈	-3.2	-1.6	0.8	1.5	2.8	0.4	0.8	1.2	15.9	16.5	16.8	16.5	-6.4	-5.9	-4.0	-2.5
슬로베니아	-2.5	-1.6	-0.1	1.3	2.8	1.9	0.8	1.3	8.9	10.2	10.8	10.7	-3.8	-14.9	-3.9	-3.3
슬로바키아	1.8	0.8	2.3	3.2	3.7	1.5	0.7	1.6	14.0	14.2	13.9	13.4	-4.5	-2.5	-3.3	-3.4
핀란드	-1.0	-1.5	0.2	1.3	3.2	2.2	1.7	1.6	7.7	8.2	8.3	8.1	-1.8	-2.4	-2.5	-2.3
EA18	-0.7	-0.4	1.2	1.8	2.5	1.4	1.0	1.3	11.4	12.1	12.0	11.7	-3.7	-3.1	-2.6	-2.5
불가리아	0.8	0.6	1.7	2.0	2.4	0.4	0.5	1.8	12.3	12.9	12.7	12.1	-0.8	-1.9	-1.9	-1.7
체코	-1.0	-1.2	1.8	2.2	3.5	1.4	1.0	1.8	7.0	7.0	6.8	6.6	-4.4	-2.7	-2.8	-3.3
덴마크	-0.4	0.3	1.7	1.8	2.4	0.5	1.5	1.7	7.5	7.0	6.9	6.7	-3.8	-0.3	-1.3	-2.7
크로아티아	-2.0	-0.7	0.5	1.2	3.4	2.3	1.3	1.5	15.9	17.6	17.6	17.2	-5.0	-6.0	-5.4	-4.8
리투아니아	3.7	3.2	3.5	3.9	3.2	1.2	1.1	1.9	13.4	11.8	10.4	9.6	-3.2	-2.7	-2.3	-1.7
헝가리	-1.7	1.1	2.1	2.1	5.7	1.7	1.2	2.8	10.9	10.2	9.6	9.3	-2.0	-2.4	-3.0	-2.9
폴란드	1.9	1.6	2.9	3.1	3.7	0.8	1.4	2.0	10.1	10.4	10.3	10.1	-3.9	-4.4	5.0	-2.9
루마니아	0.7	3.5	2.3	2.5	3.4	3.2	2.4	3.4	7.0	7.2	7.2	7.1	-3.0	-2.6	-2.2	-1.8
스웨덴	0.9	0.9	2.5	3.3	0.9	0.4	0.9	1.8	8.0	8.0	7.7	7.3	-0.2	-1.1	-1.5	-0.8
영국	0.3	1.9	2.5	2.4	2.8	2.6	2.0	2.0	7.9	7.6	6.8	6.5	-6.1	-6.3	-5.2	-4.2
EU28	-0.4	0.1	1.5	2.0	2.6	1.5	1.2	1.5	10.5	10.9	10.7	10.4	-3.9	-3.5	-2.7	-2.7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4, 2014.



유로존이 -2.6%, EU 회원국이 -2.7%로 재정적자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

- 2014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유로존이 96%, EU 회원국은 90%에 이를 전망

- 재정기조는 전망기간 동안 중립(neutral)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리스크) 구조 개혁의 지연 또는 부분적 이행, 예상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신용대출 증가세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EU 통계청(Eurostat), 2013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4.2.14.)<sup>8)</sup>

- 2013년 3분기 대비 4분기 GDP는 유로존(EA17)<sup>9)</sup>이 0.3% 증가, EU 28개국<sup>10)</sup>은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유로존(EA17)이 0.5%, EU 28개국은 1.0% 증가(속보치 기준<sup>11)</sup>)

- 2013년 연간 GDP의 경우 유로존은 전년 대비 0.4% 감소, EU 28개국은 0.1% 증가

\* 미국의 2013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표 2〉 유로존(EA17) 및 EU 28개국의 2013년 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sup>1)</sup>)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				2013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0	0.2	0.3	0.4	-0.5	0.1	0.4	0.9
독일	0.0	0.7	0.3	0.4	-0.3	0.5	0.6	1.4
에스토니아	-0.3	-0.3	0.5	-0.1	1.4	1.2	0.5	-0.2
아일랜드	-1.1	1.0	1.5	-	-1.8	-1.5	1.7	-
그리스 <sup>2)</sup>	-	-	-	-	-0.5	-3.7	-3.0	-2.6
스페인	-0.4	-0.1	0.1	0.3	-2.0	-1.6	-1.1	-0.1
프랑스	0.0	0.6	0.0	0.3	-0.4	0.5	0.3	0.8
이탈리아	-0.6	-0.3	0.0	0.1	-2.6	-2.3	-1.9	-0.8
키프로스	-1.6	-1.7	-1.1	-1.0	-4.9	-5.8	-5.7	-5.3
룩셈부르크	-0.7	2.0	0.2	-	0.8	2.8	2.8	-
말타	-0.4	2.0	-0.4	-	1.6	3.0	2.0	-
네덜란드 <sup>3)</sup>	-0.3	0.1	0.3	0.7	-1.4	-1.7	-0.6	0.7
오스트리아 <sup>4)</sup>	0.1	0.0	0.2	0.3	0.5	0.3	0.4	0.5
포르투갈	-0.3	1.1	0.3	0.5	-4.0	-2.0	-0.9	1.6
슬로베니아	-0.3	-0.1	0.0	-	-3.0	-1.8	-1.3	-
슬로바키아	0.3	0.3	0.3	0.4	0.7	0.8	0.9	1.3
핀란드	-0.4	0.0	-0.2	-0.8	-2.8	-1.4	-1.1	-1.4
EA17	-0.2	0.3	0.1	0.3	-1.2	-0.6	-0.3	0.5
불가리아	0.1	-0.1	0.5	0.4	0.4	0.2	0.7	1.0
체코	-1.3	0.3	0.2	1.6	-2.3	-1.7	-1.2	0.8
덴마크	-0.1	0.5	0.4	-	-0.7	0.5	0.5	-
크로아티아 <sup>5)</sup>	0.0	-0.2	-0.1	-	-1.5	-0.8	-0.6	-
라트비아	1.7	0.0	1.2	0.7	6.7	4.5	4.0	3.6
리투아니아	1.0	0.8	0.3	1.2	4.0	4.0	2.3	3.3
헝가리	1.1	0.3	0.8	0.6	-0.1	0.6	1.7	2.8

8) EU 통계청 보도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14022014-AP/EN/2-14022014-AP-EN.PDF](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14022014-AP/EN/2-14022014-AP-EN.PDF)

9) 2014년 1월, 라트비아가 유로존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유로존 국가의 수는 17개(2013년)에서 18개국(2014년)으로 증가

10) 2013년 7월 크로아티아가 EU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EU 가입국은 총 28개국임

11) 확정치는 2014년 3월 5일 발표할 예정

〈표 2〉의 계속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				2013			
	Q1	Q2	Q3	Q4	Q1	Q2	Q3	Q4
폴란드	0.4	0.6	0.7	0.5	0.8	1.3	1.8	2.2
루마니아	0.6	0.9	1.7	1.7	2.3	1.6	4.1	5.1
스웨덴	0.5	-0.1	0.1	-	1.6	0.6	0.3	-
영국	0.5	0.8	0.8	0.7	0.7	2.0	1.9	2.8
EU28	0.0	0.4	0.3	0.4	-0.7	-0.1	0.2	1.0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the following Member States: Ireland, Portugal, Romania and Slovakia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non-seasonally adjusted data  
 3)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4) Growth rates are calculated using the trend component  
 자료: EU 통계청, Flash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2013, 2014.

-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단일은행정리체계(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sup>12)</sup>, 금융소득과세(Taxation of Savings Income) 등에 대해 논의(2014.3.11.)<sup>13)</sup>
  - (단일은행정리체계) 단일정리위원회와 단일은행정리기금 설립에 대해 최종 권한 기관,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장국이 유럽의회와 융통성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본 법안이 5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되기 위해 4월 14일~17일 의회 회의에서 SRM 법안을 적기에 합의하도록 요청함
  - (금융소득과세)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EU 규정을

강화하는 지침에 대해 논의

- 규정 도입(2005년) 이래로 변화해 온 금융 상품과 투자 행동 등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여 규정 우회를 방지하고자 함

\* 이자 및 이와 비슷한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금융 소득 · 상품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며, 과세 당국은 이자 지급의 수혜자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 3월 EU 정상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3월 이내로 합의를 도출할 예정
- 이 밖에도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후속 조치, 에너지 및 기후 체계 등에 대해 논의

- 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원 발표
  - 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총 110억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2014.3.5.)<sup>14)</sup>
    - 향후 몇 년간 우크라이나에 무역, 경제, 기술, 금융 지원 등을 제공
    - 16억유로의 차관(loan), 14억유로의 무상원조(grant) 등 총 30억유로는 EU 예산에서 지원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로부터 총 80억유로 지원
    - 이 밖에도 NIF(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 EU 산하 자금지원제도)를 통해 약 35억 유로를 레버리지할 계획
- 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에 대해 연간 약 5억유로

12) 부실은행의 회생 · 정리와 관련한 통제를 단일화 하는 시스템

13) EU 집행위원회: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448.pdf](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41448.pdf)

<http://gr2014.eu/news/press-releases/ecofin-council-presidency-gets-updated-mandate-negotiations-srm-regulation>

14)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19\\_en.htm?locale=e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19_en.htm?locale=en)



의 관세 인하를 발표(2014.3.11.)<sup>15)</sup>

-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수출품에 대해 2014년 11월 1일까지 시행
-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약 4억유로의 관세 인하 효과 발생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거시경제불균형 평가를 위한 심층검토보고서(IDR: In-Depth Review)<sup>16)</sup> 발표 (2014.3.5.)<sup>17)</sup>

- 회원국 간 거시경제 관련 과제들에 대한 초점이 점차 이동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중기 성장에 대한 디레버리징의 영향,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하의 높은 민간·공공채무, 기업들의 자금조달 곤란, 높은 실업률 등의 과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일부 회원국들은 재정건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성장을 위해 규모가 큰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sup>18)</sup>)들의 기여가 중요
- 17개 국가\*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 14개 국가가 거시경제 불균형 상태에 있음

\*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에 의거, 지난 11월 조기경보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sup>19)</sup>에서 거시경제불균형의 조짐이 있다고 지적된 16개 국가와 최근 경제조정프로그램을 마친 아일랜드

랜드가 대상임

- (초과불균형 국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표 3〉 초과불균형 국가에 대한 평가

국가	주요 내용
크로아티아	- 대규모 대외 부채, 수출 실적 감소, 기업 및 일반정부 채무 등에 대한 대응 필요 - 추가적 건전화 노력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2014년 재정 목표 불이행 우려
이탈리아	- 과도한 공공채무, 취약한 대외 경쟁력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
슬로베니아	- 지난해에 이어 초과불균형 국가에 선정 -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가격 경쟁력 하락, 기업 및 정부 채무 문제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

자료: EU 집행위원회의 "Results of in-depth reviews under Regulation (EU) No 1176/2011 on the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macroeconomic imbalances"의 해당 부분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

- (불균형 국가)<sup>20)</sup>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
- (불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덴마크, 룩셈부르크, 몰타
- 집행위원회는 이번 해 재정목표 불이행 위험이 있는 프랑스와 슬로베니아에 대해 정책 권고 채택<sup>21)</sup>

15)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50\\_en.htm?locale=e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50_en.htm?locale=en)

16)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로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된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의 일환임

17)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16\\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16_en.htm)

18) 독일은 내수 및 중기 성장 강화, 프랑스·이탈리아는 구조 개혁, 재정건전화, 중기 성장 제고, 스페인은 디레버리징, 구조 개혁,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문제 대응 등 필요

19)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EU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

20) 불균형 국가 14개 중 초과불균형 국가 3개국 제외

21) two-pack하에서 과도한 정부 적자의 적기 시정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권고

- EU 통계청(Eurostat), 2013년 4분기 GDP 성장률(확정치) 발표(2014.3.5.)<sup>22)</sup>
  - 2013년 3분기 대비 4분기 GDP는 유로존(EA17)<sup>23)</sup>이 0.3% 증가, EU 28개국<sup>24)</sup>은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유로존(EA17)이 0.5%, EU 28개국은 1.1% 증가(확정치 기준<sup>25)</sup>)
    - 2013년 연간 GDP의 경우 유로존은 전년 대비 0.5% 감소, EU 28개국은 0.1% 증가
      - \* 미국의 2013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 유로존의 2013년 4분기 가계최종소비지출은 0.1% 증가(EU 28개국은 0.2% 증가), 총고정자본형성은 1.1% 증가(EU 28개국은 1.4% 증가),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 0.4% 증가(EU 28개국은 1.1%, 0.2% 증가)함

〈표 4〉 유로존(EA17) 및 EU 28개국의 2013년 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sup>1)</sup>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				2013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0	0.2	0.3	0.5	-0.5	0.1	0.4	1.0
독일	0.0	0.7	0.3	0.4	-0.3	0.5	0.6	1.4
에스토니아	-0.3	-0.3	0.5	-0.1	1.4	1.2	0.5	-0.2
아일랜드	-1.1	1.0	1.5	-	-1.8	-1.5	1.7	-
그리스 <sup>2)</sup>	-	-	-	-	-5.5	-3.7	-3.0	-2.6
스페인	-0.3	-0.1	0.1	0.2	-1.9	-1.6	-1.1	-0.2
프랑스	0.1	0.6	0.0	0.3	-0.4	0.5	0.3	0.8
이탈리아	-0.6	-0.3	0.0	0.1	-2.6	-2.3	-1.9	-0.8
키프로스	-1.6	-1.7	-1.1	-1.0	-4.9	-5.8	-5.7	-5.3
룩셈부르크	-0.7	2.0	0.2	-	0.8	2.8	2.8	-
말타	-0.4	2.0	-0.4	-	1.6	3.0	2.0	-
네덜란드 <sup>3)</sup>	-0.3	0.1	0.3	0.7	-1.4	-1.7	-0.6	0.7
오스트리아 <sup>4)</sup>	0.1	0.0	0.2	0.3	0.5	0.3	0.4	0.5
포르투갈	-0.3	1.1	0.3	0.5	-4.0	-2.0	-0.9	1.6
슬로베니아	0.1	0.2	0.4	1.2	-3.1	-1.7	-0.8	1.9
슬로바키아	0.3	0.3	0.3	0.4	0.7	0.8	0.9	1.3
핀란드	-0.2	0.0	0.0	-0.3	-2.8	-1.3	-0.9	-0.5
EA17	-0.2	0.3	0.1	0.3	-1.2	-0.6	-0.3	0.5
불가리아	0.3	0.2	0.5	0.3	0.5	0.5	1.0	1.2
체코	-1.3	0.3	0.2	1.6	-2.3	-1.7	-1.2	0.8
덴마크	-0.3	1.0	0.4	-0.5	-0.7	0.8	1.0	0.6
크로아티아 <sup>5)</sup>	0.0	-0.2	-0.1	-	-1.5	-0.7	-0.6	-1.2
라트비아	1.7	0.0	1.2	0.7	6.7	4.5	4.0	3.6
리투아니아	1.0	0.8	0.4	1.2	4.0	4.0	2.3	3.3
헝가리	1.1	0.3	0.8	0.6	-0.1	0.6	1.7	2.8

22) EU 통계청 보도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05032014-BP/EN/2-05032014-BP-EN.PDF](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05032014-BP/EN/2-05032014-BP-EN.PDF)

23) 2014년 1월, 라트비아가 유로존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유로존 국가의 수는 17개(2013년)에서 18개국(2014년)으로 증가

24) 2013년 7월 크로아티아가 EU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EU 가입국은 총 28개국임

25) 잠정치는 지난 2014년 2월 14일 발표되었음(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3월 1호 참고)



〈표 4〉의 계속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				2013			
	Q1	Q2	Q3	Q4	Q1	Q2	Q3	Q4
폴란드	0.4	0.6	0.7	0.6	0.8	1.3	1.8	2.2
루마니아	1.0	0.8	1.8	1.5	2.2	1.5	4.2	5.1
스웨덴	0.8	0.0	0.5	1.7	1.6	0.7	0.7	3.1
영국	0.4	0.7	0.8	0.7	0.6	1.8	1.9	2.7
EU28	0.0	0.4	0.3	0.4	-0.7	-0.1	0.2	1.0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the following Member States: Ireland, Portugal, Romania and Slovakia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non-seasonally adjusted data

3)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4) Growth rates are calculated using the trend component

자료: EU 통계청, Second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2013, 2014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IMF

■ IMF,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앞서 『세계 전망과 정책 과제(Global Prospect and Policy Challenges)』 보고서 발표(2014.2.19.)<sup>26)</sup>

- (경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 약 3.75%, 2015년 4%로 전망됨(2014 1월 WEO update와 비슷한 수준)
  - 향후 신흥개도국의 단기 경제는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완화와 여유 있는 재정 상황으로 인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리스크 요인) 그러나 회복세는 여전히 약하며 상당한 하방 위험도 존재

- (선진국) 유로존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신흥개도국) 자본 유출, 높은 이자율,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이 주요 리스크로 남아 있고 긴축을 지속하는 재정 상태가 일부 국가의 투자와 성장을 약화시킴

• (정책 권고) 금융 안정성과 강건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와 협력이 필요

- (선진국) 높은 생산갭, 낮은 물가상승률, 재정건전화 이행 등의 환경 속에서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협조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재정건전화는 완만한 속도로 계속되어야 함
- (신흥개도국) 환율의 유연성과 함께 신뢰성 있는 거시정책이 중요
- (불균형의 조정 및 구조 개혁)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중기 성장을 위해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 개혁, 인프라 투자 등 추가적 조치와 국가 간 협력이 필요

■ IMF · EU집행위 · 유럽중앙은행, 포르투갈 경제조정 프로그램<sup>27)</sup>에 대한 1차 검토결과 발표(2014.2.28.)<sup>28)</sup>

- (경제 상황) 경제 성장과 고용 여건이 예상보다 개선되어 경기 회복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1.2%, 실업률은 15.7%로 전망됨
  - (재정부문) 프로그램의 2013년 재정 목표(GDP 대

26) IMF: <http://www.imf.org/external/hp/g20/021914.htm>

27) 거시경제 조정 프로그램은 강화된 감독체계 적용 회원국을 대상으로 집행위원회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될 경우에 시행하고, 집행위원회는 ECB, IMF와 연계하여 조정 프로그램 실행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EU의 예산감독 체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13 No.4 EU\_Public Finance in EMU」,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10~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http://www.kipf.re.kr)) 참고

28) IMF: <http://www.imf.org/external/hp/sec/pr/2014/pr1480.htm>

비 재정 적자 4.5%)가 달성되었고 2014년 재정 목표는 4.0%로 확정

- (금융부문) 금융부문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낮은 수익률, 높은 기업 부채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문으로 남아 있음
- (정책 제언)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평가) 프로그램은 개선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공공채무 수준이 여전히 높지만 개혁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임
  - 재정준칙과 구조 개혁 지속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자금 조달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함

\* 포르투갈 경제조정프로그램은 EU와 IMF로부터 각각 520억유로와 260억유로를 지원 받고 있음. EU 및 IMF의 승인 절차를 거쳐 11차 검토 결과가 확정되면 25억유로(EU 16억유로, IMF 9억유로)를 지급받게 됨

■ IMF, 우크라이나에 실사단 파견(2014.3.4.)<sup>29)</sup>

- 우크라이나<sup>30)</sup>의 아르세니 야첸류크(Arseniy Yatsenyuk: Арсеній Петрович Яценюк) 총리는 지난 3월 27일 IMF에 1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함
- 이에 IMF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기금지원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정책 개혁안을 논의하게 됨

\* 약 2주 후, 실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IMF Management(IMF 이사회에 행동방침을 제안)와 공유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 201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14.2.19.)<sup>31)</sup>

- OECD 국가의 2013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지난 2, 3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안정됨
  - 미국과 영국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각각 0.8%, 0.7%로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다소 상승했으며 일본은 전분기와 동일한 0.3% 수준
  - OECD 국가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2%이며 주요 7개국 중 영국은 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탈리아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29)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14/car030514a.htm>

<http://www.imf.org/external/country/UKR/rr/2014/030314.pdf>

30) 우크라이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재정 불안 확대,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

31) <http://www.oecd.org/std/na/QNA-GDP-Growth-Q413-Eng.pdf>



〈표 5〉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1	2012				2013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Total	0.5	0.5	0.1	0.2	0.0	0.3	0.6	0.6	0.6
G20	0.8	0.7	0.5	0.6	0.5	0.6	0.9	0.9	..
European Union	-0.2	-0.1	-0.2	0.0	-0.4	0.0	0.4	0.3	0.4
Euro area	-0.2	-0.1	-0.3	-0.2	-0.5	-0.2	0.3	0.1	0.3
Major Seven	0.6	0.6	0.0	0.3	-0.1	0.3	0.6	0.7	0.6
Canada	0.5	0.2	0.4	0.2	0.2	0.6	0.4	0.7	..
France	0.1	0.0	-0.3	0.2	-0.2	-0.1	0.6	0.0	0.3
Germany	0.1	0.7	-0.1	0.2	-0.5	0.0	0.7	0.3	0.4
Italy	-0.7	-1.1	-0.6	-0.4	-0.9	-0.6	-0.3	0.0	0.1
Japan	0.2	0.9	-0.4	-0.8	-0.1	1.2	1.0	0.3	0.3
United Kingdom	-0.1	0.0	-0.4	0.8	-0.1	0.5	0.8	0.8	0.7
United States	1.2	0.9	0.3	0.7	0.0	0.3	0.6	1.0	0.8

주: 1. 계절조정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표 6〉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1	2012				2013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Total	1.7	2.1	1.8	1.3	0.8	0.6	1.0	1.5	2.2
G20	3.4	3.4	3.1	2.6	2.3	2.2	2.6	2.9	..
European Union	0.8	0.1	-0.3	-0.5	-0.7	-0.7	-0.1	0.2	1.0
Euro area	0.7	-0.2	-0.5	-0.7	-1.0	-1.2	-0.6	-0.3	0.5
Major Seven	1.5	2.2	1.9	1.5	0.8	0.5	1.1	1.5	2.2
Canada	2.4	2.0	2.6	1.2	1.0	1.4	1.4	1.9	..
France	1.5	0.4	0.1	0.0	-0.3	-0.4	0.5	0.3	0.8
Germany	2.2	1.3	1.1	0.9	0.3	-0.3	0.5	0.6	1.4
Italy	-0.6	-1.7	-2.6	-2.8	-3.0	-2.6	-2.3	-1.9	-0.8
Japan	0.2	3.1	3.3	-0.1	-0.4	-0.1	1.3	2.4	2.7
United Kingdom	1.1	0.6	0.0	0.2	0.2	0.7	2.0	1.9	2.8
United States	2.0	3.3	2.8	3.1	2.0	1.3	1.6	2.0	2.7

주: 1. 계절조정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구조개혁평가 예비 보고서 *Going for Growth*(2014) 발표(2014.2.21.)<sup>32)</sup>

- OECD 국가와 주요 비OECD 국가가 직면한 성장과제를 살펴보고 지난 2년간의 구조적 정치개혁 추진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
  - OECD 권고로 취해진 조치는 지난 2년 동안 다소 부진했으나 위기 전보다 높은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유로지역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짐
- 경제전망이 호전되었음에도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개혁과제에 직면하였고 많은 OECD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에도 생산성이 둔화되었음
  - (신흥국) 질적 교육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낮은 수준의 실물 자본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지연이 잠재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에 대해 고심해야 할 필요
  - (유럽) 일자리 창출과 노동 이동성의 장벽, 불충분한 경력개발과 구직 지원이 고실업의 주요요인이며 생산물과 노동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구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급격한 인구 노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 한국, 독일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이들을 보장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로 남음
- 한국은 높은 가계부채와 급격한 노령화로 중기 경제 성장 전망이 부정적이며 서비스부문의 경쟁 고취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이 주요 개혁 사항

32) <http://www.oecd.org/eco/growth/goingforgrowth.htm>

■ 중간경제평가(Interim Economic Assessment) 발표 (2014.3.11.)<sup>33)</sup>

\* 중간경제평가는 지표기반 전망으로 소수 국가에 대해 단기 GDP만 반영하여 매년 2회 발간하는 경제전망보다 제한된 정보를 전달

- (경제성장) 긴축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의 완화와 경기 순응적 통화정책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회복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요 신흥국의 경제는 혼재 양상을 보임
  - (미국) 심각한 이상기후의 반복으로 1분기 GDP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반향효과(bounceback effect)가 나타나 단기 성장패턴은 고르지 못한 양상을 보일 것
  - (일본)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을 단기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4월 1일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1분기 경기가 호조를 보이거나 2분기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될 것
- (위험요인) 2013년 11월 경제전망에 비해 위험요인은 감소했으나 다년간에 걸친 몇몇 요인은 여전히 존재
  - 일본의 재정적 어려움과 유로지역의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중국의 성장둔화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몇몇 신흥국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의 심화로 성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부채가 금융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미국의 많은 지표가 변동성이 큰데 최근 지표들이 경기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기하락 모멘텀을 얻어 경제회복을 약

화시킬 위험 대두

- (정책 우선순위) 선진국은 재정 위험을 줄이고 수율을 진작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신흥국은 수요약세와 과도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정책이 요구됨
  - (미국) 점진적인 통화부양정책 철회 및 재정건전화의 질 향상
  - (유로지역) 통화부양책의 유지 또는 증가, 계획된 구조적 재정건전화 속도 유지, 지속적이고 신뢰 있는 은행시스템(banking system)의 검토 보장
  - (일본) 경기부양적 통화상황 유지, 변함없는 재정건전화 추구, 구조적 개혁효과 강화
  - (중국) 신용증가 억제, 금융 및 거시건전성 규제 개선, 지방정부소비 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 11월 발표된 다방면의 개혁 실행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친화적 구조 개혁의 중요성 증대

〈표 7〉 주요국의 단기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3Q3	2013Q4	2014Q1	2014Q2
United States	4.1	2.4	1.7	3.1 <sup>1)</sup>
Japan	0.9	0.7	4.8	-2.9 <sup>1)</sup>
Germany	1.3	1.5	3.7	2.5
France	-0.2	1.2	0.7	1.0
Italy	-0.1	0.5	0.7	0.1
United Kingdom	3.4	2.9	3.3	3.3
Canada	2.7	2.9	0.5	2.4 <sup>1)</sup>
G7	2.8	2.0	2.2	2.0
Euro area 3 <sup>2)</sup>	0.5	1.2	1.9	1.4

주: 1)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중평균

자료: OECD Interim Forecas

〈자료 수집 및 정리: 최주연 연구원〉

33) OECD(참고: <http://www.oecd.org/newsroom/recovery-continuing-in-g7-countries-but-emerging-economies-are-mixed.htm>)



호주

1. 기타

- 재정부, FY2012-13 AFM(Advance to the Finance Minister)<sup>34)</sup> 보고서 발표(2014.2.13.)<sup>35)</sup>
  - FY2012-13에 발행된 AFM 총액은 2억 4,147만호주달러, 그 중 2억 2,016만호주달러가 지출되었고 잔액은 2,131만호주달러<sup>36)</sup>
    - 잔액은 지출규모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급 지연 등으로 발생
  - 포트폴리오별 AFM은 모두 예측하지 못한 지출 발생으로 발행
    - (교육 · 고용 · 직업) 고용인 권리와 퇴직금 수급 프로그램(The General Employee Entitlements and Redundancy)<sup>37)</sup> 지출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건 · 노령) 빅토리아 주 병원 네트워크, 입워스 헬스케어(Epworth Healthcare) 단지 건립, 호주 적십자 등에 지원
    - (가족 · 주택 · 지역서비스 · 원주민) FY2013-14 예산안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당초 7월에서 6월로 앞당겨 실시
    - (특정지역 · 지방정부 · 예술 · 스포츠) 아시아태평양 양지역 스페셜올림픽과 지역단위 스포츠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지원

<표 8> FY2012-13 포트폴리오별 AFM 발행규모

(단위: 만호주달러)

No.	포트폴리오 <sup>1)</sup>	발행	지출	잔액
1	교육 · 고용 · 직업	2,412	347	2,065
2	보건 · 노령	10,700	10,700	0
3	가족 · 주택 · 지역서비스 · 원주민	9,102	9,102	0
4	보건 · 노령	1,250	1,200	50
		220	204	16
5	특정지역 · 지방정부 · 예술 · 스포츠	463	463	0
합계		24,147	22,016	2,131

주: 1) AFM 발행 당시의 포트폴리오 명칭 사용  
 자료: Report On Advances Provided Under The Annual Appropriation Ac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3, 연방정부, 2014.2.13.

[참고 1] AFM(Advance to the Finance Minister)

- AFM은 재정부 장관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세출법(Appropriation Act) Part3에 관련 내용 수록<sup>38)</sup>
- 각 기관에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실수로 인해 지출항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 발생 시 발행
- 재정부장관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예비비를 할당하며, 연간 한도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연간 발행규모 및 지출내역 등은 Report On Advances Provided Under The Annual Appropriation Acts를 통해 매년 발표

34) [참고 1] 참고

35) 재정부 홈페이지 Latest Publications 2014.2.13.

36) FY2012-13 세출법상 AFM 발행한도는 총 4억 2,600만호주달러

37) 고용주의 청산 또는 파산으로 실직한 고용인들을 지원

38) 참고: 『정책분석 12-02 호주세 재정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2.8, p.58~60.

- 사회서비스부, 연금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계획 발표<sup>39)</sup> (2014.3.2.)
  - 2013년 하반기 6개월간의 물가상승률 1.9%를 적용, 3월 20일부로 연금지급액 및 구직보조금, 양육보조금 등의 복지수당 인상
    - 물가상승률 적용은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3차례(1월, 3월, 7월), 2014년에는 지난 1월에 인상분이 반영된 바 있음
    - 인상액은 남성 주당 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되며, 금액은 2주 기준
  - 금번 인상을 통해 약 360만명의 연금 수급자들과 약 100만명의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혜택을 입을 예정
    - 연금은 독신의 경우 최대 15.70호주달러, 부부의 경우 각각 11.90호주달러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은 독신 842.80호주달러, 부부 각각 635.30호주달러 적용
    - 구직보조금, 미망인보조금 등의 복지수당은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최대 9.70호주달러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은 519.20호주달러 적용
    - 양육수당은 한부모의 경우 최대 13.50호주달러, 배우자가 있는 부모의 경우 8.70호주달러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은 각각 725.10호주달러, 468.70호주달러 적용
  - 또한, 이번 인상 미적용 항목은 9월에 인상을 실시할 예정

〈표 9〉 연금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전후 비교<sup>1)</sup>

(단위: 호주달러)


구 분			현행	인상 후	인상액	
연금	노인연금 장애지원연금 간병인연금 참전용사가족연금	Single	Base	751.70	766.00	14.30
			Max	827.10	842.80	15.70
	Partnered (each)	Base	566.60	577.40	10.80	
		Max	623.40	635.30	11.90	
복지수당	구직보조금 미망인보조금 파트너보조금 환자보조금	Single, 22 or over, no children	Base	501.00	510.50	9.50
			Max	509.50	519.20	9.70
		Single, 22 or over, with children	Base	542.10	552.40	10.30
			Max	551.30	561.80	10.50
		Single, 60 or over, after 9 months	Base	542.10	552.40	10.30
			Max	551.30	561.80	10.50
	Partnered (each)	Base	452.30	460.90	8.60	
		Max	460.00	468.70	8.70	
	Single, principal carer of child, exempt from activity test	Base	699.90	713.20	13.30	
		Max	711.60	725.10	13.50	
	양육수당	Single parent	Base	678.40	691.30	12.90
			Max	711.60	725.10	13.50
Partnered parents		Base	452.30	460.90	8.60	
		Max	460.00	468.70	8.70	

주: 1) 노인연금 수혜연령 이하 기준  
자료: Indexation Rates March 2014, 사회서비스부, 2014.3.2.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39) 사회서비스부장관 홈페이지 Media Releases 2014.3.2.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FY2013-14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 하원 상정(2014.2.14.)
  - 이번 추경안(C)에서는 추경(A), (B)를 포함한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에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3.6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약 3.7억캐나다달러를 편성
    -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과 추경(A), (B), (C)를 포함한 FY2013-14 의결지출 합계액은 총 948억캐나다달러<sup>40)</sup>
      - ☞ 캐나다 정부의 비용절감으로 추경예산 합계액이 최근 3개년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
        - \* 의결지출의 경우 FY2012-13에 비해 약 40억캐나다달러 감소
    - 의결지출 중 정부 정보기술 보안 강화에 1억 230만캐나다달러,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 지원에 약 6,380만캐나다달러, 국방비에 약 3,470만캐나다달러, 원주민 지원에 약 3,320만캐나다달러 편성

〈표 10〉 FY2013-14 추경예산안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예산 내 지출 <sup>1)</sup> (Budgetary)	예산 외 지출(투융자예산 <sup>2)</sup> (Non-Budgetary)	
추경(C)	의결지출 (Voted Appropriations)	3.58	0
	법정지출 (Statutory Expenditures)	△3.73	0
	합계	△0.15	0

주: 1) 예산 내 지출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계정은 일반적인 정부의 사업 지출이며, 특별계정은 실업보험계정(Employment Insurance Account)과 같은 30여 개의 계정으로 구성  
 2) 예산 외 지출은 투자 및 용자 등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정부 금융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예산을 의미

자료: 캐나다 재무부, Supplementary Estimates(C)

- 재무위원회 사무국(TBS), FY2014-15 세출예산안(Estimates) 및 사업계획 · 우선순위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 의회 제출(2014.3.6.)
  - [FY2014-15 세출예산안(Estimates)]<sup>41)</sup>
    - 정부지출계획(Government Expenditure Plan): 지불유형(Type of Payment)에 따른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의 지불총액과 전년도 대비 변화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시
    -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의결지출 및 법정지출로 구분하여 본예산의 지출내역 및 부처별 예산 내용 포함
    - 일반예산지출(budgetary expenditure): 2,353억캐나다달러로 의결지출에 약 873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에 약 1,491억캐나다달러 편성
      -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지출이 약 60.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 및 자본지

40) 추경(A)와 추경(B)는 2013년 「재정동향」 6월 제호, 11월 제2호 내용 참고

41) 세출예산안(Estimates)은 지난 2월 17일 발표하였으며, 정부지출계획,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일반예산지출 및 투융자예산지출 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

출이 약 27.99%, 공공채무 이자지출이 약 11.17%를 차지

- 투융자예산지출(Non-Budgetary expenditure):  
투융자, 선급금(Loan, Investment, Advances)에  
해당하는 투융자예산지출은 약 △100억캐나다달  
러 편성

〈표 11〉 FY2014-15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개요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세출	본세출예산	세출 실적치	본세출예산안
일반예산	의결지출	87.71	87.06	93.94	86.28
	법정지출	139.86	145.52	145.16	149.05
	총계	227.57	232.58	239.09	235.33
투융자예산	의결지출	0.04	0.07	0.07	0.03
	법정지출	63.15	△41.02	△41.02	△10.05
	총계	63.19	△40.95	△40.95	△10.02

〈표 12〉 FY2014-15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세부 내역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세출	본세출예산	세출 실적치	본세출예산안
일반예산	이전지출	135.12	140.33	143.26	143.17
	운영 및 자본지출	66.48	65.12	69.55	65.87
	공공채무	25.98	27.13	26.28	26.30
	합계	227.57	232.58	239.09	235.33
투융자예산	투융자, 선급금	63.19	740.95	740.95	710.02
	합계	63.19	740.95	740.95	710.02

• [FY2014-15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sup>42)</sup>

- RPPs 보고서는 부처의 전략목표별 세부 프로그램 활동 계획으로 구성되며, 크게 여섯 가지 우선 순위에 집중 계획

☞ 건전한 재정관리(Sound Fiscal Management)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

☞ 건전한 사회정책프레임(Sound Social Policy Framework)

☞ 효과적인 국제관계(Effective International Engagement)

☞ 협업, 혁신, 신기술 사용, 건전한 자원관리의 증가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Pursue excellence and high performance through increased collaboration, innovation, use of new technologies, and sound resource management)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보장 및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IM)를 위한 협업, 고객중심의 접근방식을 구현 (Ensure a secure and reliable information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and implement a collaborative, client-focused approach for information management (IM))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42) 부처의 전략목표(Strategic Outcome)별 세부 프로그램 활동(Program Activity) 계획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향후 3년간(FY2016-17까지)의 자금소요계획을 수록



프랑스

1. 기타

- 통계청(INSEE), 2013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14.2.14.)<sup>43)</sup>
  - 프랑스는 가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 회복에 따른 국내소비 증가, 수출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2013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를 기록
    - 2013년 3분기 경제성장률 0.0%에 비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3%로 상향조정(2013.12월 0.1% → 2013.2월 0.3%)
    - 프랑스 정부는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014년 0.9%, 2015년 1.7%, 2016-2017년에는 2.0%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표 13> 경제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3 Q1	2013 Q2	2013 Q3	2013 Q4	2012 연간	2013 연간
GDP 성장률	0.0	0.6	0.0	0.3	0.0	0.3

주: 계절조정 데이터  
자료: 프랑스 통계청, 2014.2.14.

- 통계청(INSEE), 2013년 4분기 실업률 발표(2014.3.6.)<sup>44)</sup>
  - 프랑스 통계청은 2013년 4분기 실업률을 전분기 대비 0.1%p 감소한 9.8%로 전망

- 프랑스 전체(해외포함)의 실업률은 10.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섬
- 장-마르크 애로(Jean-Marc Ayrault) 총리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좋은 소식이며,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실업률 하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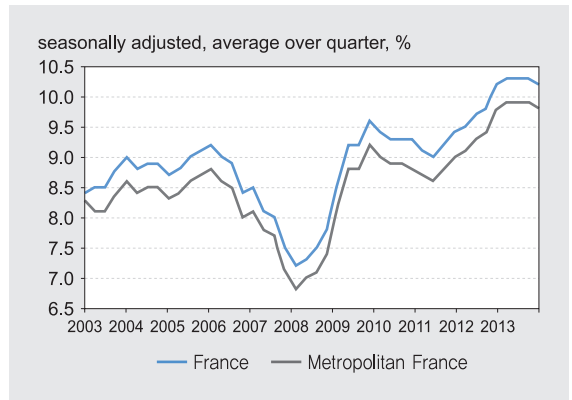
<표 14> 실업률

(단위: %, 천명)

	2013 Q3	2013 Q4잠정	실업자 수
실업률	9.9	9.8	2,788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프랑스에 거주하는 인구 대상  
자료: 프랑스 통계청, 2014.3.6.

[그림 1] 프랑스 실업률 추이



43) 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26&date=20140214>

44) 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indicateurs/ind14/20140306/Chomage-T413\\_en.pdf](http://www.insee.fr/en/indicateurs/ind14/20140306/Chomage-T413_en.pdf)

프랑스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premier-ministre/chomage-c-est-le-moment-de-mettre-le-turbo-et-de-faire-vivre-le-pacte-de-responsabi>

- EU 집행위원회, 프랑스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결정(2014.3.5.)<sup>45)</sup>
  - EU 집행위는 “재정적자 감축 이행 불가의 위험성 (the risk of non-compliance with the budgetary target)”이 있는 프랑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결정<sup>46)</sup>
    - 재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결정이 내려진 국가는 프랑스와 슬로베니아이며,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출
    - EU 집행위는 6월에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상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평가한 후 적절한 조치방안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제시할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 독일연방은행은 지난 12월 월간보고서 (Monatsberichtsauflage Dezember 2013)에서 2014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
- 2014년 실업률은 6.8%로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
  - 올해 2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노동인구가 4,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브리엘(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경제의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법정최저임금제 도입<sup>48)</sup>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표 15〉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치
실질 GDP	0.7	0.4	1.8
실업률	6.8	6.9	6.8

자료: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4*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 독일

### 1. 기타

- 연방내각,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 (Jahreswirtschaftsbericht 2014) 발표<sup>47)</sup>(2014.2.12.)
  -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8%로 상향 조정,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5) EU 집행위, [http://ec.europa.eu/ireland/press\\_office/news\\_of\\_the\\_day/commission-publishes-in-depth-review-macro-economic-imbances\\_en.htm](http://ec.europa.eu/ireland/press_office/news_of_the_day/commission-publishes-in-depth-review-macro-economic-imbances_en.htm)

46) 2013.5.29일 EU 집행위는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 3% 달성 기한을 1~2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프랑스는 목표 달성 기한이 2013년 → 2015년으로 늦춰짐

47) 원문: <http://www.bmwi.de/EN/Press/press-releases.did=626006.html> 발표자료: <http://www.bmwi.de/English/Redaktion/Pdf/2014-annual-economic-report,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en,rwb=true.pdf>

48) 독일은 2015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RGS), FY2014 예산요약<sup>49)</sup> (IL BILANCIO IN BREVE) 발표<sup>50)</sup>(2014.2.27.)
  - 2014년 재정수지는 2013년 예상치보다 낮게 전망되었으나, 향후 세입 증대와 점진적인 자본지출의 삭감으로 2016년 재정흑자 달성 전망
    - (수입) 2014년도 총수입은 안정법안 및 공공재정 조치 영향으로 2013년 예상치 대비 약 90억유로

- (1.8%) 증가전망 되었음
- (지출) 2014년도 총지출은 2013년 예상 대비 약 300억유로(19.6%) 증가 전망되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이전지출과 이차지출 확대 전망에 기인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법안(LS) 운영으로 2014년도 재정수지는 약 17억유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5년 및 2016년에 약 130억유로, 72억 유로의 개선 효과 전망

〈표 16〉 2014년 이탈리아 예산전망 요약

(단위: 백만유로)

항 목	2013 예산		전망		
	초기전망	조정전망	2014 예산법안	2015 예산법안	2016 예산법안
세입(Entrate Tributarie)	452,614	438,271	452,125	462,688	474,260
소득세 (Imposta sui redditi) <sup>1)</sup>	182,158	184,961	185,108	189,608	192,609
법인세 (Imposta sui reddito delle societa') <sup>1)</sup>	46,699	48,376	53,295	51,926	52,123
세외수입(Entrate extra-tributarie)	66,086	69,005	64,327	64,082	64,577
자산매각및감가상각(Alienaz. ed ammort. beni)	1,317	1,941	1,859	1,867	1,876
총수입(ENTRATE FINALI)	520,016	509,217	518,312	528,637	540,714
경상지출(Spese correnti)	482,475	482,927	502,053	500,815	503,376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이전지출(Transferimenti correnti ad AP) <sup>1)</sup>	234,110	232,829	247,337	244,278	244,687
국채이자지급(Interessi passivi) <sup>1)</sup>	89,660	89,162	93,498	96,778	98,827
자본지출(Spese in c/capitale)	43,726	57,355	54,566	38,037	31,661
총지출(SPESE FINALI)	526,201	540,283	556,620	538,852	535,037
공공저축(Risparmio pubblico)	36,224	24,349	14,399	25,955	35,462
재정수지(Saldo netto da finanziare)	-6,185	-31,065	-38,308	-10,215	5,677

주: 1) 각 항목의 상세내역 중 주요한 하위항목만 기입하였으므로 전체내역이 아님을 주의  
 자료: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 IL BILANCIO IN BREVE 2014, 2014.2, 표 1, 재구성

49) 의회에서 예산법 및 안정법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승인되면 국가종합회계실은 매년 1~2월경에 예산 가이드라인과 예산요약을 발표하고 예산집행 절차를 수행

50)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  
 ([http://www.rgs.met.gov.it/\\_Documenti/VERSIONE-I/Attivit-i/Bilancio\\_di\\_previsione/Bilancio\\_in\\_breve/2014/Bilancio\\_in\\_breve\\_2014.pdf](http://www.rgs.met.gov.it/_Documenti/VERSIONE-I/Attivit-i/Bilancio_di_previsione/Bilancio_in_breve/2014/Bilancio_in_breve_2014.pdf))

〈표 17〉 정책의 재정적 효과 전망

(단위: 백만유로)

항목	전망		
	2014 예산법안	2015 예산법안	2016 예산법안
세입(Entrate Tributarie)	4,454	7,493	9,239
세외수입(Entrate extra-tributarie)	1,302	4,957	4,954
자산매각및감가상각 (Alienaz. ed ammort. beni)	500	500	500
총수입(ENTRATE FINALI)	6,256	12,950	14,694
경상지출(Spese correnti)	5,473	-1,793	-3,205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이전지출 (Transferimenti correnti ad AP) <sup>51)</sup>	3,640	-778	-1,564
국채이자지급(Interessi passivi) <sup>51)</sup>	12	5	0
자본지출(Spese in c/capitale)	2,525	1,793	10,743
총지출(SPESE FINALI)	7,998	0	7,538
공공저축(Risparmio pubblico)	284	14,242	17,399
재정수지(Saldo netto da finanziare)	-1,742	12,950	7,156

주: 1) 각 항목의 상세내역 중 주요한 하위항목만 기입하였으므로 전체내역이 아님을 주의  
 자료: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 IL BILANCIO IN BREVE 2014, 2014.2, 표 4, 재구성

- (미선별 지출예산)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공공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년 공공지출은 34개의 미선과 17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sup>51)</sup>

## 2.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2013년 4분기 실질 GDP 잠정치 발표(2014.2.14.)<sup>52)</sup>
  - 2013년 4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 농업, 산업 및 서비스의 세 가지 경제활동 주요 영역에서 소폭 증가세 보임

〈표 18〉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GDP

(단위: 백만유로, %)

	GDP(2005년기준)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1-I	356,698	0.1	1.4
2011-II	357,576	0.2	1.1
2011-III	356,926	-0.2	0.5
2011-IV	354,335	-0.7	-0.6
2012-I	350,456	-1.1	-1.7
2012-II	348,316	-0.6	-2.6
2012-III	346,769	-0.4	-2.8
2012-IV	343,552	-0.9	-3.0
2013-I	341,345	-0.6	-2.6
2013-II	349,284	-0.3	-2.3
2013-III	340,202	0.0	-1.9
2013-IV	340,662	0.1	-0.8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보도자료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MEF), 「공공재정 운영 보고서(La manovra di finanza pubblica)」 발표(2014.2.20.)<sup>53)</sup>
  - 「공공재정 운영 보고서(La manovra di finanza pubblica)」는 3년간 공공재정 조치에 대해 예측하고, 정부의 하위 부문과 계획 문서에 규정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주요 조치에 대한 개입 효과를 분석

51) 미선별 '14~'16년 자세한 지출예산 내역은 '13년 하반기 『재정동향』 참조

52) 이탈리아 통계청(<http://www.istat.it/en/archive/112599>)

53)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www.rgs.mef.gov.it/\\_Documenti/VERSIONE-I/Pubblicazioni/Note-brevi/La-manovra-di-FP/2014-2016/La-manovra-di-finanza-pubblica-per-gli-anni-2014-2016.pdf](http://www.rgs.mef.gov.it/_Documenti/VERSIONE-I/Pubblicazioni/Note-brevi/La-manovra-di-FP/2014-2016/La-manovra-di-finanza-pubblica-per-gli-anni-2014-2016.pdf))



- 2013년 공공부채 상환 조치로 순차입이 약 62억유로로 증가되었으나, 2014년에 11억유로, 2015년에 10억유로, 2016년에 8억유로의 개선 전망

☞ 2013년 순차입의 증가는 Decree-Law n. 35 조치<sup>54)</sup>로 인한 부채비용 지불에 기인

〈표 19〉 공공부채 상환 조치 누적효과

(단위: 백만유로, %)

	2013	2014	2015	2016
D.L.n.35/2013	-7,370	670	571	567
D.L.n.43/2013	0	0	0	0
D.L.n.54/2013	11	87	37	0
D.L.n.63/2013	19	26	0	0
D.L.n.69/2013	27	30	33	29
D.L.n.76/2013	0	0	5	66
D.L.n.91/2013	0	6	1	4
D.L.n.101/2013	0	4	4	4
D.L.n.102/2013	33	118	288	86
D.L.n.104/2013	0	73	39	30
D.L.n.120/2013	1,123	25	7	1
D.L.n.133/2013	2	36	0	0
순 차입 (INDEBITAMENTO NETTO)	-6,155	1,076	985	788
GDP 대비 %	-0.4	0.1	0.1	0.0

자료: 경제재정부(MEF), 「공공재정 운영 보고서(La manovra di finanza pubblica)」, Tav. 6.

- FY2014-2016 안정법안(LS)의 효과는 2014년에 150억유로, 2015년에 119억유로, 2016년에 135억유로 규모로 추산

〈표 20〉 FY2014-2016 안정법안(LS) 효과

(단위: 백만유로)

	2014	2015	2016
(a) 적용 전(Manovra lorda)	12,543	15,409	20,772
- Higher revenues(Maggiori entrate)	8,381	8,691	11,806
- Expenditure cuts(Minori spese)	4,162	6,717	8,967
(b) 적용 후(Interventi)	15,001	11,894	13,469
- Decrease in revenues(Minori entrate)	6,137	8,458	10,438
- Higher expenditure(Maggiori spese)	8,864	3,436	3,030
순차입(a-b)	-2,458	3,515	7,304

자료: 경제재정부(MEF), 「공공재정 운영 보고서(La manovra di finanza pubblica)」, Tav. 6 재구성

- 이탈리아 신정부, 의회의 신임표결 통과(2014.2.25.)
- 레타에 이어 신임총리가 된 렌치(Renzi) 총리는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발표
  - 상원 개혁, 선거법 개정, 중앙행정부-지방행정부 권한 조정, 근로 개혁, 세제 개혁, 공공행정부 개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나, 상세계획은 미발표
  - 정부가 즉각 시행할 긴급 조치로 근로세 인하, 공공행정부의 민영기업 부채 청산, 중소기업지원 기금 마련을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3 제3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발표<sup>55)</sup> (2014.3.4.)
- FY2013 제3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

54) 지방당국 공공요금 및 지방당국 재정균형을 위한 연체채무 상환에 관한 긴급 명령

55) 재무성, 「平成25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4.3.4.

입 비율은 35.3%,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제3사분기 국가지출 비율은 21.3%를 기록  
 - FY2013 제3사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1.3%,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제3사분기 국가지출 비율은 19.1%를 기록

〈표 21〉 FY2013 제3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단위: 억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926,115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D)	1,003,000	세입예산액(A)	4,084,830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D)	4,015,994
제3사분기 국가수납금액(B)	327,243	제3사분기 국가지출 금액(E)	214,633	제3사분기 국가수납금액(B)	871,326	제3사분기 국가지출 금액(E)	769,025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35.3% (33.9%)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3% (30.9%)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1.3% (22.8%)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9.1% (20.5%)
제3사분기 까지 누계(C)	667,376	제3사분기 까지 누계(F)	701,901	제3사분기 까지 누계(C)	3,041,311	제3사분기 까지 누계(F)	3,003,759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47.9% (72.0%)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67.3% (69.9%)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74.4% (78.5%)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74.7% (75.1%)

주: 1. ( )는 전년 동기 비율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4.3.4.

## 2. 기타

- 2013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sup>56)</sup>(2014.2.17.)
  - 2013년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연율환

산 1.0%)로 4분기 연속 성장세 유지  
 - 고용·소득환경 개선 및 일부 갑작스런 수요증가로 인한 개인소비 증가, 기업 수익 및 의식 개선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전망에 의한 주택투자 증가 등이 주요인  
 - 향후 소비세율 인상 전 수요 증가로 인해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도 회복되어 경기회복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나 소비세율 인상 후 수요 반동 감소에 유의할 필요

〈표 22〉 분기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계열)

(단위: 전분기 대비, %)

항목	2012년	2013년				2013년(연율환산)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0~12월
국내총생산	△0.1	1.2	1.0	0.3	0.3	1.0
국내수요	0.1	0.7	0.8	0.8	0.8	3.2
민간수요	△0.1	0.6	0.5	0.5	0.8	3.0
공적수요	0.6	1.1	1.8	1.6	0.9	3.6
재화·서비스 순수출 <sup>1)</sup>	△0.1	0.4	0.1	△0.5	△0.5	-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2013(平成25)年10~12月期・1次速報)」, 2014.2.17.

- ‘일본의 재정관계자료’ 발표<sup>57)</sup>(2014.2.28.)
  - 일본 재정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정리한 일본의 재정관계자료 발표
    - 2014년 예산안 내용과 재정건전화 목표, 재정상황 등 기준에 발표된 일본 재정 관련 자료<sup>58)</sup>들이 포함
    - 기존 발표된 내용 외에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

56)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2013(平成25)年10~12月期・1次速報)」, 2014.2.17.

57)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14.2.28.

58)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및 「2014년 주요국 예산안」 ‘일본편’ 참조



이클<sup>59)</sup> 시스템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

장률 모두 1차 속보치 대비 하향조정

<표 23>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

<표 24> 분기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계열)

(단위: 전분기 대비, %)

국회 의결·결산 감사보고 등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산에 관한 국회 의결 내용은 심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반영 예) 동일본 대지진 재해 복구·부흥 관계경비에서 복구·부흥과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한 반영(반영액: 1,054억엔)</li> <li>회계감사원 지적 내용은 개별 사무·사업마다 필요성 및 효율성 재검토 예)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법인에 설치 조성된 자금 반납(반영액: 1,228억엔) [2014년도 예산 등에 반영액: 2,096억엔]</li> <li>큰 액수의 불응이 발생한 사업 등은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예산의 내용 등을 엄격하게 재검토 예) 의무교육비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결산 불응을 적절히 반영(반영액: △51억엔)</li> </ul>	
예산집행조사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도 예산집행조사는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는 등 조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75건의 조사를 실시, 사업 등의 필요성·유효성·효율성에 대한 검증 등 시행, 조사결과를 2014년도 예산에 반영 예) 이산화탄소 삭감기술 실증 시험사업에 대해 과거 계약실적 등을 바탕으로 효율화(반영액: △35억엔) [2014년도 예산 등에 반영액: 263억엔]</li> </ul>	
정책평가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부처가 실시하는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각 사업의 필요성·유효성·효율성에 대한 검증 등 시행, 예산편성에 적절히 활용 예) '의욕 있고 다양한 농업종사자에 의한 농업경영 추진'에 대해 농·수산업자용 대출 잔고지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금리부담 경감 조치의 융자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예산을 감축(반영액: △1.3억엔) [2014년도 예산 등에 활용액: 270억엔]</li> </ul>	

항목	2013년 4분기	
	1차 속보치	2차 속보치
국내총생산	0.3 (연율환산 1.0)	0.2 (연율환산 0.7)
국내수요	0.8	0.7
민간수요	0.8	0.6
공적수요	0.9	0.8
재화·서비스 순수출 <sup>1)</sup>	△0.5	△0.5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2013(平成25)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4.3.10.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스페인 하원은 파트타임 근로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기여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승인<sup>61)</sup>(2014.2.20.)
- 새로운 산정방식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일일 근무시간을 풀타임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 15년에 곱하여 파트타임 근로자 기여 기간으로 설정
  - 예를 들어, 풀타임 근로자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풀타임 근로자의 기준

자료: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14.2.28.

- 2013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sup>60)</sup>(2014.3.10.)
- 2013년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2차 속보치는 0.2%(연율환산 0.7%)로 1차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
  - 내수부문에서도 민간수요 성장률과 공적수요 성

59) 일본에서는 예산사용 상황 및 성과를 평가·검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PDCA 사이클을 활용하고 있음. PDCA사이클을 예산편성 과정에 대입하면 Plan(예산) → Do(예산집행) → Check(평가·검증) → Action(예산에의 반영) → Plan(예산)의 과정

60) 내각부, 「2013(平成25)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4.3.10.

61) 스페인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IDICOMAS/9/Gobierno/News/2014/20140220\\_Part-time\\_Workers.htm](http://www.lamoncloa.gob.es/IDICOMAS/9/Gobierno/News/2014/20140220_Part-time_Workers.htm)

- 기간 15년의 반인 7.5년을 퇴직연금을 위한 기여 기간으로 설정
- 사회노동부 장관은 250만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 영국

### 1. 기타

- 영국정부, 스코틀랜드에 국채 발행 허용(2014.2.19.)<sup>62)</sup>
  -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에게 국채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스코틀랜드는 2015년부터 22억파운드 한도내에서 직접 국채 발행이 가능해져 교통, 병원, 학교 등의 자본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대<sup>63)</sup>할 수 있을 전망
    -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영국의 장기경제계획에 따라 성장하는 스코틀랜드가 스스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며, 새로운 힘과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
- 공공지출 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 업데이트 발표(2014.2.28.)<sup>64)</sup>
  - 재무부는 지난 2013.10월에 발표된 FY2008-09부터 FY2012-13까지의 공공지출 통계<sup>65)</sup>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번 수정으로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은 변화가 미미하나 총공공서비스지출(Expenditure on services)이 크게 변화됨

- FY2012-13에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은 2013.10월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0% 감소한 6,737억파운드를 기록
- FY2012-13에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전년 대비 2.2%(80억파운드) 감소한 3,607억파운드, 총 공공서비스지출(Expenditure on services)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698억파운드로 집계
- 분야별 공공지출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감소추세였으며, 국방(7.6%)과 경제(6.5%)분야가 가장 많이 감소
  - ☞ 반면, 사회안전(2.7%), 보건(0.7%), 주택(0.5%) 분야는 증가세를 보임

62)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otland-to-be-given-powers-to-issue-its-own-bonds>

63) 스코틀랜드는 이미 '2012 스코틀랜드 권한강화법(Scotland Act 2012)' 하에서 국가대출기금(National Loans Fund, NLF)과 상업채권을 통해 총 22억파운드의 차입이 가능했음

64)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

65) 2013년 11월 2호 「재정동향」 참고



〈표 25〉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백만파운드)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자원 DEL	317,386	337,736	350,544	345,668	343,307
자원 AME	250,547	267,274	284,724	298,312	313,038
공공부문 경상지출	567,933	605,010	635,268	643,980	656,345
자본 DEL	48,511	56,959	49,772	42,292	38,925
자본 AME	19,182	11,433	9,665	8,043	-21,589
공공부문 총투자 <sup>1)</sup>	67,693	68,392	59,437	50,335	17,336
공공부문 순투자 <sup>1)</sup>	48,547	48,393	38,653	28,719	-5,174
총관리지출(TME) <sup>1)</sup>	635,626	673,402	694,705	694,315	673,681
총 DEL <sup>2)</sup>	353,507	380,852	379,806	368,690	360,725
부처별 AME	356,787	260,354	166,575	248,515	259,086
기타 AME	-74,668	32,196	148,324	77,110	53,870

주: 1) This excludes the temporary effects of banks being classified to the public sector

2) Total DEL is given by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plus capital DEL.

자료: 영국 재무부, *Statistical Bulletin: Public Spending Statistics*, February 2014.

〈표 26〉 총공공서비스지출(Expenditure on services)

(단위: 백만파운드)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급여	160,323	165,154	169,346	166,161	164,977
경상구매	185,664	193,747	188,661	189,310	193,440
재화 · 서비스 판매 수입	-52,892	-51,863	-47,463	-44,961	-46,021
개인 및 비영리단체 보조금	198,598	218,049	222,635	229,096	234,627
해외보조금	1,592	5,057	8,461	6,768	9,112
민간기업 보조금	7,211	8,287	7,941	8,246	7,802
공기업 보조금	1,058	1,016	706	476	1,728
순 공공서비스 연금	3,052	3,611	4,627	6,678	8,628
학생대출	757	1,445	4,242	2,215	3,809
채무이자	32,497	30,956	45,891	48,984	48,230
기타	63	65	59	82	238
회계조정	30,011	29,486	30,164	30,925	29,776
총 경상지출	567,933	605,010	635,268	643,980	656,345
자본재구입 장려금	24,944	22,961	15,566	12,046	10,974
자본재 구매	42,447	45,113	42,832	38,037	35,391
자본재 판매 수입	-3,108	-2,952	-3,258	-4,108	-3,183
기타	0	0	0	0	0
회계조정	3,410	3,269	4,298	4,360	-25,846
총 자본지출	67,693	68,392	59,437	50,335	17,336
총공공서비스지출	602,205	640,647	660,243	659,030	669,752
회계조정	33,421	32,755	34,462	35,285	3,929
총관리지출	635,626	673,402	694,705	694,315	673,681

자료: 영국 재무부, *Statistical Bulletin: Public Spending Statistics*, February 2014.

■ 영국 해안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2014.3.7.)<sup>66)</sup>

- 재무부 수석차관 대니 알렉산더(Danny Alexander)와 커뮤니티장관 에릭피클(Eric Pickles)은 장기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홍수피해 지역을 비롯한 해안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발표
- 2014년 해안권 지역기금(Coastal Communities

66)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

Fund<sup>67)</sup>을 통해 영국전역에 걸쳐 관광, 선박 등과 관련된 5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2,770만파운드가 지원될 계획이며, 약 4,000개의 일자리와 1,000개의 수습직(Apprenticeship)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이 중 잉글랜드의 야머스(Yarmouth) 등 최근 홍수피해 지역에 경제개발프로젝트로 1,700만파운드 가 할당

- 향후 3년 동안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해안지역에 6,400만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원될 예정

■ 스코틀랜드의 FY2016-17 재정적자 전망 발표 (2014.3.11.)<sup>68)</sup>

- 스코틀랜드 정부와 영국재무부의 다수 기관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sup>69)</sup> 예정시기인 FY2016-17의 스코틀랜드 재정적자 전망치를 발표
-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표한 FY2016-17 재정적자는 GDP 대비 3.2%(55억파운드)이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전망치보다 낙관적인 전망으로 GDP 대비 약 2%(30억파운드 이상) 정도 낮은 수치임
  - 스코틀랜드 정부의 낙관적인 재정전망은 북해원유와 가스 생산<sup>70)</sup>에 따른 수입의 긍정적인 추정에 기인
-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한 FY2016-17의 영국전체 재정적자는 다수 기관에서 전망한 스코틀랜드 재정적자보다 낮은 수준임[그림 1 참고]
  -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지 않고 불안정한 북해원유 · 가스 생산 수입과 다른 모든 재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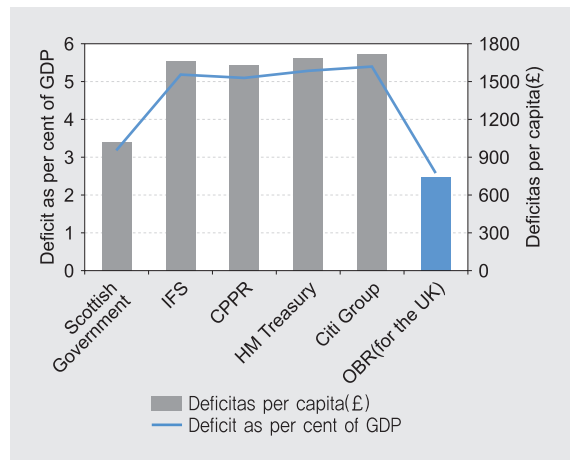
험을 영국과 공유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에게 유리함을 주장

〈표 27〉 FY2016-17 스코틀랜드 재정적자 전망

전망주체	재정적자		
	GDP 대비 %	십억파운드	1인당 파운드
스코틀랜드 정부	3.2	5.5	1,020
영국 재무부	5.3	9.1	1,690
지방 공공정책 센터	5.1	8.8	1,630
재정연구원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5.2	8.9	1,660
씨티그룹(Citi Group)	5.4	9.3	1,720

자료: 영국 재무부, Summary of forecasts of the Scottish deficit in the proposed year of independence

〔그림 2〕 FY2016-17 스코틀랜드와 영국전체의 재정적자



자료: 영국 재무부, Summary of forecasts of the Scottish deficit in the proposed year of independence

(자료 수집 및 정리: 헤이스터 연구원)

67) 해안권 지역기금(Coastal Communities Fund)은 해안지역의 재건과 지역경제의 재균형, 실업률 감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68)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

69) 2014년 9월 14일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가 시행되며 스코틀랜드인 과반수가 독립에 찬성하면 2016년 3월 중에 독립을 선언할 예정

70) 북해 원유와 가스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추진의 핵심 이슈임



미국

1. 예산·결산 등

- 약 3조 9천억달러 규모의 FY2015 대통령 예산안의 회 계출(2014.3.4.)<sup>71)</sup>
- (경제전망) 실업률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

어 2014년 3.1%, 2015년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리스크 요인) 유럽과 개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기 전망) 2019년에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낮아져 202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28〉 FY2015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sup>1)</sup>	2.8	1.7	3.1	3.4	3.3	3.2	2.8	2.5	2.4	2.3	2.3	2.3	2.3
실업률 <sup>2)</sup>	8.1	7.5	6.9	6.4	6.0	5.6	5.4	5.4	5.4	5.4	5.4	5.4	5.4
CPI-U <sup>3)</sup>	2.1	1.4	1.6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국채 91일물 <sup>3)</sup>	0.1	0.1	0.1	0.3	1.2	2.3	3.2	3.6	3.7	3.7	3.7	3.7	3.7
국채 10년물	1.8	2.3	3.0	3.5	4.0	4.3	4.6	4.7	4.9	5.0	5.1	5.1	5.1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표 29〉 FY2015 대통령 예산안 재정전망

재정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총량 (단위: 십억달러)												
수입	2,775	3,002	3,337	3,568	3,811	4,030	4,226	4,452	4,706	4,954	5,212	5,478
지출	3,455	3,651	3,901	4,099	4,269	4,443	4,729	4,964	5,209	5,485	5,694	5,912
재정적자	680	649	564	531	458	413	503	512	504	530	482	434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1,983	12,903	13,592	14,257	14,843	15,370	15,982	16,603	17,213	17,850	18,441	18,986
예산총량 (단위: GDP 대비 %)												
수입	16.7	17.3	18.3	18.6	18.9	19.0	19.0	19.2	19.4	19.6	19.8	19.9
지출	20.8	21.1	21.4	21.4	21.1	20.9	21.3	21.4	21.5	21.7	21.6	21.5
재정적자	4.1	3.7	3.1	2.8	2.3	1.9	2.3	2.2	2.1	2.1	1.8	1.6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2.1	74.4	74.6	74.3	73.5	72.4	72.0	71.6	71.1	70.6	69.9	69.0

71)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 (재정전망) FY2015에 6,490억달러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폭을 점차 줄여갈 전망
  - (재정수지) FY2015 재정수지는 6,49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폭을 점차 줄여 FY2024에는 4,3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국가채무) FY2015에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1조 3,592억달러로 GDP 대비 74.6%를 기록하고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부채 비율이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FY2015 예산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Opportunity for all)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기회 (opportunity), 성장(growth), 안보(security)를 강조
  - 제조업 혁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성장친화 기반시설 확대, 정부 개혁 등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혁 등을 통해 낮은 건강보험비용 증가율을 유지, 성장친화적 세계개혁, 이민개혁, 재정적자 삭감 등의 노력으로 재정책임의 강화
- (세입) FY2015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조 3,374억달러 (GDP 대비 18.3%) 전망
  - FY2015~FY2019에 연평균 6.1%의 세입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경제성장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각각 10.6%, 35% 증가
- (세출) FY2015의 재정지출은 3조 9,010억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직업훈련교육,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preschool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비용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

〈표 30〉 FY2015 대통령 예산안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제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인소득세	1,316	1,386	1,534	1,648	1,781	1,920	2,047	2,179	2,314	2,451	2,592	2,733
법인세	274	333	449	502	528	540	514	527	542	557	571	592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948	1,021	1,056	1,127	1,194	1,256	1,314	1,372	1,445	1,515	1,583	1,654
소비세	84	94	111	115	119	122	127	130	135	140	146	154
유산세 및 증여세	19	16	18	20	21	23	39	42	46	49	53	57
관세	32	35	37	41	44	48	51	54	58	61	65	70
기타수입	103	118	132	104	96	83	89	101	111	116	125	133
이민개혁 총당금	-	-	2	12	28	39	45	47	55	64	77	87
총재정수입	2,775	3,002	3,337	3,568	3,811	4,030	4,226	4,452	4,706	4,954	5,212	5,478
GDP 대비 %	16.7	17.3	18.3	18.6	18.9	19.0	19.0	19.2	19.4	19.6	19.8	19.9

자료: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표 31〉 FY2015 대통령 예산안 분야별 지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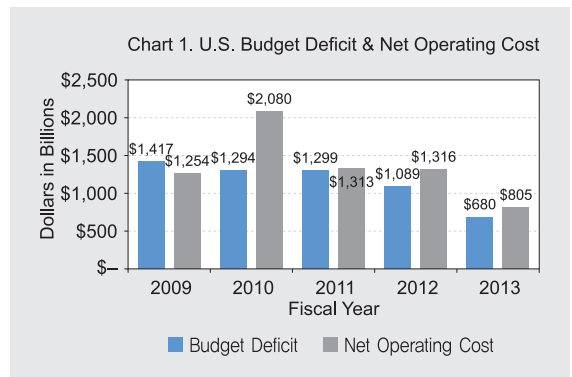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재량지출 프로그램</b>												
안보	626	612	623	584	570	570	577	583	592	602	615	630
비안보	522	562	563	569	576	579	585	593	599	588	591	604
합계	1,147	1,174	1,186	1,153	1,146	1,149	1,162	1,176	1,191	1,190	1,206	1,233
<b>법정지출 프로그램</b>												
사회보장	808	852	896	947	1,003	1,063	1,126	1,193	1,262	1,335	1,413	1,496
메디케어	492	513	526	569	575	589	648	690	737	817	843	863
메디케이드	265	309	336	355	372	392	415	439	464	492	521	552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521	577	691	739	754	744	790	812	841	879	882	890
이민개혁 총당금	-	-	8	11	18	24	28	29	35	41	48	56
합계	2,086	2,251	2,458	2,621	2,723	2,811	3,007	3,163	3,339	3,563	3,707	3,856
순이자	221	223	252	318	392	474	551	616	669	721	772	812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2	6	8	8	9	9	10	10	10	10	10
총재정지출	3,455	3,651	3,901	4,099	4,269	4,443	4,729	4,964	5,209	5,485	5,694	5,912
GDP 대비 %	20.8	21.1	21.4	21.4	21.1	20.9	21.3	21.4	21.5	21.7	21.6	21.5

자료: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 FY2013 결산 결과,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4,091억달러 감소한 6,803억달러, 순운영비용은 5,112억달러 감소한 8,051억달러 기록(2014.2.27.)<sup>72)</sup>
- 세입 증가와 세출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 및 순운영 비용 감소

〔그림 3〕 FY2013 미국 재정적자와 순운영비용 추이



자료: 미국 재무부, 201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4,2.

72)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4,2.

- 2013.9.30 기준 연방정부 소유 자산은 3조달러, 총 부채는 19.9조달러로, 순연방부채(net federal liabilities)는 16조 9,093억달러로 집계
  - 부채는 비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및 미지급이자 12조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6.5조달러로 구성
  - 법정 부채한도 (statutory debt ceiling)가 적용되는 비정부부문 소유채무와 정부소유채무의 합계 (gross federal debt)는 16.8조달러를 기록
- FY2013 순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는 약 1,248억달러의 차이를 보임
  -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관련 비용이 순운영 비용에는 포함되고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차이

-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의제(Agenda)를 담은 보고서로 다음의 3가지 주요과제를 강조
  -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 경제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확대
  - 모든 국민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지혜 연구원)

###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 1. IMF, *Debt and Growth*

: *Is There a Magic Threshold?*(2014.2.13.)<sup>74</sup>

-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정부부채의 절대적 임계치 (Magic Threshold)에 대한 논의를 검증하고 성장과 부채의 관계에 대해 연구
  - Reinhart & Rogoff(2010,2012)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90% 이상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주장
    - 이 같은 연구결과는 유럽 국가들이 불황을 겪으면 서도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강력한 논거가 됨
  - 성장 및 부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부부채의 절대적 임계값은 없으며, 향후 정부부채의 증감 전망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다만, 정부부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이에 대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대응으로 인해 GDP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표 32〉 순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 비교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2	2013	증감
순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 ①	1,316.3	805.1	△511.2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②	481.8	264.3	△217.5
Liabilities to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③	△307.2	△9.0	△298.2
Other, Net ④	52.3	130.5	78.2
Net Difference ⑤=②+③+④	226.9	124.8	△102.1
현금주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 ①-⑤	1,089.4	680.3	△409.1

## 2. 기타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2014 대통령 경제보고서 발표(2014.3.10.)<sup>73)</sup>

73)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he 2014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74)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1352.0>



■ 경제성장과 정부부채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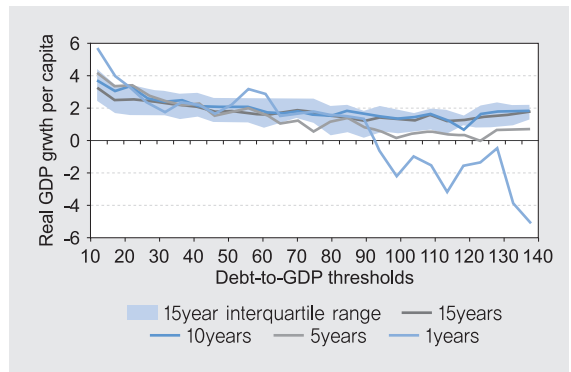
- 몇몇 학자들은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부채의 절대적 임계치를 제시
  - GDP 대비 부채비율이 Reinhart & Rogoff(2010)는 90% 이상, Cecchetti et al.(2011)의 경우 96% 이상이라고 하였으며, Baum, Checherita and Rother(2013)는 유럽국가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 95%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
  - Kumar and Woo(2010)는 초기단계에만 정부부채가 성장에 비례하여 영향을 준다고 함
- 높은 부채는 부진한 경제성장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인과관계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채와 성장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음
  - Panizza and Presbitero(2012)는 높은 부채가 낮은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부인, Herdon, Ash, and Pollin(2013)은 Reinhart & Rogoff(2010)의 코딩 등의 오류<sup>75)</sup>를 밝히며 비판

■ 실증분석 결과 부채와 성장 간의 절대적 임계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최초 1년은 정부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부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밝힘

[그림 4] 기간별 정부부채와 성장의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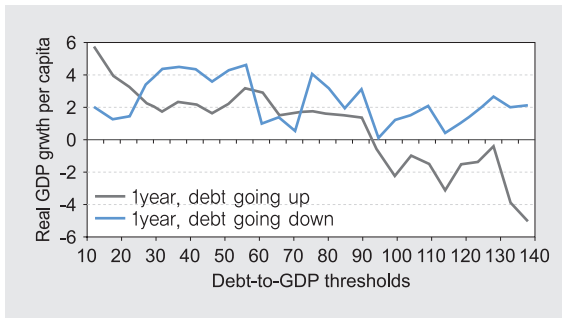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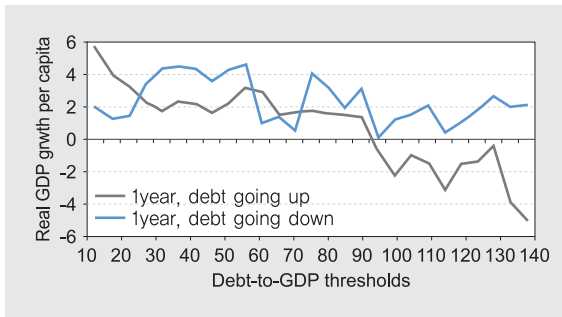


주: 1. 분석 기간은 1997년 에피소드를 고려하여 2012년까지 15년간으로 함  
자료: IMF,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Figure 2.

- 각 국가들의 현재 정부부채 규모보다 향후 부채비율에 대한 전망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75) 정부부채가 GDP의 90% 이상일 경우 평균 경제성장률은 -0.1%가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수치는 2.2%임

[그림 5] 부채 증감 전망(Debt Trajectory)에 따른 부채 및 성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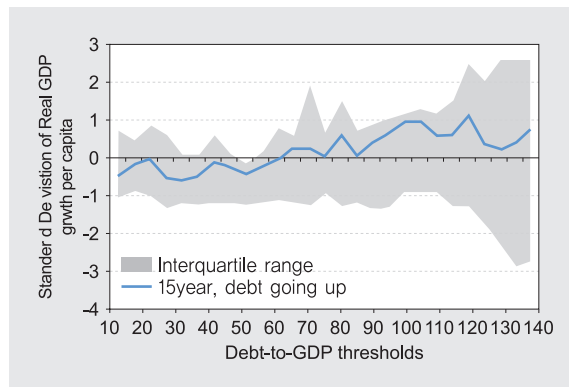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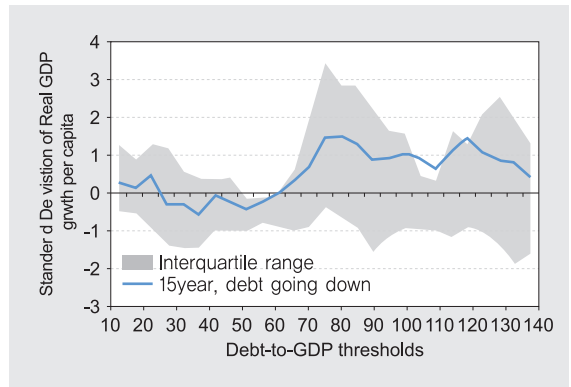


자료: IMF,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Figure 4.

-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부채관리를 요구하는 시장의 압박, 이에 따른 재정 및 통화정책의 대응으로 인해 GDP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

[그림 6] GDP 변동성(Volatility)

(단위: %)



주 1. 15년간 부채의 증감에 따라 두 그래프로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y축은 1인당 실질 GDP의 표준편차, x축 회색부분은 사분편차를 나타냄

2. GDP 대비 부채비율이 56% 이상일 때 GDP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부채와 성장의 사이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

자료: IMF,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Figure 7.

## 2. IMF,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2014.2.26.)<sup>7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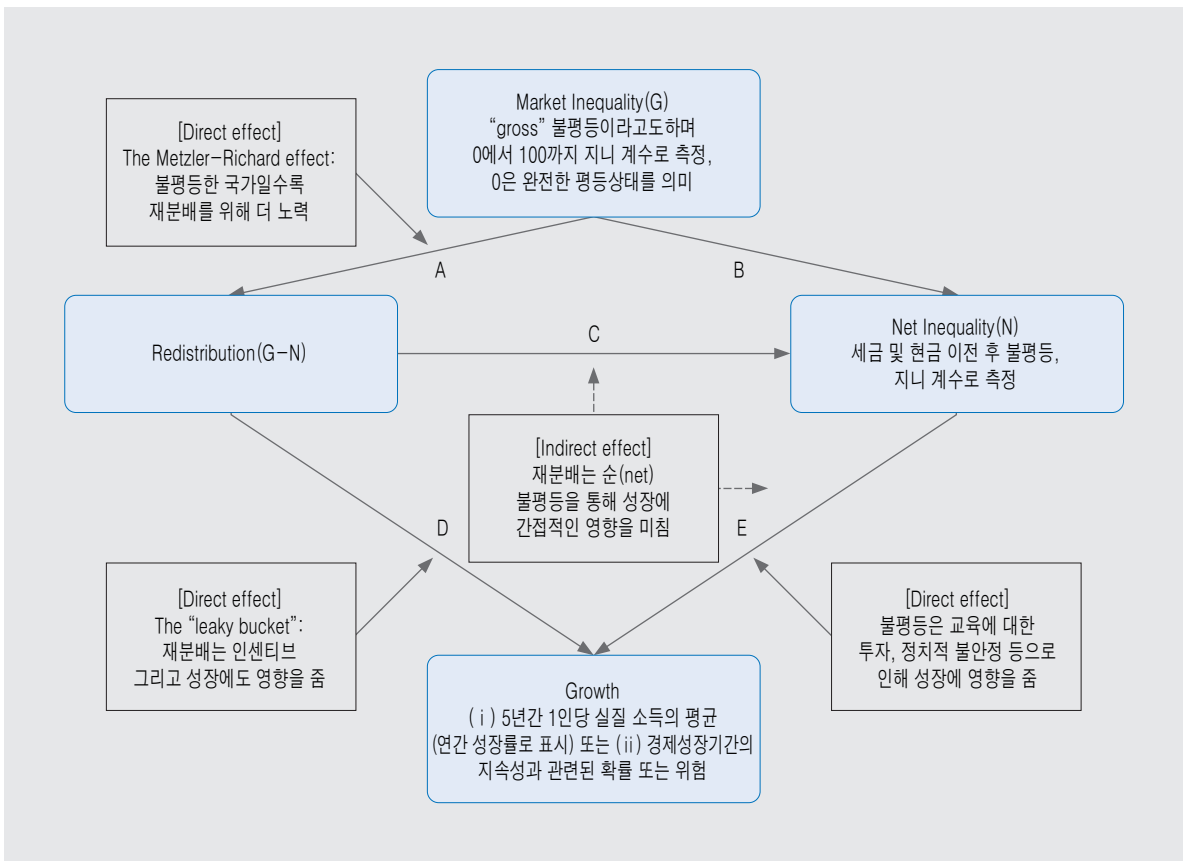
- 불평등, 재분배 및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제기

76) <http://www.imf.org/external/pubs/ft/sdn/2014/sdn1402.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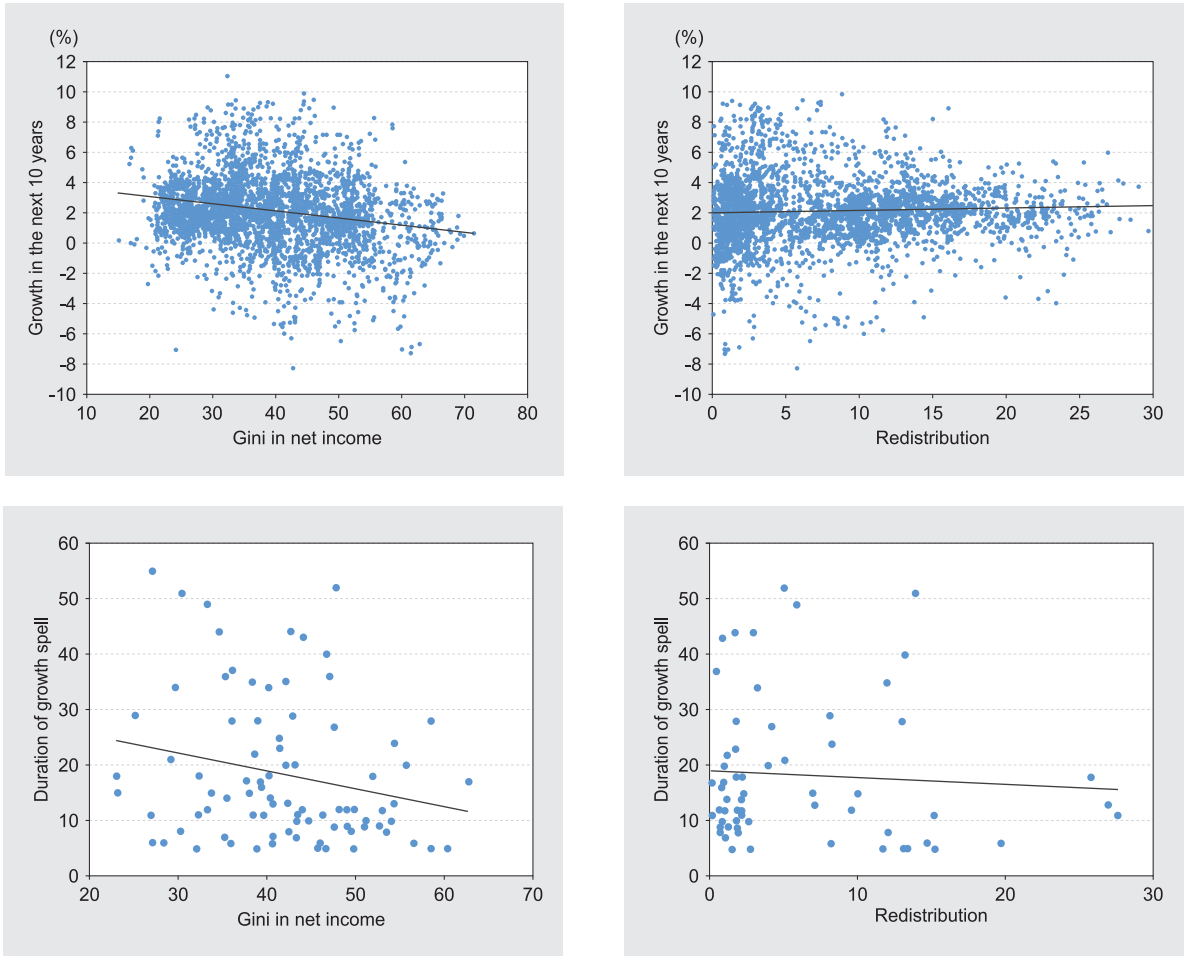
- 경제성장과 재분배는 상충관계인지, 재분배를 통해 성장 및 평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
-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불평등, 재분배 및 경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도식화한 후 연관성을 살펴봄
  - 경제성장(중기, 성장기간의 지속성), 불평등(지니계수) 및 재분배의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
    - (중기 경제성장) 불평등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고, 재분배와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성장기간의 지속성) 불평등이 지속되면 경제성장의 지속성이 약해지고 재분배가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지속성도 증가

[그림 7] 불평등, 재분배 및 성장의 연관성



주: 1. line A는 시장 불평등과 재분배 관계를 나타내며, 대표적인 Meltzer and Richard(1981)의 연구내용을 강조  
 2. line C는 순 불평등에 대한 재분배의 간접적 효과, line D와 E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재분배와 순 불평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냄  
 3. 자세한 사항은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Chapter II, 참고  
 자료: IMF,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Figure 1, 재구성

[그림 8] 경제성장(중기, 성장기간의 지속성), 불평등 및 재분배 관계 분석



주: 1. 경제성장기간의 지속성(Duration of growth spells)은 최소 5년 이상 성장률 2% 이상 유지했을 경우를 의미  
 2. 지니계수(순 불평등)가 1포인트 증가하면 리스크는 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3. 성장기간 지속성과 재분배 그래프는 상위 25th percentile만을 나타냄  
 4. 자세한 사항은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Chapter IV. 참고  
 자료: IMF,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Figure 4, Figure 5.



### 3. 키엘 연구소, *Government activity and economic growth – one size fits all?*<sup>77)</sup>

- 제도 및 경제체제로 구분하여 정부활동 수준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인 상보성(complementarity)에 따라 적합한 정부활동 수준이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
- (연구모형)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부활동 변수의 범위를 확장하고 각 국가를 경제체제에 따라 클러스터로 나누어 연구<sup>78)</sup>
  - 정부지출 혹은 규제와 같은 개별적인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정부활동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로 정부활동 변수 설정
  -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자유주의(Liberal Market Economies) 국가들과 조정시장(Coordinated Market Economics) 국가들의 클러스터로 경제체제를 구분

- (연구결과) 정부활동은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제도 및 경제체제의 상보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부활동 수준에서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냄
  - 정부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역 U자 형태로 나타났고, 정부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제도수준 고려 시 더욱 증가
  -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샘플평균보다 낮은 정부활동 수준에서 최고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났고, 조정시장경제는 평균보다 높은 정부활동 수준에서 경제성장 높음
  - 모든 샘플에서 현 정부활동의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서 경제성장의 최고치가 나타나므로 정부활동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우수한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정부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제체제<sup>79)</sup>와 조화되는 정부활동 수준

77) Beckmann, J., Endrich, M. & Schweickert, R., *Government activity and economic growth – one size fits al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No. 1903, 2014.

78)

(참고) 연구모형 요약	
연구대상	OECD 국가 및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y) 총 111개국의 1971~2010년 사이 5년 평균 패널자료
분석방법	Pooled OLS, fixed Effects with time effects
연구모형	기본모형(제도의 영향 측정) $\gamma = \beta_0 + \beta_1 \cdot pol + \beta_2 \cdot fraser + \beta_3 \cdot fraser2 + \beta_4 \cdot pol \cdot fraser + \beta_6 \psi$ 확장모형(경제체제 클러스터에 따른 영향 측정) $\gamma = \beta_0 + \beta_1 \cdot fraser + \beta_2 \cdot nordic + \beta_3 \cdot lib + \beta_4 \cdot nordic \cdot fraser + \beta_5 \cdot lib \cdot fraser + \beta_6 \psi$
주요변수	1. fraser: 전반적인 정부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로 정부 규모와 규제의 합으로 설정 fraser 값이 클수록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음 20은 정부활동이 경제에 적은 개입, 0은 정부활동이 경제에 많은 개입 2. fraser2: fraser자승 3. pol: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수준을 나타냄 0은 완전히 독재적인 정권이고, 20은 완전히 민주주의 정권으로 설정 4. 경제체제를 나타내는 지역별 클러스터 더미변수 • 조정시장경제(cme_all): 스칸디나비아 유럽 국가들(nordic), 남부유럽의 혼합시장경제(mme), 유럽 대륙국가들(cont), 동부유럽(cme_ee) • 자유주의 시장경제(lib_all): 자유주의 국가(lib)와 자유주의 동부유럽국가들(lib_ee)

79) 경제체제의 구분은 Hall&Gingerich(2009)의 정치경제학 모델에 따른

에서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내므로 적합한 정부 활동 수준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

- (연구 1) 우수한 제도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은 정부 활동이 낮은 상태에서 최고의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내어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sup>80)</sup>
- (연구 2) 조정시장경제 국가 중 노르딕(nordic)국가들과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하나인 앵글로색슨 국가(lib)들을 비교 시, 노르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활동 수준에서 성장효과가 최고점을 나타내고 자유주의 국가들은 낮은 수준에서 최고점<sup>81)</sup>
  - 노르딕 국가와 앵글로색슨 국가는 서로 상이한 제도 구조와 정부 규모이지만 각 체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는 유사하게 작용하여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우수한 성장효과
    - ☞ 국가별로 최고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내는 정부 활동 수준은 미국이 14.7, 스웨덴은 12.0이었고, 경제성장효과는 미국이 6.0, 스웨덴이 5.2로 나타남

80) 제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낮은 정부활동 수준인 12.0(평균적인 제도 수준에서의 정부활동은 10.1)에서 최고의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내었고, 경제성장 효과가 4.5에서 6.5로 상승

81) 노르딕 국가들은 정부활동 수준이 6.7에서 최고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났고(정부활동 수준 값은 작을수록 높은 정부활동), 자유주의 국가들은 13.3에서 나타남(전체 샘플의 경우 10.4)



## | 정책 흐름 |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본 자료는 2014년 3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3월 4일(화) 8시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음
  -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원장 등
  - 회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불안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I. 국제 금융시장 동향

◇ 신흥시장 불안의 중심이 금년 초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으로 이전되는 상황

- 1월 중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 따른 시장 불안은 2월 들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시장 불안 재확산

- (주가) 2월 이후 대부분 회복세이나 러시아, 베네수

### 엘라 등은 하락세

(변동률, %)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인니	인도
5.22~12월FOMC	5.6	△0.3	△6.7	△17.2	△19.4	4.0
12월FOMC~1월FOMC	△2.7	△1.3	△4.6	△5.8	5.3	△1.0
1월FOMC~3.3	2.7	△4.8	1.2	5.3	3.8	1.4

(변동률, %)	터키	아르헨	러시아	베네수	우크라	한국
5.22~12월FOMC	△23.4	52.5	△2.6	246.0	△2.7	△0.9
12월FOMC~1월FOMC	△13.1	4.6	△7.7	3.8	△0.4	△1.7
1월FOMC~3.3	△1.4	2.2	△15.2	△1.0	23.3	1.2

\* 우크라이나 주가는 2월 중순 이후 EU와의 경제협력 기대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급등  
\* 러시아 주가는 3.3일 △12.0% 급락('09.9월 이후 최저치)

- (환율) 2월 이후 신흥국 통화는 대부분 강세 전환되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약세 심화

(절상률, %)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인니	인도
5.22~12월FOMC	△4.6	△0.7	1.0	△7.8	△19.7	△10.7
12월FOMC~1월FOMC	0.1	1.9	0.3	△1.9	0.0	△0.5
1월FOMC~3.3	△0.5	0.8	△1.5	1.3	4.9	0.6

(절상률, %)	터키	아르헨	러시아	우크라	한국
5.22~12월FOMC	△10.2	△33.3	△4.8	△1.5	5.9
12월FOMC~1월FOMC	△9.0	△20.3	△6.3	△2.2	△1.8
1월FOMC~3.3	1.3	1.5	△4.1	△13.1	0.0

\* 3.3일 러시아 △2.0% 절하, 우크라이나 2.1% 절상  
\* 베네수엘라는 달러화에 연동

■ (CDS) 2월 이후 대부분 하향세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상승세

(변동폭, bp)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인니	터키
5.22~12월FOMC	0	△22	△10	37	75	87
12월FOMC~1월FOMC	△1	10	31	47	14	47
1월FOMC~3.3	0	△5	△4	△20	△38	△10

(변동폭, bp)	브라질	아르헨	러시아	베네수	우크라	한국
5.22~12월FOMC	47	△1,057	22	370	22	△15
12월FOMC~1월FOMC	31	1,080	33	291	33	12
1월FOMC~3.3	△32	△694	44	△49	974	0

■ (국채금리) 2월 이후 대부분 하향세이나 우크라이나, 터키는 상승세

(변동폭, bp)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인니	인도
5.22~12월FOMC	85	△22	120	72	272	162
12월FOMC~1월FOMC	△21	△3	△11	△3	39	△1
1월FOMC~3.3	△8	△6	△9	△35	△60	12

(변동폭, bp)	터키	아르헨	러시아	베네수	우크라	한국
5.22~12월FOMC	352	△266	100	356	277	69
12월FOMC~1월FOMC	47	207	48	219	46	0
1월FOMC~3.3	50	△154	45	△71	490	△7

참고 1 최근 정정 불안 국가별 동향

◇ 최근 우크라이나 등의 정정 불안이 신흥국 권역 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부각

■ (우크라이나) 1월 FOMC 이후 환율(흐리브냐화) 13.1% 절하, CDS 프리미엄 974bp 상승, 국가신용등급은 강등\*

\* Moody's(Caa1 → Caa2, 1,31일), Fitch(B → CCC, 2,7일), S&P(B → CCC, 2,21일)

• 반정부시위에 따른 親러정권 붕괴 이후, 親EU 입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 의회가 군사개입을 승인하는 등 긴장 고조

■ (러시아) 1월 FOMC 이후 주가 △15.2% 하락, 환율(루블화) △4.1% 절하, CDS 프리미엄 44bp 상승 등 시장 불안 확대

• 특히, 3. 3일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환율(루블화) △2.0% 절하(사상 최저치), CDS 프리미엄 43bp 상승, 주가 △12.0% 하락 등 시장 불안 확대

■ (베네수엘라) CDS 프리미엄이 '13년말 대비 최대 549bp 상승\*하는 등 시장변동성 확대

\* CDS 프리미엄(bp): ('13년말) 1,148 (2. 18일) 1,697 (2. 28일) 1,354

• '13. 4월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마두로 정권)에 대한 반정부시위(경제위기 극복, 사회주의 반대 등 주장)가 '14. 2월부터 확산

■ (터키) 그간 주가 하락, 환율(리라화) 절하, CDS 프리미엄 상승 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금년 2월 들어 다소 개선

• '13. 12월 일부 장관들의 비리 스캔들 이후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년 8월 대선까지 시장 불안이 지속될 우려

■ (태국) 주가 하락, 환율(바트화) 절하, CDS 프리미엄 상승 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금년 2월 들어 다소 개선

• '13. 11월 잉락 정권이 탁신 前총리 사면을 추진하면서 반정부시위가 확산되었으나, 2월 이후 대규모 시위는 일시 자제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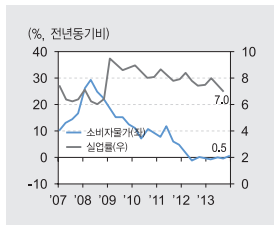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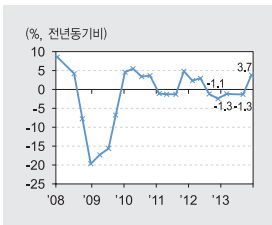
**참고 2** 우크라이나, 러시아 경제동향

**1** 우크라이나 경제동향

- **(거시)** 주요 수출품인 철강제품 가격 하락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경기부진 등으로 '13년 0%대 성장 - 실업률은 여전히 7%대를 유지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실질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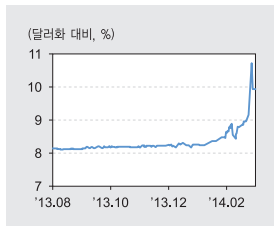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 **(금융)** 최근 CDS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흐리브나 화 가치도 하락

**CDS 프리미엄**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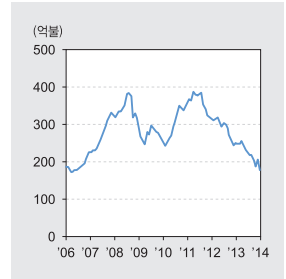


- **(거시건전성)**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심화, 외 환보유액 감소 등 거시건전성 지표 악화

**재정·경상수지, 대외부채(GDP 대비)**

**외환보유액**

(%)	재정수지	경상수지	대외채무
'08	△1.3	△7.0	55.9
'09	△3.9	△1.5	88.3
'10	△5.9	△2.2	86.0
'11	△1.8	△6.2	76.4
'12	△3.8	△8.1	76.6
'13	△4.4	△8.9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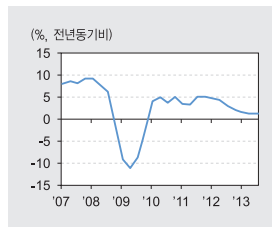


**2** 러시아 경제동향

- **(거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투자부진 등 대내 외 요인으로 '13년 성장률은 '09년 이후 최저치인 1.3%로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상승과 담 배·주류세 인상 등으로 16개월 연속 중앙은행 목표치(5~6%) 상회

**실질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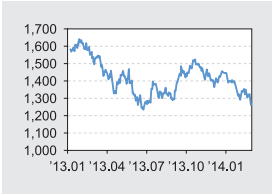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 **(금융)**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환율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러 간의 갈등 심화로 주가 폭락 및 루블화 가치 하락

\*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약세에 맞서 기준금리 인상 (+1.5%p, 3.3일)

주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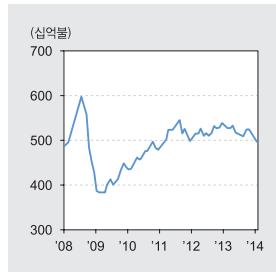


- (거시건전성) 원자재가격 하락 및 서비스수지 적자 등으로 재정·경상수지가 축소되고 외환보유액 감소

재정·경상수지, 대외부채(GDP 대비)

(%)	재정수지	경상수지
'08	4.9	6.3
'09	△6.3	4.1
'10	△3.4	4.4
'11	1.5	5.1
'12	0.4	3.7
'13	△0.7	2.9

외환보유액



II. 국내 금융시장 동향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3.3일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 하락, 환율 상승, 금리 상승

- (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약세

(단위: pt)	12년말	13년말	2.27	2.28
KOSPI	1,997.1	2,011.3	1,978.4	1,980.0
KOSDAQ	496.3	500.0	528.4	529.0

(단위: pt)	3.3	전일비	13년말비	12년말비
KOSPI	1,964.0	△0.77%	△2.36%	△1.66%
KOSDAQ	529.9	0.17%	5.98%	6.76%

- (환율) 국제금융시장의 위험기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1,07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단위: 원)	'12년말	'13년말	2.27	2.28
원/달러	1,070.6	1,055.4	1,068.8	1,067.5
원/100엔	1,234.1	1,002.2	1,046.6	1,048.5

(단위: 원)	3.3	전일비	'13년비	'12년비
원/달러	1,070.2	0.3%	1.4%	△0.0%
원/100엔	1,054.9	0.6%	5.3%	△14.5%

- (금리) 국고채 금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상승

(단위: %)	12년말	13년말	2.27	2.28
국고10년	3.16	3.58	3.50	3.50
국고3년	2.82	2.86	2.85	2.85

(단위: %)	3.3	전일비	13년말비	12년말비
국고10년	3.55	5bp	△3bp	39bp
국고3년	2.89	4bp	+3bp	+7bp

- (외국인 주식 유출입) 2월 주식자금 유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폭 유출세

(단위: 억달러)	대만	인도	태국	베트남	인니
11월중	△7.8	29.3	△15.1	0.2	△3.4
12월중	16.1	25.3	△12.6	0.6	△4.3
1월중	8.1	△0.1	△4.2	0.8	2.0
2월중	△3.6	3.2	△6.5	0.4	6.6
'13.6~12월	50.9	48.8	△54.8	0.1	△37.8

(단위: 억달러)	필리핀	터키	브라질	한국
11월중	△1.1	0.8	3.4	△2.0
12월중	△1.7	△1.9	△3.7	△14.1
1월중	△1.1	2.0	△2.9	△6.6
2월중	0.7	△0.2	4.0	△5.3
'13.6~12월	△10.7	△1.3	12.6	86.5

\* 출처: 블룸버그, 한국은 금감원

\* 외국인 채권 순투자(조원): ('12년)7.4 ('13년)2.4 (11월)△1.0 (12월) △0.4 (14.1월)0.7 (2월)△1.8

**정정 불안 국가와의 교역·투자 등 관계**

◇ 우크라이나 등과의 교역·투자 및 익스포저(신용공여) 규모가 작아 이들 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수출비중 ('13년)	수입비중 ('13년)	해외직접투자 ('13.9월말, 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13년, 억달러)	신용공여* ('13.9월, 억달러)
우크라이나	0.1%	0.1%	0.0	0.0	2.8
터키	1.0%	0.1%	1.1	0.0	5.5
태국	1.4%	1.0%	1.5	0.0	3.1
베네수엘라	0.0%	0.0%	0.0	0.0	0.1
러시아	2.0%	2.2%	1.2	0.1	15.3

**III. 최근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3.3일 국내 금융시장은 추가 하락, 환율 상승, 금리 상승

① 최근과 같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Great Transition)에는 작은 리스크 요인도 시장 변동성 확대의 단초가 될 가능성

•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불안 등을 겪고 있는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 경제규모(IMF, 13년말 기준 순위): (터키) 17 (태국) 29 (베네) 32 (우크라) 57

• 취약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소규모 신흥국 시장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

⇒ 글로벌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

② 최근 신흥국 불안은 신흥국 권역 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외적인 요인의

영향 확대

• 최근 신흥국 불안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 주요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및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 (태국) ASEAN 지역

• 외환·금융 등 경제적 측면 외에도 각국 고유의 정치·사회 관련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  
⇒ 위기의 장기화·심화 우려

③ 최근 신흥국 시장 불안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또는 여타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의 원자재 시장 내 지위\*를 감안,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통해 세계경제, 특히 유럽경제 회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

\* 우크라이나: 러시아(유럽 최대 가스공급국)의 공급 루트 중 절반이 우크라이나 경유

베네수엘라: 원유매장량 세계 1위, 원유생산량 세계 9위

• 이번 사태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 일부 신흥국의 정치불안 등과 맞물려 국내외 시장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에도 유의  
⇒ 신흥국 전체에 대한 투자심리에 악영향 우려

**IV. 대응방향**

■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 불안상황을 중점 모니터링

•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 시장불안이 글로벌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세부 파급경로를 면밀히 점검

- 이번 사태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과 맞물려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과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 특히,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
  - 해외투자자 및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 및 우려 확산 방지
-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이미 마련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하에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과감하게 대응
-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채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 등 대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

**참고 3** 주요 해외 IB 시각 (국금센터 정리)

- **(우크라이나)** 긴장 국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전망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무력 대응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HSBC)
  - \* 전쟁 발생시 러시아의 직접 피해비용은 GDP의 3%로 추산(BOA)
- 우크라이나 위기는 역내 문제에서 지정학적·경제적(from regional to Geopolitical and Geoeconomical) 이슈로 확산(Citi)

- 위기 고조 가능성은 낮으나 위기 확대시 정치·금융부문 연관성이 높은 신흥국의 불안 촉발 가능(Goldman Sachs, BOA)
  - \* 러시아(정치·금융연관성 高), 헝가리(금융시장 익스포져 高), 폴란드(지정학적 근접성), 터키·남아공(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악영향)
-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어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BOA 등)되며,
- 우크라이나의 중기 채무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Edmond de Rothschild(자산운용사)). 이번 사태는 정치적 이벤트로 유럽은행 부담은 크지 않을 것(JP Morgan)
- **(신흥국 전반)**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존 美 QE 축소 이슈와 맞물려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대 우려
  - 정치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부상하여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Barclays)
  - \* Goldman Sachs는 美·中 경제지표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터키 지방선거(3. 30일) 등 정치리스크 재부상을 이유로 신흥국 자산 매도 의견
- 최근 美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QE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어서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이 영향받을 것(Citi)
- 美 QE 종료에 따른 글로벌 자금이동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태국·중국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
- 일부는 신흥국 주식에서 해외 자본이 이미 지난 1년간 상당히 유출되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제한적(Nomura)

**참고 4** 3.3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환율		금리		유가			한국물 금융지표
	美 Dow	달러/유로	엔/달러	美 국채 (10년물)	WTI	NDF	CDS	
당일치	16,168	1.3735	101.44	2.60	104.92	1071.8	67	
전일 대비	↓0.94%	↓0.0069	↓0.41	↓5bp	↑2.27%	↑1.6	↑1bp	

**1 (시장동향)** 美/유럽증시 하락, 엔화 강세, 금리 하락, 유가 상승

**① (추가)** 美/유럽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정불안 등으로 큰 폭 하락

\* 美 2월 ISM 제조업PMI 53.2(전월 51.3, 시장예상 52.5 상회)  
美 1월 개인 소비지출 0.4%(시장예상 0.1% 상회)

- 3.3일 주가변동률(%): 美 Δ0.94, 英 Δ1.49, 獨 Δ3.44, 佛 Δ2.66, 中 +0.92, 日 Δ1.27, 韓 Δ0.77인도 Δ0.82, 인니 Δ0.78, 태 +1.05, 브 휴장, 터 Δ2.18, 아르헨 휴장, 러 Δ12.0, 우크라 Δ6.6

- 美 Dow: (11말)12,217 (12말)13,104 (13말) 16,577 (14.1말) 15,699 (2.28) 16,321 (3.3) 16,153

**② (환율)** 엔화는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

- 달러/유로: (11말) 1.2927 (12말) 1.3193 (13말) 1.3779 (14.1말) 1.3486 (2.28) 1.3804 (3.3) 1.3735엔/달러: (11말) 77.8 (12말) 86.75 (13말) 105.26 (14.1말) 102.04 (2.28) 101.85 (3.3) 101.44

- 3.3일 통화절상률(%):인도 Δ0.46, 인니 +0.15, 브 휴장, 터 Δ1.16, 아르헨 휴장, 러Δ2.0, 우크라 +2.1

**③ (금리)** 美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

\* 미국 (10년물, %): (11말)1.88 (12말)1.69 (13말) 3.03 (14.1말) 2.64 (2.28) 2.65 (3.3) 2.60

일본 (10년물, %): (11말)0.99 (12말)0.79 (13말) 0.74 (14.1말) 0.62 (2.28) 0.59 (3.3) 0.58

독일 (10년물, %): (11말)1.83 (12말)1.32 (13말) 1.93 (14.1말) 1.66 (2.28) 1.62 (3.3) 1.55인도 (10년물, %): (11말)8.57 (12말)8.05 (13말) 8.83 (14.1말) 8.78 (2.28) 8.86 (3.3) 8.90포르투갈 (10년물, %): (11말)13.36 (12말)7.01 (13말) 6.13 (14.1말) 5.00 (2.28) 4.85 (3.3) 4.88

**④ (유가)** 유가는 우크라이나 불안으로 인한 수급차질 우려로 상승

\* WTI(\$/bbl): (11말)98.8 (12말)91.82 (13말) 98.42 (14.1말) 97.49 (2.28) 102.59 (3.3) 104.92 +2.27%

Dubai(\$/bbl): (11말)104.9 (12말)107.8 (13말) 107.88 (14.1말) 103.77 (2.28) 105.39 (3.3) 107.25 +1.76%

**2 (한국물 금융지표)** 역외환율 1.6원 상승, CDS 1bp 상승

\* 원/달러: (11말)1151.8 (12말)1,070.6 (13.11말)1058.2 (12말)1055.4 (3.3) 1070.2 (3.4 NDF) 1071.8

\* CDS(bp): (08.10) 692 (11말) 161 (12말) 68 (13말) 66 (14.1말) 71 (2.28) 66 (3.3) 67

\* 주요국 CDS(bp): 인니 193(+8) 브 176(+4) 日 49(+2) 中 92(+1) 터 243(+12) 아르헨 2,031(+31), 러 235(+43)

**3 (주요 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IMF에 150억달러의 구제금융 요청, IMF 실사단은 3.4일부터 열흘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5.5 → 7%)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본 자료는 2014년 3월 5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3.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기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 21일 시행)

-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 부담 증가, 세 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 26)에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 마련 필요

##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방안>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 분리과세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다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 150만원)+표준공제 상당액)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장애인(200만원 추가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 2천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 과세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 정상 배려

-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

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 자료로 활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 입법추진 : '14.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 보완대책 관련 주요 이슈

#### 1. 소규모 임대차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

-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차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②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

- [사례]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이 있고
  - 근로소득이 5천만원(총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 ※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15%

(현행) 납부할 소득세 83만원\* 납부+사업자등록 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 45%)
(=) 과세표준	550만원
(X) 세율	15%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83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56만원\*(현행 대비 △27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 60%)
(=) 과세표준	400만원
(X) 세율	14%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56만원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현행과 개정 이후가 동일하므로 계산에서는 제외

**2. 은퇴 후 소규모의 월세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음

-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만 있는 경우

(현행) 납부할 소득세 8만원\* 납부+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 45%)
(=) 소득금액	55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X)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15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8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0만원\*(현행 대비 △8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 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0
(X)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0

※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 필요경비율 인상(45% → 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 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월 100만원)만 있는 경우

(현행) 납부할 소득세 15만원\* 납부+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540만원 (필요경비율 45%)
(=) 소득금액	66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360만원
(X)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22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15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11만원\*(현행 대비 △4만원)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720만원 (필요경비율 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80만원
(X)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11만원

**4.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월세 소득공제(400만원)는 2인 가족과 표준공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 가족 수가 많거나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받는 임대소득은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함
- \*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시 또는 개정된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
-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는 유리

**5. '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 전세 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 그동안 월세와 전세 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
-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음
- 세부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 임대인도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전세 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6. 분리과세제도를 2년 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
-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지적이 있어
  -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임
-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7. 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 사업소득 적용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가칭)를 신설하게 된 것임

**8. 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 현재도 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는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현재 단순경비율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45.3%, 국토부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60.2% 수준 등을 적용
-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

**9. 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 자료 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 그동안 임대소득 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
  - 그러나, 소액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임
-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 임대사업자가 충분히 개편되는 임대소득 과세체계에

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도록 과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하여 '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10.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 소득세 과세 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도 가능

\* (226 대책) 준공공임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3년 내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주택기금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기존·미분양 → 신규분양)

※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세제지원 내용

구분	매입임대	준공공임대(기존)	준공공임대(2.26 대책)
취득세	60㎡ 이하 면제	좌동	좌동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40㎡ 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40㎡ 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소득세	85㎡ 이하 20% 감면	좌동	85㎡ 이하 30%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장기보유특별공제 60% 3년 내 신규구입시 면제
증부세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합산배제	좌동	좌동

11.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원(연 1,980만원)

\*\* 대상가구 확대 : 73만 → 97만가구, 지급액 : 월평균 8만 → 11만원

-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 본 자료는 2014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2.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키로 함
-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첫 번째 이행계획으로
  -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

- 공공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체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고(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채비율 200% 이내) 수준
- 중점관리대상기관이 제출한('14. 1. 29) 부채감축계획에 대해 정상화추진단을 중심으로 자구 노력의 충분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점검·보완한 결과,
  - 한전 등 13개 기관\*은 자구 노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므로 현 계획대로 추진

- \*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 석유, 광물, 도로, 예보, 장학재단
-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여,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
  -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
  -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
  -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경쟁 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 마련
  - 석탄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조건부 추진 5개 기관은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 부채감축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중장기계획) 18개 기관의 부채규모가 '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
  - 이에 따라 공공기관(41개) 부채비율도 '13년 237%에서 '17년에는 20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전망

※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매각 관리방안 등을 추진

-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와 함께 기능 점검,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마련·시행

〈1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 제출된 정상화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 개선수준의 적정성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어 현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
  - **(계획 반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하여 모든 기관이 예외 없이 이행계획에 반영
  - **(개선 수준)**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규모는 '13년 대비 △1,544억원(△31.3%)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32.1%) 감축되어 대부분의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
-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1,306만원 → 447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 393만원), 코스콤(937만원 → 459만원), 마사회(919만원 → 547만원)는 40% 이상 대폭 감축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 목표

(복리비: 억원, 1인당: 만원)

구분	'13년 결산		'14년 계획		복리비 증감		1인당 증감	
	복리비	1인당	복리비	1인당	증감	%	증감	%
전체	4,940	427	3,397	290	△1,544	△31.3	△137	△32.1
• 방만경영(20)	1,455	657	959	414	△495	△34.0	△242	△36.9
• 부채관리(18)	3,485	372	2,437	259	△1,048	△30.1	△113	△30.4

- 36개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할 계획

\*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 다만, 2개\* 부채관리대상기관은 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행과제별로 주무부처가 중점관리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

\* 동서발전, 서부발전

- 앞으로 중점관리기관들은 오늘 확정된 계획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정부는 3/4분기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할 계획
  -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하여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

별첨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

I. 추진 경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과제)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

- 지난 1. 29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 12. 11)에 따라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부채감축계획을 기재부에 제출
  - 18개 기관 전체적으로 '17년까지의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39,5조원(△46.2%) 축소
- 2월중,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정상화 추진단이 자구 노력의 충분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점검

\* ① 비핵심사업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② 업무와 직접관련성이 낮은 자산이 모두 매각대상에 포함되었는지
- ③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원가절감 노력 등이 포함되었는지

■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보완한 결과, △2.5조원을 추가 감축(⇒ 중장기계획 대비 △42.0조원, △49.2% 감축)

- 대부분이 부채증가 30% 감축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나 자구 노력 적정성, 실행가능성 차원에서 자구 노력 추가(△6.3조)
  - \*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조정, 사택 등 자산매각, 매각가액 현실화, 경영효율화 미제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재고자산 매각 등 수익극대화 등
- 각 기관이 제시한 요금인상 계획은 불인정(+3.8조)\*
  - \* 부채감축 효과 3.8조원 차감: 전기 2.0조원, 수도 0.3조원, 철도 0.7조원, 도로 0.8조원

**부채감축규모**

(단위: 조원)

주요 내용	중장기계획(A)	기관제출('14.1)(B)	감축계획(최종)(C)	A-B	A-C
■ 부채계(증감)	497.1	457.6	455.1(△2.5)	△39.5	△42.0
○ 자구 노력	-	△39.5	△6.3	△39.5	△45.8
○ 요금인상 제외	-	-	+3.8	-	+3.8

■ 보완된 부채감축계획을 민간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통해 재무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 ① 이자보상배율 > 1배 ② 부채비율 < 200% ③ 당기순이익 흑자

① 18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17년에는 이자보상배율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전망

- (한전, 석유, 광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자보상배율도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순이익('12 → '17,조원): (한전)△3.2 → 2.2(석유)△0.9 →

0.6(광물)△0.02→0.1

이자보상배율('12 → '17,배):(한전)△1.7 → 1.8(석유)1.6 → 6.9(광물)0.4 → 2.0

- (한수원, 발전5사, 도로) 건설사업으로 부채는 증가하나 지속적인 순이익 실현과 평균 100% 초반대의 양호한 부채비율 유지

\* 남부·동서는 중장기계획상 부채 지속 증가에서 '16년 감소로 전환

- (가스)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문제되나, 양호한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시 재무구조는 건실해질 것으로 예상

- (예보, 장학재단) 정부정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사업성격상 지표 적용이 어려워 회수 강화 등 부채관리 노력 측면에서 평가

② 나머지 5개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 LH, 수공, 철도, 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과다

- 석탄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 지속

### 기관별 재무건전성 지표 추이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12년	'17년	'12년	'17년	'12년	'17년
한전	△1.7	1.8	133	143	△32,266	22,021
한수원	1.1	3.3	121	152	1,250	19,373
남동	3.1	3.7	98	130	1,742	4,132
남부	3.0	1.9	89	144	1,034	2,526
동서	3.6	4.1	76	107	1,672	4,655
서부	2.9	2.2	81	155	1,054	2,613
중부	3.4	3.0	96	159	1,286	3,790
가스	1.5	2.1	385	249	3,620	12,303
석유	1.6	6.9	168	157	△9,040	5,569
광물	0.4	2.0	177	136	△212	1,355
석탄	△1.0	△0.5	자본잠식		△931	△833
LH	0.7	0.7	466	377	12,047	4,579
수공	0.8	0.6	123	134	3,083	2,309
철도	△0.4	0.2	244	227	△28,202	△3,897
철도시설	0.4	0.8	-	-	△932	△1,252
도로	1.2	1.0	97	91	832	1,403
예보	-	-	-	-	-	-
장학재단	-	-	-	-	885	2,727

### II. 부채감축계획 추진방안

- 한전 등 13개 기관\*은 자구 노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므로 현 계획대로 추진
  - \*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 석유, 광물, 도로, 예보, 장학재단
  - 주무부처가 공공기관별 세부 감축방안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는 미흡하나, 기능 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
  - ①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
  - ②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

인 자구 노력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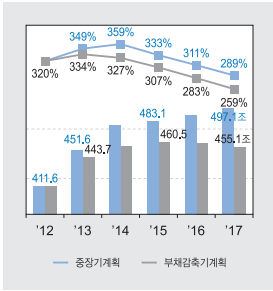
- ③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경쟁 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 마련
- ④ 석탄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 III. 부채감축계획 주요 내용

#### 1. 개요

- 현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가 중장기계획 대비 약 50% 감축되어 '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
  - 중장기계획상 '17년까지 85.5조원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감축계획에 따라 이를 43.5조원으로 억제(△42,0조원, △49.2%)
    - \* 중장기계획과 동일하게 요인상 가정을 사용할 경우, △45.8조원 감축
  -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시기도 감축목표의 절반 이상(54%)을 '15년 이내 달성토록 수립
- 부채비율도 당초 '15년 감소 전망에서 올해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1년 앞당김
  - 이에 따라 공공기관(41개) 부채비율도 '13년 237%에서 △40%p 하락하여 '17년 200%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전망
- 당기순이익\*은 '12년도 △4.3조원 적자에서 '14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17년에는 8.3조원까지 수익성이 크게 향상
  -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집계하지 않는 예보를 제외한 17개 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18개)



'17년 부채전망

	부채(조원)	부채비율
41개 기관	531	191%
- 18개 중점기관	455	259%
- 23개 기관	76	76%
295개 기관*	551	182%

\* 41개외 기관은 '12년말 자산/부채 유지 가정

2. 자구 노력 주요 내용

- 18개 기관은 사업조정 21.7조원(51.7%), 자산매각 8.7조원(20.8%), 경영효율화 5.9조원(14.0%) 등 제시

자구 노력 유형별 부채감축 규모

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기타
42조 170억원	21조 7,037억원	8조 7,352억원	5조 8,700억원	5조 7,081억원
(100.0%)	(51.7%)	(20.8%)	(14.0%)	(13.6%)

- ① (사업 조정) 비핵심 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 축소
  - \* (LH)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구조 설계(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항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 등, (수공) 단지사업 일부 유보, 풍력발전 축소 등 (도공) 건설사업 투자규모 조정 등
- ② (자산 매각)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지분 매각, 회원권·연수원 등 복지시설 매각 등

국내자산 유형별 매각대상

부동산	출자지분	직원복지시설
6.0조원*	3.1조원*	111억원*
(수도권 본사부지 매각) 한전, LH, 도로, 가스, 광물, 석유 (철도) 용산부지, 성북역 부지 (한전) 열병합부지등	(도공) 민자도로 지분 (한전) 한전 KPS, 한전기술, LG U+	(콘도회원권) 한전, 가스, 중부 (골프회원권) 도공 (연수원) 가스 (사택) LH, 수공, 한수원, 발전사

\* 매각금액에는 중장기계획상 자산매각계획 포함

- 해외사업은 비핵심사업 중심으로 축소,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조달 등을 위해 일부 지분도 매각 추진
  - \* (한전) 유연탄, 우라늄 광산 지분 매각 등, (석유) 해외 광구 내 일부 비핵심자산 매각 등, (가스) 해외 자회사 지분 일부 매각 등
- ③ (경영효율화) 모든 기관이 인건비,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
  - 대부분의 기관이 팀장급 이상의 '14년 인건비 인상분 동결, '13년 상여금 반납과 더불어 경상경비도 약 △20% 규모 절감

IV. 리스크 관리방안

- 필요성
  - 경제여건, 시장상황 등으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 국제유가 급등 등 예측치 못한 원가인상 요인 발생 시,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
- 리스크 관리방안
  - ① (이행 점검) 주기적으로 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경기 등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
  - ② (자산매각 관리) 매각가능성 제고 및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자산을 그룹핑하여 매각하는 방안과 매

- 각시기 조정 등도 병행
- 시장논리에 따른 매각과 외부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매각가격 극대화 및 비유량·유찰 자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헐값매각 우려 및 배임 논란 불식
  - \* 기재부, 주무부처, 공공기관, 캠프, 민간전문가 등으로 매각지원위원회를 구성

- ③ **(매수기반 확충)**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 자산매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④ **(미이행시 대책)** 계획이행이 어려운 상황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관 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 ⑤ **(공공요금)** 여건변동에 따른 원가인상 요인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검증을 시행하여 요금 반영 여부를 검토

### V. 향후 추진 계획

- ①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부채감축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3분기 말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
  -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 등 엄중 문책
- ② LH, 수공 등 조건부 추진 5개 기관은 현 자구 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 ③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와 함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마련·시행
  -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대해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핵심업무에 역량 집중(하반기 추진)
  - \*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기능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내 기능조정을 마무리

-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6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 임대 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참고 1〉 기관별 연도별 부채 전망

(단위: 억원)

기관	'12	'13	'14	'15	'16	'17
합계	4,116,312	4,436,791	4,557,725	4,605,308	4,592,485	4,550,680
한전	549,636	565,904	605,599	629,343	642,039	651,924
한수원	247,079	267,433	304,849	326,284	339,548	345,160
남동	35,807	46,395	51,529	52,857	55,001	57,868
남부	30,384	39,063	54,523	58,759	56,506	56,349
동서	26,511	40,602	47,450	51,270	49,617	48,110
서부	26,179	40,134	51,673	60,168	61,850	62,052
중부	28,418	33,729	45,207	51,041	52,616	59,871
가스	322,528	352,658	366,083	352,609	337,184	333,187
석유	179,831	192,881	180,315	189,482	183,920	179,991
광물	23,766	37,130	36,236	40,703	41,523	46,454
석탄	14,467	15,284	15,615	16,097	16,643	17,059
LH	1,381,221	1,478,130	1,493,636	1,482,707	1,488,310	1,464,620
수공	137,779	139,985	146,612	158,586	172,930	173,349
철도	143,209	174,456	155,239	138,434	144,699	137,829
철도시설	173,406	194,648	207,436	220,553	225,533	223,821
도로	253,482	261,624	271,322	277,395	287,236	297,058
예보	458,855	466,840	417,929	381,178	308,878	256,978
장학재단	83,754	89,895	106,472	117,842	128,452	139,000

〈참고 2〉 기관별 부채증가 감축규모

(단위: 억원)

기관명	'12년	'17년		부채증가 감축규모(B-A)
		중장기(A)	부채감축(B)	
합계	4,116,312	4,970,850	4,550,680	△420,170
한전	549,636	703,360	651,924	△51,436
한수원	247,079	387,990	345,160	△42,830
남동	35,807	69,510	57,868	△11,642
남부	30,384	67,809	56,349	△11,460
동서	26,511	56,966	48,110	△8,856
서부	26,179	77,504	62,052	△15,452
중부	28,418	71,971	59,871	△12,100
가스	322,528	344,988	333,187	△11,801
석유	179,831	190,742	179,991	△10,751
광물	23,766	56,982	46,454	△10,528
석탄	14,467	18,170	17,059	△1,111
LH	1,381,221	1,629,227	1,464,620	△164,607
수공	137,779	190,104	173,349	△16,755
철도	143,209	146,973	137,829	△9,144
철도시설	173,406	232,283	223,821	△8,462
도로	253,482	308,200	297,058	△11,142
예보	458,855	278,037	256,978	△21,059
장학재단	83,754	140,034	139,000	△1,034

별첨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정상화 대책 중점관리대상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

1. 추진경위 및 개요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 12. 11)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기관은 지난 1. 29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

-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아 방만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과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 18개를 포함한 38개 기관을 선정

\*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부,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스,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

술원, 무보, aT, 코스콤, 수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 기술, 부산대병원, 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 제출된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 개선수준의 적정성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어 현 계획대로 추진

- (계획 반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하여 모든 기관이 예외 없이 이행계획에 반영

\*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한 8대 항목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 (복리후생비) 학자금·보육료 개선, 가족 건강검진 과 의료비 지원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고가 기념품 지급 개선 등

- (기타 제도개선)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 직원 가족 특별채용 금지, 휴가·휴직제도 정비, 법령에 따른 경영·인사권 확립 등

- (개선 수준)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년 대비 평균 △137만원(△32.1%) 감축되어 38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

• (개선 시기) 36개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부산항만공사 등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 예정

- 다만, 2개\* 부채관리기관은 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행과제별로 주무부처가 중점관리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

\*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2. 이행계획안 주요 내용

① 개선계획 총괄

- (개선 항목) 8대 항목 중 5개 항목 개선 필요 기관이 가장 많은 가운데, 예탁결제원, 한국전력기술 등은 가장 많은 7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개선 대상 항목 수

항목	7대	6대	5대	4대 이하
기관 수	9개	10개	12개	7개

- ① 7대 항목: 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한전기술, 인천공항,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
  - ② 6대 항목: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 ③ 5대 항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주택보증, 코스콤, 무역보험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장학재단, 한국전력, 한수원, 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 ④ 4대 이하: 도로공사(4), 서부발전(4), 동서발전(4), 중부발전(4), 조폐공사(3), 석탄공사(3), 철도시설공단(2)
- \* 1내의 근로시간 비면제자 유급 조합활동 관련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선항목 축소

- (개선 건수) 수출입은행, 원자력안전기술원, 마사회, 코스콤, 한국거래소 등이 개선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23건 이상)이고,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는 5건 이하였음

기관별 개선 필요 건수

	5 이하	6~10	11~15	16~20	21 이상
기관 수	2	3개	13개	14개	6개

- ① 5 이하: 철도시설공단(4), 석탄공사(5)
- ② 10 이하: 조폐공사(7), 광물자원공사(8), 장학재단(9)
- ③ 15 이하: 방송광고진흥공사(11), 도로공사(11), 석유공사(12), 철도공사(13), 농수산식품유통공사(13), 부산항만공사(14), 동서발전(14), 부산대병원(15), 남동발전(15), 서부발전(15), 한국전력(15), 한수원(15), 중부발전(15)
- ④ 20 이하: 남부발전(16), 수자원공사(16), 무역보험공사(16), 강원랜드(17), 가스공사(17), 가스기술공사(17), 한국투자공사(18), 그랜드코리아레저(18), 대한주택보증(19), 인천공항(19), 지역난방공사(19), 토지주택공사(20), 예탁결제원(20), 예금보험공사(20)
- ⑤ 21 이상: 한전기술(22), 한국거래소(23), 코스콤(24), 마사회(25), 원자력안전기술원(27), 수출입은행(28)

- (개선 필요사항) 과도한 경조 휴가(33개 기관), 학자금, 의료비·단체보험의 개선이 가장 많은 기관들에 해당

<참고> 방만경영 주요 개선사례

항목	주요 사례	개선 내용
① 학자금	(무보) 기금에서 대학 입학축하금 200만원 지급	• 폐지
	(농수산유통) 예산에서 예능계 중학교, 특목고·사립고 학비 전액 지원	• 중학교 폐지, 고등학교 공무원 수준 축소
	(도공) 예산에서 초등 5~6학년 자녀 영어캠프비 70% 지원	• 폐지
	(마사회) 예산에서 초중생 1인당 스키캠프 30만원, 기금에서 초중고생 1인당 영어캠프 63만원 지원	• 폐지
② 경조사비 / 기념품	(한수원)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2명까지 무상지원 (인천공항)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3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장학금제도로 변경 • 폐지
	(마사회) 예산에서 근무년수 5년부터 5년 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5~15돈 지급	• 10, 20, 30년차만 지급하되, 70만~150만원 상당 물품 지급
	(거래소) 예산에서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상품권 각 70만원, 기금에서 본인 사망시 경조비 2,000만원 지급	• 기념품 폐지, 경조금 1,000만원으로 축소
③ 의료비	(그랜드코리아) 본인생일, 명절 등 각종 기념일에 1인당 105만원 상품권 및 7년 근속자에게 외식상품권 20만원 지급	• 생일, 근속포상 폐지, 기타 기념일은 지급액을 축소하여 온누리상품권 또는 저가 기념품 지급
	(코스콤) 예산에서 결혼기념일 5년마다 10만원, 3자녀 출산장려금 2,000만원, 본인 사망시 2,000만원 지급	• 기금으로 변경 및 결혼기념일 폐지, 출산장려금·사망조금 각각 100·1,000만원으로 축소
④ 특별채용	(한전기술) 기금에서 본인 의료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지원 (거래소) 직원 업무와 질병, 가족의료비를 1,500만원(5대 질병 2,500만원) 한도 지원	• 폐지 •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 포인트 활용
	(가스기술, 부산대병원) 업무상 재해로 사망, 퇴직시 유가족 특별 채용 (예결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정년퇴직·일반사망 등 이유 불문하고 유가족 특별 채용 (강원랜드) 정년퇴직시 직계가족 우선채용	• 폐지 • 폐지 • 폐지

- **(완료시기)** 금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인 기관이 60%(23개 기관)이며, 특히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은 1/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

**개선계획 완료시기**

기관수	'14년 1/4분기	'14년 2/4분기	'14년 3/4분기	'14년 4/4분기
	7개	16개	13개	2개

- ① 1/4분기: 부산항만공사, 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무역보험공사, 조폐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② 2/4분기: 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농수산유통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원자력안전기술원, 코스콤,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 ③ 3/4분기: 부산대병원, 가스기술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철도공사
- ④ 4/4분기: 동서발전, 서부발전

**2) 복리후생비**

- **(개선 목표)** 중점관리 38개 기관은 '14년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13년 대비 약 △1,544억원\* (△31.3%) 감축할 계획

\* 요구보다 축소된 것은 가스기술공사 선택적 복지비의 직무급 전환계획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아니므로 개선 금액에서 제외한 것에 기인

-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32.1%) 감축되어, 대부분의 기관(36개)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될 전망('13년 24개 기관 500만원 초과)

\* 알리오상 기관별 복리후생비 공시항목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등을 제외하여 기관 간 형평성 제고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 변화 추이**

(단위: 개)

기관	연도	7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방만경영 (20)	2013	5	5	8	2	-	-
	2014	-	-	2	8	9	1
• 부채관리 (18)	2013	-	2	4	5	2	5
	2014	-	-	-	3	7	8
합 계 (38)	2013	5	7	12	7	2	5
	2014	-	-	2	11	16	9

- 특히, 방만경영기관(20개)은 △242만원(△36.9%) 감축될 전망
-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1,306만원 → 447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 393만원), 코스콤(937만원 → 459만원), 마사회(919만원 → 547만원)는 40% 이상 대폭 감축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 목표**

(복리비: 억원, 1인당: 만원)

구분	'13년 결산		'14년 계획		복리비 증감		1인당 증감	
	복리비	1인당	복리비	1인당	증감	%	증감	%
전체	4,940	427	3,397	290	△1,544	△31.3	△137	△32.1
• 방만경영 (20)	1,455	657	959	414	△495	△34.0	△242	△36.9
• 부채관리 (18)	3,485	372	2,437	259	△1,048	△30.1	△113	△30.4

- 다만, 석탄공사(+4.3%), 철도공사(△1.1%), 철도시설공단(△2.8%)의 개선율이 낮은 것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최하위권이며, 복리후생비 관련 개선과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

\* 복리후생비 개선과제: 석탄공사 1개(영유아 보육수당), 철도공단 1개(단체보험과 선택적 복지 별도 운영)

### 3. 향후 계획

-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에 대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
  -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하여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
- 1분기 개선완료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지 계획 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 평가하여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참고 1〉 기관별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 목표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만원)		증감	
	'13년 결산(A)	'14년 계획(B)	B-A	%
① 한국거래소	1,306	447	△859	△65.8
② 수출입은행	969	393	△576	△59.4
③ 코스콤	937	459	△478	△51.0
④ 한국마사회	919	547	△373	△40.5
⑤ 한전기술	785	384	△401	△51.1
⑥ 인천공항공사	681	423	△258	△37.9
⑦ 가스기술공사	677	595	△82	△12.1
⑧ 그랜드코리아레저	663	470	△193	△29.1
⑨ 강원랜드	610	439	△171	△28.1
⑩ 지역난방공사	607	406	△200	△33.0
⑪ 무역보험공사	591	401	△190	△32.1
⑫ 원자력안전기술원	562	300	△263	△46.7
⑬ 대한주택보증	555	397	△157	△28.4
⑭ 한국투자공사	553	288	△265	△47.9
⑮ 방송광고진흥공사	537	314	△223	△41.5
⑯ 부산항만공사	536	331	△205	△38.2
⑰ 예탁결제원	528	426	△102	△19.2
⑱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12	358	△154	△30.1
⑲ 한국조폐공사	484	330	△154	△31.8
⑳ 부산대병원	455	345	△110	△24.1
(소계)	657	414	△243	△36.9

방  
만  
경  
영  
기  
관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만원)		증감	
	'13년 결산(A)	'14년 계획(B)	B-A	%
① 석유공사	694	476	△218	△31.5
② LH공사	641	434	△207	△32.3
③ 예금보험공사	538	439	△99	△18.4
④ 남동발전	530	382	△148	△28.0
⑤ 남부발전	523	354	△170	△32.4
⑥ 한수원	517	337	△179	△34.7
⑦ 중부발전	487	245	△242	△49.7
⑧ 수자원공사	449	365	△84	△18.7
⑨ 가스공사	449	352	△98	△21.7
⑩ 한국전력공사	440	217	△223	△50.6
⑪ 서부발전	439	338	△102	△22.9
⑫ 도로공사	396	374	△22	△5.6
⑬ 동서발전	370	170	△200	△54.1
⑭ 광물자원공사	244	231	△13	△5.4
⑮ 장학재단	235	223	△12	△5.0
⑯ 철도공사	160	158	△2	△1.1
⑰ 철도시설공단	159	154	△5	△2.8
⑱ 석탄공사	64	66	2	4.3
(소계)	372	259	△113	△30.4
38개 기관 총계	427	290	△137	△32.1

부  
채  
과  
다  
기  
관

\* 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비가 높은 것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낮게 인상하고, 선택적 복지비를 많이 인상한 것에 기인하며, 12년 기준 복리후생비 제외 1인당 인건비는 58백만원 수준으로 20개 방만경영 기관 중 16위로서 평균 근속연수(14년) 감안시 높지 않은 수준

\*\* 석탄공사는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피복비 등 절감에도 불구하고, 진폐증 예방을 위한 현장직원의 건강검진비 단가 인상(15만원 → 30만원)에 따라 증가

〈참고 2〉 13년 1인당 복리후생비 베이스 조정 현황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만원)			조정 항목	
	당초	변경	증감		
방 안 영 향 기 관	① 한국전력기술	998	785	△213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② 가스기술공사	924	677	△247	국가보안시설 당직비, 문화활동수당
	③ 원자력안전기술원	912	562	△350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④ 인천공항공사	780	681	△99	교통보조비
	⑤ 부산항만공사	769	653	△116	교통보조비
	⑥ 부산대병원	762	455	△307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⑦ 농수산식품유통공사	650	512	△138	교통보조비
부 채 과 다 기 관	① 한국수력원자력	697	517	△180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② 한국남부발전	693	523	△170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③ 한국수자원공사	664	449	△215	국가보안시설 당직비, 중식보조비
	④ 한국중부발전	652	487	△165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⑤ 한국철도공사	642	160	△482	4대보험료, 중식보조비
	⑥ 한국남동발전	618	530	△88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⑦ 한국도로공사	597	396	△201	4대보험료, 교통보조비, 정근수당
	⑧ 광물자원공사	561	244	△317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⑨ 한국전력공사	520	440	△80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⑩ 한국동서발전	379	370	△9	중식보조비
	⑪ 철도시설공단	376	159	△217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⑫ 대한석탄공사	374	64	△310	4대보험료,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민사 손해배상금

#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 본 자료는 2014년 3월 11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 안전행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 → 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 그리고, 독립세화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고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소비세율 안분기준 마련 및 납입방식 지정(안 제 75조 및 제76조)
  -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고,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을 위한 안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함
- ※ 취득세 감소분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수요 등

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인분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시도〉	〈시도〉	〈시도·시군〉	〈교육청〉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20.27% (0.80조원)
55.53% (+0.54%)	5.50%	19.24	±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94조원

- ※ “교육전출금 허수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서 공제하고, 취득세 감소분에 추가
- 교육전출금 허수분 계산=(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시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지방교육비 특별회계 부담분(3.6~10%)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에 따른 조항 이동(안 제78조의2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징수→ 제7장 주민세 부과징수로 이동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부과징수 사항 정비(안 제86조~제100조의35)
  - 종합·퇴직·양도·법인소득별 개인과 법인의 신고·납부 절차 및 지자체 경정·결정, 환급 처리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세액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기준, 산식에 관한 사항
  - 기타 과세범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자료 제출 사항 등

### 참고 2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지방소득세 부분) 주요 내용

#### ■ 개정안 구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7장 주민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 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86조~88조
2. 거주자 종합·퇴직소득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89조~99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0조~100조의3
4. 비거주자 소득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4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5~100조의10
6. 내국법인 사업연도 소득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11~100조의22
7. 연결법인 소득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23~100조의25
8. 내국법인 청산소득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26
9. 외국법인 사업연도 소득	- 외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및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00조의27~100조의29
10. 동업기업 과세특례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동업기업세액의 계산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30~100조의32
11. 보칙	- 세무서장 국제자료 통보 방법,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과세대장비치에 관한 사항	100조의33~100조의35

참고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구성 및 주요내용	비고
특례 구성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76조문)	45조~120조
1. 일반	- 재해손실,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45조~50조
2.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51조~55조
3. R&D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56조~60조
4. 국제자본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에 관한 사항	61조
5. 투자촉진	-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62조~67조
6. 고용지원	-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68조~71조
7.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72조~76조
8. 균형발전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77조~84조
9. 공익사업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5조~89조
10. 국민생활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90조~100조
11. 기타특례	- 외국인투자 등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101조~117조
12. 특례제한	-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	118조~123조
보칙	· '3장 보칙' 편 조문을 4장으로 이동	124조~1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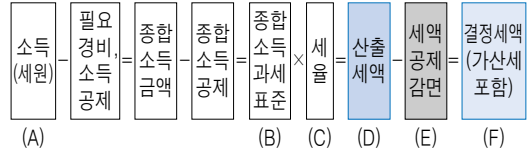
참고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개요

■ 개념 및 주요 내용

- (개념)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 운영

지방소득세 과세구조(예시)



\* 부가세 구조: 국세 결정세액(F)×부가세율(10%)=지방소득세  
 \* 독립세 전환: 국세 과세표준(B)×독립세율-공제·감면=지방소득세

- (세율) 국세의 10% 수준인 소득별 누진세율\* 방식으로 설정(단, 특별징수는 현행과 동일한 부가세율 10% 적용)

〈부가세 구조〉		〈부가세 구조〉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개인	부가세율 10%	독립세율 0.6~3.8%
	법인		독립세율 1.0~2.2%
	특별징수		부가세율 10%

■ 시행 : 2014. 1.부터 전면 시행('14. 1.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

- 수시(隨時) 과세인 양도소득 및 특별징수(퇴직, 이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분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4년부터 징수
- 기간(期間)\* 과세인 종합·법인 소득분은 '14년 소득에 대해 '15년부터 징수

\* 개인은 1. 1.~12. 31. 발생 소득, 법인은 각 법인별 사업연도 기간 발생 소득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개정세법’ 최고소득층 뺀 전 계층 세금 줄어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10분위 고소득층만 소득세 증가  
“소득재분배 효과 높을것 예상”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4년 개정 세법을 적용할 경우, 최고 소득계층(10분위)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은 한국재정학회의 학술지 『재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최고 소득 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소득세액은 2011년 기준 473만 3,200원(실효세율 4.63%)에서 2014년 기준 516만 5,400원(실효세율 5.05%)으로 늘어난 반면, 나머지 1~9분위는 소득세액과 실효세율이 모두 줄었다. 분석 대상 가구 전체로 보면, 평균 소득세액은 2011년 81만 6,300원(실효세율 2.19%)에서 2014년 82만 2,400원(실효세율 2.21%)으로 소폭 늘었다.

논문은 세액공제로 바뀐 개정 소득세법이 그 이전에 견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2011년 세법 적용 시 약 3.6%에서 2014년 세법 적용 시 3.9%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항목별로도 부녀자 공제, 자녀 관련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관

련 공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의 세액공제 전환이 전 계층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고소득층이 큰 혜택을 누리는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전체 소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3.0%에서 2011년 15.9%로 증가해 왔다. 개정 소득세법은 이처럼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최고 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2012년 발표된 제5차 재정패널자료의 4,528가구 가운데 근로소득가구인 2,477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소득세법과 2014년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해 얻은 추정 소득세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구 부담액을 분석했다. 개정 소득세법이 주로 근로소득과 가족 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 가구주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와 재정정책 연구용 실증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14-03-18〉

## “자녀장려세제 아동가구 빈곤율 0.57%p 떨어뜨릴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오는 2015년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면 아동가구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유·실업가구 제외)이 종전보다 0.57%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세계개편안에 의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CTC 도입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아동가구 빈곤율이 7.04%에서 6.47%로 0.57%포인트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도 같은 정책효과를 반영하면 0.3042에서 0.2999로 1.4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하는 소득분배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부양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재진 본부장은 “CTC 도입은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며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아동 빈곤 예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4-03-12)

## 걸도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학부모 우려

민간·가정 어린이집 1/3 인증제 거부...

재정지원과 연계해야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걸돌고 있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자발적 참여방식이어서 국공립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인증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수준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10일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만 9,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4만 113개소)의 68.3%였다. 2,181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93.9%, 1,572개 법인 어린이집도 86.0%가 인증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을 넘는 2만 1,253개의 가정 어린이집은 65.7%만 인증을 받고 있으며 1만 4,708개인 민간 어린이집은 66.7%, 347개인 직장 어린이집은 59.8에 불과하다. 특히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고작 38.1%다. 인증이 있다가 자격기준에 미달돼 취소된 비율도 전체 어린이집은 19.2%인 데 비해 가정 어린이집은 22.1%, 민간 어린이집도 19.4%다. 대다수의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약 3분의 1이 미인증 시설이고, 평가인증이 추후 취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평가인증제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기다보니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

이혜원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인증 탈락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인증 통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연간 50만~120만 원 수준인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뿐이다. 인증 결과 공개방식도 미인증 시설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 보육료 또는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미인증 시설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통과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시설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도 “평가인증제의 어린이집 품질향상 유도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평가 결과가 보육료 지원 여부와 연계되지 않는 점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2014-03-10)

### 전기료 또 오르나... 전기에 개별 소비세 부과 움직임

전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5차례나 오른 전기료가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과 해외 동향을 살펴봤을 때 전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전기가격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력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발

전 연료인 우라늄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18원 정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 개선 등을 목표로 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낮은 가격의 전기로 수요가 몰리게 됐다.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허 위원은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석탄류와 전기에 대해 과소비가 일어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해 공급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허 위원은 발전 연료 또는 전기 사용량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유연탄과 우라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모든 발전연료의 과세를 폐지하고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했다. 유연탄과 우라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발전 단가가 4.9% 인상되고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5.6% 인상 효과가 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전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원전 연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허 위원은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과세 부담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한 지원정책과 다른 에너지원 세율 인하 등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14-03-10)

## 바로잡습니다

본지 2월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정호 교수의 <권두칼럼> ‘경제·사회적 불만과 정부 본연의 역할’ 중 일부 문장이 편집 과정에서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 게재 원문

(중략)

문제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크든 작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남의 이익에 앞세운다. 남을 해하고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빈번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대로 두면, 남의 것을 약탈하려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가 횡행하는 난장판 사회가 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본질은 합법적 권력을 독점하는 존재이고, 정부의 본연의 역할은 그 권력을 사용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은, 타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불의(不義)로 규정하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강자이든 약자이든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즉, 모든 이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폭력, 사기, 특권을 통한 약탈이나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가 권력으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여기까지이다.

(하략)

### 수정 후

(중략)

문제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크든 작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남의 이익에 앞세운다. 남을 해하고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빈번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대로 두면, 남의 것을 약탈하려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가 횡행하는 난장판 사회가 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본질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존재이고, 정부의 본연의 역할은 그 폭력을 사용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은, 타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불의(不義)로 규정하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강자이든 약자이든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즉, 모든 이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폭력, 사기, 특권을 통한 약탈이나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가 폭력으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여기까지이다.

(하략)

# 재정포럼

2014년 3월호 통권 제21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14년 3월 17일 발행 / 제18권 제3호(통권 제21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